

월간

# 재정포럼

2024. December  
Vol.342

12



---

## 권두칼럼

사회복지지출 전망과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  
| 홍석철

---

## 현안분석

자녀장려금이 출산 후 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고지현

---

## 정책토론포트

제13차 재정성과관리 국제포럼

---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최종 규정 발표 외

---

Kipf

# 재정포럼

2024.12. Vol.342

월간 재정포럼 2024년 12월호 통권 제342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화 (044) 414-2137 홈페이지 [www.kipf.re.kr](http://www.kipf.re.kr)

## CONTENTS

### 권두칼럼

02 사회복지지출 전망과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 | 홍석철

### 현안분석

08 자녀장려금이 출산 후 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고지현

### 정책토론포트

40 제13차 재정성과관리 국제포럼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60 미국 -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최종 규정 발표 외

『재정포럼』에 실린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포럼』은 환경부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재활용 종이로 제작되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ESG경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지출 전망과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



+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국민의 혈세란 표현이 있다. ‘혈세’는 본래 가혹한 세금을 뜻하지만, 요즘은 귀중한 세금이란 의미로 더 많이 쓰인다. 정부는 공공재를 생산하고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고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등의 사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금을 거둔다. 이때 조세는 국민의 재산 중 일부를 징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재정 정책의 사회 목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고 세금의 사용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혈세라는 표현에는 재정 정책의 정당성과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복지지출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총지출(예산 기준)은 2015년 375조원에서 2025년 677조원으로 연평균 6% 속도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경제 규모에 비해 정부지출은 여전히 규모가 작은 편이다. OECD 통계자료의 GDP 대비 일반정부지출 비중 지표를 활용해 국가 간 비교를 하면, 2021년 기준 한국은 38% 수준이고 OECD 평균은 46%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연평균 정부지출 증가율 6%와 명목 GDP 증가율 4%가 유지된다면, 앞으로 5년 후에는 OECD 평균에 도달하고 10년 후에는 정부지출 비중이 50% 넘어서며 독일, 스웨덴 등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 전망은 보수적인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초저출생 추이와 생산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2040년대까지 0%대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고령인구 비중은 내년에 20%를 시작으로 2035년에는 30%

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 같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연금, 의료, 요양 등 노인 관련 지출 증가 속도가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면서 GDP 대비 정부지출 증가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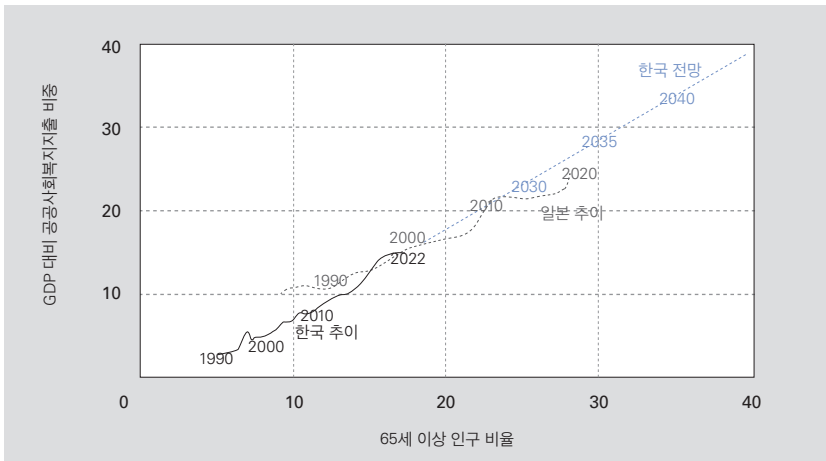
인구구조 변화가 정부지출에 미치는 영향의 대부분은 사회복지지출의 증가로 나타난다. 인구고령화뿐만 아니라 초저출생 위기 및 인구감소와 관련한 사회복지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에 걸친 적극적인 정부 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복합적인 인구구조 변화를 한 지표로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고령인구 비중을 대표 지표로 가정하면,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30여 년간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인구고령화 추이에 비례하여 증가해 왔다.

흥미롭게도 현재 한국의 인구고령화와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고령인구 비중이 20%에 근접했던 2000년대 초의 일본과 같은 수준이다. 하지만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증가 속도는 한국이 더 가파르며,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고령인구 비중 전망치를 기존 추세에 반영하면 2035년에는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8%를 넘어서며 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0여 년간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인구고령화 추이에  
비례하여  
증가해 왔다.

[그림 1] 인구고령화-공공사회복지지출의 추이와 전망, 한국과 일본

(단위: %)



주: 한국의 2023~2050년 추이 전망은 1990~2022년 동안 두 변수 간 관측된 선형 추세에 2023~2050년 고령 인구 전망치를 적용하여 저자가 직접 추정된 결과임  
출처: 한국(1990~2022년)과 일본(1980~2020년)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과 65세 이상 인구 비율 자료; OECD Data, 「한국의 2023~2050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중위 시나리오)」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원칙(즉 재정준칙)이  
없다면 국가채무와  
증세에 대한 미래세대의  
동의와 수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국가채무와 증세 선택은 불가피

한국처럼 출산율이 낮고 급격한 인구고령화를 겪었던 일본은 어떤 경험을 했을까? 2021년 일본의 사회복지지출은 GDP의 25%를 넘어섰는데, OECD 평균보다 12% 높은 수준이다. 반면 일본의 국민부담률은 32%로 OECD 평균보다 6.3% 낮다. 사회복지지출을 위한 자원 마련에서 조세와 사회보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다.

대신 일본은 국가채무를 높여 정부지출 증가에 대응해 왔다. 1990년대 초 시작된 장기 불황과 급속한 고령화, 인구감소가 맞물리면서, 경기 부양과 사회복지 목적의 비용은 증가했지만 세수 확보가 어려워진 결과였다. 2023년 기준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55%로 OECD 최고 수준이다. 같은 해 일본 정부 예산 중 신규 국채 발행 의존도는 31%였으며, 이는 사회보장 전체 예산과 맞먹는 규모였다. 반면 일본보다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높은 프랑스, 독일, 스웨덴의 국가채무 비율은 각각 111%, 63%, 33%로 일본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 국가들은 40% 이상의 높은 국민부담률을 기반으로 사회복지지출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줄어든 생산인구와 미래세대의 복지지출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

최근에 재정 확대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우리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 목표와는 달리 건전재정 유지는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의무지출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경기 부양과 사회안전망 강화 수요도 매년 커지고 있다. 반면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세수 여건은 갈수록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머지않아 우리도 국가채무와 증세 사이의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것이다.

## 재정준칙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전제 조건


한국의 선택은 일본과 유럽 주요국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초저출생 문제와 인구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 지출 증가뿐만 아니라 부담 증가도 다른 국가들의 경험을 능가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10년 동안 노년부양비가 50% 이상 증가하는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급증할 복지지출 부담을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문제이다. 특히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로 활용하겠다는 원칙(즉 재정준칙)이 없다면 국가채무와 증세에 대한 미래세대의 동의와 수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재정준칙은, 1980~1990년대 많은 선진국에서 공공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재정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30년 가까이 재정준칙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정치권 내 의견 차이와 경기침체 우려 등의 이유로 입법화가 지연되고 있다.

최근까지 논쟁이 되었던 재정준칙안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과 통합재정수지에 상한을 두는 방안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단순히 상한을 두는 것만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인구구조 변화가 세입과 세출에 미칠 영향을 엄밀하게 따지고, 지출 증가를 어떤 속도로 조정해야 하는지, 국민부담률은 어떤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게 적절한지, 그리고 필요한 재정 확보 방안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원칙 수립이 필요하다. 이런 원칙이 제대로 제시되고 투명하게 지켜질 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건설이 가능할 것이다.

## 나가며

2035년 이후 한국은 어떤 길을 걷게 될까? 2045년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중은 37%를 넘어서면서 최고령 국가인 일본을 추월하고 이후에는 어떤 국가도 경험하지 못한 초고령 축소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지금 우리가 재정준칙을 제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초고령사회에서 재정 정책의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복지지출 부담을 짊어질 미래세대를 위한 의무이다. 

지금 우리가  
재정준칙을 제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초고령사회에서  
재정 정책의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복지지출 부담을 짊어질  
미래세대를 위한  
의무이다.



# 현안분석

+ 자녀장려금이 출산 후 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분석

고지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자녀장려금이 출산 후 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분석<sup>1)</sup>



고지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jhko@kipf.re.kr

## 1. 서론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 2.1명 미만)은 1983년 이후 40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합계출산율이 1.3명 아래로 떨어지는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2015년 이후 합계출산율은 눈에 띄는 반등 없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2022년 0.78명, 2023년 3분기에는 0.7명에 이르고 있다. 최근인 2024년 7~8월에는 2분기인 4~6월에 이어서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는 통계가 보고되면서 합계출산율 반등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합계출산율 1.0명을 기대할 정도의 반등 속도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예상된다.<sup>2)</sup>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정부는 2005년 이후 5년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비교적 최근 도입 및 확대된 제도로는 현금성 지원제도가 있다. 저출산 대응 현금성 지원 정책의 목적은 자녀 양육 및 돌봄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정 부분 정부가 보조하고자 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예로 중앙정부의 첫만남바우처,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영아수당), 아동수당이나 지방정부의 각종 출산지원금이 있다. 현금성 지원에 대한 정부지출 또한 상당한데, 중앙정부사업

1) 본 원고는 고지현·고창수, 『조세 및 재정정책이 여성의 출산 후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분석』, 2024. 12(발간 예정)의 일부 내용을 발췌 및 보완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혀둔다.

2) 중앙일보, 「7월 이어 8월에도 출생아 2만명대...출산율 바닥찍고 반등?」,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6603#:~:text=%EC%97%B0%EA%B0%84%200.7%EB%AA%85%EB%8C%80%EA%B9%8C%EC%A7%80%20%EC%B6%94%EB%9D%BD,%EB%8B%AC%EC%A7%B8%20%EC%A6%9D%EA%B0%80%EC%84%B8%EB%A5%BC%20%EC%9D%B4%EC%96%B4%EA%B0%94%EB%8B%A4,> 접속일자: 2024. 11. 19, 2024. 10. 24.

중 규모가 가장 큰 부모급여의 2024년 예산규모는 작년대비 1조 2,672억원 증가한 2조 8,887억원 수준이다.<sup>3)</sup>

저출산 대응 현금성 지원의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지원정책이 (1) 출산율을 증가시켰는가를 분석하는 연구들과 (2) 동반효과로써 수혜가구, 특히 여성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먼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국내연구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크지 않지만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보고한다(이철희 외, 2023; 박창우·송헌재, 2014; 곽은혜, 2021). 또한, 현금성 지원정책은 소득효과를 통해 수혜가구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선행연구들은 특히 여성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조윤영, 2006; 우석진, 2008). 현금성 지원이 간접적인 경로로 수혜가구의 노동공급을 과도하게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이는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효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동공급 측면에서도 제도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정책설계 시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출산장려를 위한 현금성 지원정책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선행 연구들은 크게 두가지 점에서 보완이 가능해 보인다. 먼저는, ‘세제지원’을 통한 현금성 지원의 정책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세제지원을 통한 현금성 지원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체로 자녀장려세제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여성 노동공급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고 있으나(김재진·기은선, 2019; 고지현, 2022), 데이터의 한계로 수급 여부에 의존하거나 한정된 표본에서의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두 번째는, 선행연구들이 주로 여성의 노동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가구단위의 의사결정을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반면, 대부분의 현금성 지원이 아동 혹은 가구단위로 이루어져 개인의 의사결정에 앞서 가구단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여 자녀장려세제가 첫째아 출산 직후 가구의 동적인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녀양육비 경감을 위한 조세제도로는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등이 있으나, 그중에서도 소비행위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충분한 변동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된 자녀장려세제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분석 시에는 자녀장려세제가 가구노동공급 저해효과 없이 양육부담 경감 달성의 가능

현금성 지원이  
간접적인 경로로  
수혜가구의 노동공급을  
과도하게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이는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효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동공급 측면에서도  
제도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정책설계 시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TMB 뉴스\_12월 넷째주」 2024년, ‘더 탄탄해질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해 알아봐요!, 보도자료, 2023. 12. 28.

저출산 대응 현금성  
지원의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지원정책이  
(1)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나  
(2) 동반효과로써  
수혜가구, 특히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성이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서는 재정패널 2~16차(2009~2023년) 데이터를 사용하고 Kleven et al(2022)에서 사용된 이중차분 이벤트스터디(Difference-in-differences event study model)를 활용하여 자녀장려금 도입이 첫째아 출산을 경험한 가구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첫째아 출산 3년 전부터 출산 이후 1년까지(영아기) 가구노동공급 및 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출생연도에 따라서 출산당시 제도 인지 및 수급자격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처치군(2015~2021년 첫째아 출산 가구)과 통제군(2009~2014년<sup>4)</sup> 첫째아 출산 가구)을 구성하였다.

효과를 살펴봄에 있어서는 가구의 노동공급에 더하여 모(母)의 노동공급을 별도로 살펴본다.<sup>5)</sup> 이에 더하여, 자녀장려금을 수급하는 가구 중에서 근로장려금을 함께 수급하는 경우가 79%<sup>6)</sup> 정도로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두 제도를 중복 수급하는 경우 인센티브 구조의 변화(제Ⅲ장)와 그에 따른 이질적인 효과 또한 살펴보았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재정 및 조세제도를 통한 저출산 대응 현금성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제Ⅲ장은 자녀장려금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근로장려금과의 중복수급현황 및 인센티브 구조의 변화를 함께 살펴본다. 제Ⅳ장은 자녀장려금 도입이 가구의 출산직후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분석의 결과를 제시한다. 제Ⅴ장은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하며 마친다.

## II. 선행연구 조사

저출산 대응 현금성 지원의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지원정책이 (1)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나 (2) 동반효과로써 수혜가구, 특히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국내연구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크지 않지만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보고한다(이철희 외, 2023). 박창우·송헌재(2014)는 2005~2011년 전국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정책을 조사하고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여 출산장려금의 출산 제고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평균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첫째 출산이 평균 0.4%, 둘째 출산은 평

4) 2014년에 출산한 가구의 경우 2015년에 자녀장려금 수급자격은 주어지나 출산연도(2014년)에 제도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통제군으로 분류하였다.  
5) 모(母)의 노동공급효과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2024년 12월 발간 예정인 고지현·고창수(2024)에 포함되어 있다.  
6)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23.

균 0.4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은혜(2021)는 2007~2019년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출산장려금이 10만원 증가할 때 가임여성(15~49세) 1천명당 출생아 수가 0.048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교적 최근 도입된 중앙정부 현금성 지원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으나 가정양육수당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은 상이한 결과를 제시한다. 즉, 긍정적 효과를 보고하는 연구 결과(김미곤 외, 2019 등)들도 있지만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하는 연구 결과(이상협 외, 2016 등)가 혼재하여 뚜렷한 효과성을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현금성 지원정책은 소득효과를 통해 수혜가구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선행연구들은 특히 여성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조윤영(2006)은 동태적 생애주기 모형을 사용하여 정책모의 실험을 통해 다양한 출산장려 가족정책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중에서 0~5세까지의 아동수당이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조건 없이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여성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노동시장 참여율과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조윤영(2006)에 더하여 미혼자들의 혼인선택 문제를 고려한 우석진(2008) 또한 비슷하게 보편적 이 전지출은 여성 노동공급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고한다.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의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들 또한 대체로 부정적인 효과를 보고한다. 양미선 외(2022)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노동패널(2013~2019년)을 사용하고 고정효과 모형 및 이중차분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는데, 가정양육수당 지급 대상 자녀를 둔 여성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취업확률이 24% 가량 낮게 나타났다. 생애주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한종석 외(2017)는 양육수당이 있는 경제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였는데, 양육수당이 있는 경우 여성의 총 노동공급과 고용률이 그렇지 않은 경제보다 낮게 나타났다.

반면, 조세제도를 통한 현금성 지원정책이 출산율 및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자녀장려세제에 대한 몇몇의 연구가 존재한다. 먼저, 자녀장려세제가 가구근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로는 김재진·기은선(2019)이 있다. 김재진·기은선(2019)은 2015~2017년 한국복지패널조사(11~13차)자료를 사용하여 자녀장려세제의 근로장려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장려금 수급가구의 총근로개월 수가 유의하

이에 더하여,  
 현금성 지원정책은  
 소득효과를 통해  
 수혜가구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선행연구들은 특히  
 여성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고한다.

제Ⅲ장에서는 본고의 분석 대상인 자녀장려금제도의 개요와 수급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2009년에 시작된 근로장려금에 더하여 2015년에 자녀장려금이 도입됨에 따라서 근로·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가구들이 생겨났다. 이에, 근로·자녀장려금 중복수급현황을 살펴보고 이론적으로 두 가지 제도의 조합이 노동공급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

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동 연구는 여타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한계상 수급 여부에 의존한 분석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고지현(2022)은 한국아동패널 2009~2019년 자료를 활용하고 이중차분법 및 정책노출정도변수를 사용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이 출산기 및 양육기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4~2019년 근로·자녀장려금의 확대에 노동참여 및 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 4~7월에 출생한 신생아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고 있으며, 아동과 어머니의 특성을 함께 조사하여 출산 및 자녀의 영유아 및 아동기에 있는 여성들의 노동공급을 분석함에 장점이 있다. 반면, 동시에 2008년도에 출산한 여성들로 한정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 Ⅲ. 제도 소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녀양육비 경감을 위한 조세제도로는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소비행위에 의존하지 않는 자녀장려세제와 자녀세액공제 중 자녀세액공제는 공제액(15만~30만원/명)이 크지 않고, 도입 후 충분한 변동성이 확보되지 않아 단독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저소득자의 자녀양육을 보조하기 위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 2015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자녀장려세제는 2017년 재산요건 완화, 2019년 최대자녀장려금 인상 등을 거치며 수차례 확대되어 정책효과를 분석하기에 필요한 변동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된다.

제Ⅲ장에서는 본고의 분석 대상인 자녀장려금제도의 개요와 수급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2009년에 시작된 근로장려금에 더하여 2015년에 자녀장려금이 도입됨에 따라서 근로·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가구들이 생겨났다. 이에, 근로·자녀장려금 중복수급현황을 살펴보고 이론적으로 두 가지 제도의 조합이 노동공급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

## 1. 자녀장려세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2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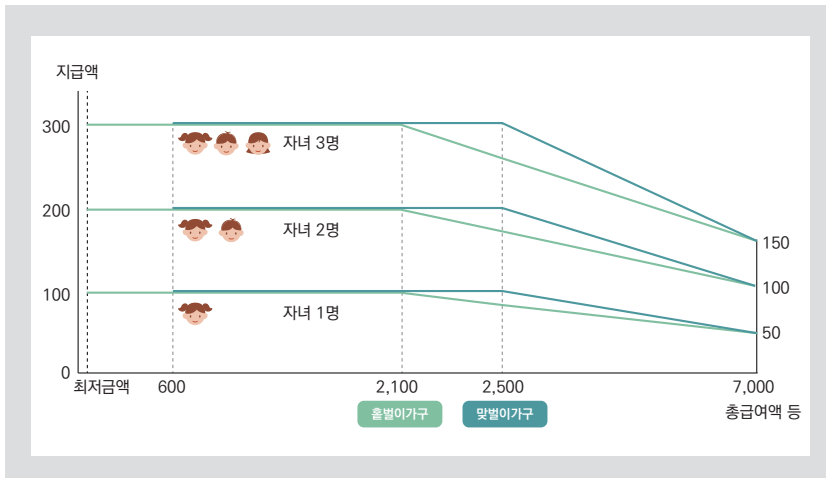
자녀장려세제는 ‘저소득자의 자녀양육을 보조하기 위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 2015년부터 지급된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이 2014년도부터 부양자녀 수에 따른 차등지급을 폐지하고 가구 형태에 따른 지급을 도입함에 따라 부양자녀의 수에 따른 장려금의 차등지급의 역할을 자녀장려금이 일정 부분 담당하게 되었다.

2024년 현재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7천만원 미만,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의 가구 중 자녀가 만 18세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자녀장려금은 일정한 소득수준까지는 자녀 1인당 일정한 금액의 장려금을 제공하다가 일정한 소득수준에 도달하면 장려금이 비례적으로 줄어드는 구조이다. 최대금액은 맞벌이의 경우 2,500만원 미만, 홑벌이는 2,100만원 미만인 경우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로는 최대금액에서 소득대비 1~1.1%의 점감률로 감소한다([그림 1] 참조).

자녀장려세제는 ‘저소득자의 자녀양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지급된 환급형 세액공제제도이다. 2024년 현재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7천만원 미만,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의 가구에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그림 1] 2024년 자녀장려세제

(단위: 만원)



출처: 국세청, 「자녀장려금소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1&cntntsId=7782>, 접속일자: 2024. 7. 14.

자녀장려금이 근로장려금과 다른 점은 점증구간 없이 평탄, 점감구간으로만 이루어졌다는 것과 근로장려금에 비해서 소득 수준이 더 높은 가구에게도 장려

자녀장려금 수급  
가구수 및 수급액은  
제도 도입당시보다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는 출생아 및  
아동인구의 감소나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명목소득의  
증가 등이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sup>7)</sup>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있어야 수혜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생적인 노동공급 효과는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존재하지만, 그 이후 점증구간 없이 평탄 및 점감구간만 존재하여 내생적인 노동공급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최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상한을 홑벌이와 맞벌이의 경우 다르게 설정함으로써 맞벌이를 저해하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자녀장려세제가 처음 도입되었던 2015년 이후로 2017년, 2019년, 2023년, 2024년도에 총 4번의 큰 변화가 있었다. 2017년 개정 때에는 재산요건을 완화하여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인 경우까지로 확대하였고, 2019년에 수급액을 20만원 더 증가시켜 자녀 1인당 장려금이 70만원으로 증가하였다. 2023년에는 재산요건을 2억 4천만원으로 한번 더 완화하고 최대 장려금을 80만원까지 인상하였으며, 2024년에는 소득구간을 최대 7천만원 미만으로 최대장려금을 100만원까지 인상하였다(<표 1> 참조).

반면, 자녀장려금 수급 가구수 및 수급액은 제도 도입당시보다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는 출생아 및 아동인구의 감소나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명목소득의 증가 등이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2015년 처음 자녀장려

<표 1> 자녀장려세제 평탄구간 및 점감구간 변천 과정

(단위: 만원)

시행연도	가구유형	평탄구간	점감구간			재산 요건
		최대 자녀장려금	점감률	점감구간 시작 소득	점감구간 최대 소득	
2015~2016년	홑벌이 가구	50	0.011	2,100	4,000	가구원이 무주택 또는 1세대 1주택,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50	0.013	2,500	4,000	
2017~2018년	모든 가구	-	-	-	-	주택요건 폐지,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
2019년	홑벌이 가구	70	0.011	2,100	4,000	-
	맞벌이 가구	70	0.013	2,500	4,000	
2023년	홑벌이 가구	80	0.016	2,100	4,000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80	0.020	2,500	4,000	
2024년	홑벌이 가구	100	0.010	2,100	7,000	-
	맞벌이 가구	100	0.011	2,500	7,000	

출처: 「조세특례제한법」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7) 2024년도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은 총소득 3,800만원 미만인 가구에게, 자녀장려금은 7천만원 미만인 가구에게 지급된다.

금이 지급될 당시 수급 가구수는 107만가구에 달했고, 총지급액은 6,579억원이었다. 그 후로 수급자 가구수 및 총지급액은 비슷하게 유지되거나 감소하여 2023년 수급가구의 수는 51만가구, 총지급액은 4,998억원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 2. 근로·자녀장려금 중복수급 현황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의 수급요건이 비슷하여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 이 두 장려금을 중복 수혜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부양자녀가 있으면서 근로장려금을 수혜한 가구는 41.4만가구이고 자녀장려금을 수혜한 가구는 51만가구이다. 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수혜한 가구는 40.5만가구였다. 즉, 전체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대부분(98%)과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의 반 이상(79%)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수급한 것이다(<표 2>) 참고).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만 수급하는 가구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수급하는 가구의 경우 노동유인 효과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추

전체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대부분(98%)과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의 반 이상(79%)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수급한 것이다.

<표 2> 근로·자녀장려세제 지급 현황: 유자녀 가구<sup>1)</sup>

(단위: 가구수, 백만원)

구분 연도	근로장려금 <sup>2)</sup>		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2008	-	-	-	-	-	-
2009	-	-	-	-	-	-
2010	-	-	-	-	-	-
2011	513,653	513,064	-	-	-	-
2012	435,697	431,316	-	-	-	-
2013	401,357	425,406	-	-	-	-
2014	584,320	547,774	1,074,814	657,898	572,465	534,554
2015	526,426	488,468	943,860	570,023	506,101	467,703
2016	475,048	462,441	1,061,797	563,670	465,740	455,093
2017	412,251	431,484	937,139	491,706	403,287	420,472
2018	629,294	924,055	879,302	754,361	651,524	956,376
2019	577,004	807,803	742,577	645,727	563,334	802,898
2020	526,376	734,588	704,543	605,951	519,683	733,114
2021	470,139	647,059	577,802	496,602	454,024	632,742
2022	414,029	620,682	514,573	499,832	405,019	615,842

주: 1) 해당연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 것을 기준으로 하며, 유자녀 가구에 한정함

2) 자녀 수에 따른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수 및 금액은 추정치 자료만 주어져 실제 수급 가구수 및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요함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구간별로 그 효과가 다르지만,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점증구간에서는 외연적 노동공급 효과가, 점감구간에서는 점감률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첫 자녀 출산 이후 자녀장려금을 새롭게 지급하는 경우 노동공급 제고의 가능성이 있다.

후 실증분석 시에도 고려할 만한 사항으로 보인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지급하는 경우 급여액에 따른 장려금의 크기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림은 각각 2021년 기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의 총급여액 등에 따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크기를 나타내고, 세 번째 그림은 두 제도를 중복수급하는 경우를 고려한 장려금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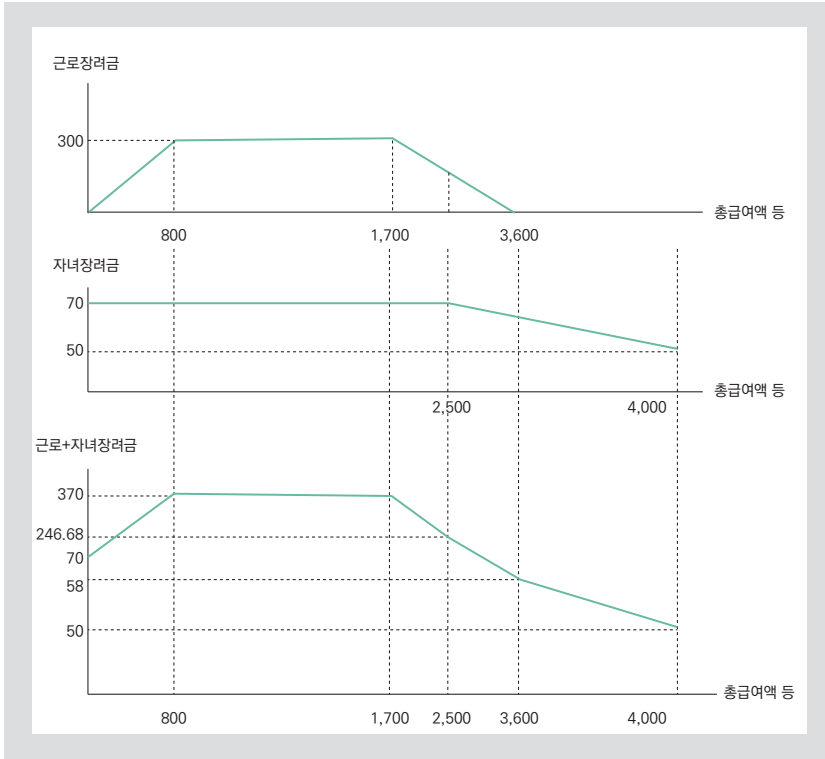
소득구간 3,600만원 미만의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지급하고, 3,600만~4,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만 지급하게 되는데, 자녀 출생 전과 후에 소득에 따른 장려금 지급액에 변화가 있다. 자녀 출생 전 근로장려금만 지급했던 경우(3,600만원 미만)는 자녀 출생 전 첫 번째 그림에서 자녀 출생 후 세 번째 그림으로 이동하게 된다. 반면, 자녀 출생 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경우(3,600만~4,000만원 미만)는 두 번째 그림(혹은 동일한 세 번째 그림)에서 3,600만~4,000만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새롭게 지급하게 된다.

좀 더 자세하게 인센티브 구조를 살펴보면, 800만원 미만은 점증구간, 800만~1,700만원은 평탄구간, 1,700만~4,000만원 미만은 점감구간이 형성된다. 기존에 점증구간(800만원 미만)에 위치한 가구들은 자녀출산 이후 자녀장려금으로 인하여 전에 비하여 외연적 노동공급 효과(extensive margin)를 더 크게 받게 된다. 평탄구간(800만~1,700만원)에서는 자녀장려금으로 인한 소득 효과를 크게 받게 되어 노동공급유인 저하(labor supply disincentive)가 커지게 된다. 점감구간인 1,700만~3,600만원 미만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지급하는 구간인데, 자녀장려금의 점감률(-13%)이 근로장려금의 점감률(-16%)보다 낮기 때문에 근로장려금만 지급했던 경우(-16%)에 비하여 점감률이 감소하는 구간(1,700만~3,600만원)이다. 두 번째 점감구간인 3,600만~4,000만원은 자녀장려금의 점감구간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이렇듯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구간별로 그 효과가 다르지만,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점증구간에서는 외연적 노동공급 효과가, 점감구간에서는 점감률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첫 자녀 출산 이후 자녀장려금을 새롭게 지급하는 경우 노동공급 제고의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제Ⅳ장의 실증분석 시 구간별 이질성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살펴보았다.

[그림 2] 2021년 근로 및 자녀장려금: 맞벌이 유자녀(1명) 가구

(단위: 만원)



출처: 저자작성

소득활동을 전제로 하지 않는 현금성 지원은 소득효과나 출산증가를 통해서 노동공급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동일한 현금성 지원이라도 '자녀장려금'과 같이 소득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는 세제 지원의 경우 이러한 부정적 효과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 IV. 자녀장려금 도입의 효과분석

### 1. 분석개괄

조세정책이 출산 후 여성의 근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제도는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자녀장려금'이다. 우석진(2008), 조운영(2006), Ang(2015) 등의 선행연구들은 최근에 도입되었거나 확대가 논의되고 있는 부모급여나 아동수당 등이 여성의 출산 후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즉, 소득활동을 전제로 하지 않는 현금성 지원은 소득효과나 출산증가를 통해서 노동공급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대부분 소득활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외연적 노동공급 효과가 크지 않거나 내연적 노동공급을 줄일 가능성도 존재할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제도 설계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향후 제도 확대 및 정책수단 선택 등에 참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반면, 동일한 현금성 지원이라도 ‘자녀장려금’과 같이 소득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는 세제 지원의 경우 이러한 부정적 효과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즉,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금 지원이 가져오는 소득효과를 통한 부정적 효과가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대부분 소득활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특히 홀벌이 가구나 저임금 가구의 경우) 외연적 노동공급 효과가 크지 않거나 내연적 노동공급을 줄일 가능성도 존재할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제도 설계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향후 제도 확대 및 정책수단 선택 등에 참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재정패널 2-16차(2009~2023년) 데이터를 사용한 출산력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자녀장려금의 도입이 출산을 경험한 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아 출산 3년 전부터 출산 이후 1년까지(영아기) 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서는 Kleven et al(2022)에서 육아휴직 도입이 모성패널티(Child Penalty)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한 이중차분 이벤트스터디(Difference-in-differences event study model) 방식을 사용한다. 즉, 첫 출산이라는 사건(Event)을 경험한 가구의 동적(출산 전 3년~출산 후 1년) 노동공급 및 소득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 출생연도에 따라서 출산 시 제도의 인지 및 출산 후 수급자격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처치군과 통제군을 구성하였다. 즉, 처치군은 자녀 장려금이 도입된 2015년 이후(2015~2021년)에 첫째아를 출산 가구로, 통제군은 자녀 장려금이 도입되기 이전(2011~2014년)에 첫째아를 출산한 가구로 정의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표본과 식별전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어지는 절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 2. 데이터 및 기초통계량

### 가. 데이터 및 표본 소개

분석을 위해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재정패널 2-16차(2009~2023년)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분석기간은 종속변수 기준 2008~2022년이다. 1차년도(2008년) 데이터는 주요 사용 변수 중 조사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재정패널은 조세·재정 관련

정책 및 행정에 대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2008년부터 조사를 시작하였다. 즉, 가계의 조세 부담 및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과 함께 성별, 연령 등의 인구통계적 변수와 자산, 소비, 소득 등 사회경제적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sup>8)</sup> 재정패널은 본 장의 분석 대상인 근로·자녀장려금<sup>9)</sup>의 실제 수급여부 및 수급액 정보와 수급 자격을 추정할 수 있는 재산 및 소득변수 또한 포함하고 있어 제도 효과분석에 대한 활용도가 높다. 출산 전후의 여성노동공급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에 자주 사용되었던 데이터로는 노동패널이 있는데(곽은혜·김민희, 2023; 양미선 외, 2022; 김지경, 2003), 재정패널은 소득공제내역 증빙서류를 수집함으로써 좀 더 정확하고 상세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결정세액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또한, 가구주와의 관계정보를 통해서 첫째아의 출생연도와 그와 매칭되는 어머니의 소득활동 정보를 추출할 수 있어 첫째아 출산 전후 어머니를 포함한 가구의 노동공급 변화를 살펴보기에 용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나 가구주의 배우자 중 남성을 아버지로, 여성을 어머니로 상정하였다. 또한, 가구주의 자녀정보를 사용하여 첫째 아이를 식별하고 여성 가구주나 남성 가구주의 배우자를 아동의 어머니로 정의하였다. 자녀장려세제가 영아기 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친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첫째아 출산 3년 전부터 출산 후 1년까지 총 4년의 윈도우를 사용하였다. 그에 따라, 2011~2021년<sup>10)</sup>에 첫째아를 출산한 가구가 분석 대상이 된다.

이에 더하여서, 본 분석에서 사용하는 대조군과 통제군의 이질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표본을 ‘자녀장려금 수급가능 가구’로 한정하였다. 이를 위하여서는 2021년 자녀장려금 소득요건(가구 총소득 4천만원 미만<sup>11)</sup>)과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재산 2억원 미만)을 참고하여 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만족시키는 가구를 표본을 한정하였다. 소득은 가구 총소득이 아닌 출산 1년 전 아버지의 총소득<sup>12)</sup>을 기준으로 2021년 소득요건과 같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사용하였다. 이는 출산시점에는 모(母)의 노동공급이 존재하지 않아 가구소득이 아버지의 소득과 같을 것이라고 가정한 것이다. 재산은 출산 1~3년 전 평균 재산이 3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하였다. 2021년 재산요건은 2억원 미만이지만, 재정패널에 포함된 자녀장려금 수급자들의 평균 재산수준을 살펴본 결과 3억 4,900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장려금 산정 시 재산은 시가표준액을 사용하나 재정패널에서는 시가총액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자녀장려세제가 영아기 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친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첫째아 출산 3년 전부터 출산 후 1년까지 총 4년의 윈도우를 사용하였다. 그에 따라, 2011~2021년에 첫째아를 출산한 가구가 분석 대상이 된다.

8) 재정패널 조사 개요, [https://www.kipf.re.kr/panel/intro\\_Summary.do](https://www.kipf.re.kr/panel/intro_Summary.do), 접속일자: 2024. 6. 20.  
 9) 자녀장려금의 수급 여부 및 수급액은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뒤인 2016년 수급정보(2017년 10차 자료)부터 포함하고 있다.  
 10) 조사연도기준 작년의 노동공급 및 소득변수를 조사함에 따라, 2021년생까지만 분석에 포함되었다.  
 11) 근로장려금의 수급 요건은 총소득 3,600만원 미만  
 12) 아버지의 총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으로 정의하였는데, 사업소득은 근로·자녀 장려금 소득 산정에 사용되는 업종별 조정률을 반영하여 계산하였다. 본래, 총소득에 포함되는 종교인 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은 자료의 한계상 고려하지 않았다.

처치군과 통제군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처치군은 통제군에 비하여 자녀장려금을 수급할 확률이 높고, 소득·학력·근로 측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실제로, 재산을 2억원 미만으로 제한하게 되면 반 이상의 자녀장려금 수급자들을 제외하게 되어 다소 완화된 재산요건을 적용하였다.

#### 나. 기초 통계량

<표 3>은 앞서 설명한 표본에 포함된 2011~2021년에 첫째아를 출산한 자녀장려금 수급가능 가구, 어머니, 아버지 특성을 보여준다. 칼럼(1)~(2)는 전체 표본의 통계량을, 칼럼(3)~(4)는 처치군의 통계량을, (5)~(6)은 통제군의 통계량을 보여준다.

처치군은 자녀장려금이 도입된 2015년 이후(2015~2021년)에 첫째아를 출산한 가구로, 통제군은 자녀장려금 도입 이전(2011~2014년)에 첫째아를 출산한 가구로 정의한다. 처치군과 통제군은 각각 소득 및 재산요건 측면에서는 자녀장려금 수급요건을 만족하나, 첫째자녀의 탄생연도에 따라서 제도인지 및 수급 경험 유무가 다르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즉, 처치군은 첫째아를 출산한 연도에 자녀장려금이 시행되어 제도 인지와 출산 후 금전적 인센티브를 통해 출산 이후 노동공급 결정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며, 통제군은 첫째아를 출산한 해에 자녀장려금에 대한 인지도나 수급경험이 없는 가구이다.<sup>13)</sup>

처치군과 통제군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처치군은 통제군에 비하여 자녀장려금을 수급할 확률이 높고, 소득·학력·근로 측면에서 통제군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먼저, 칼럼 (1)~(2)의 가구특성을 살펴보면 처치군의 가구 평균소득은 2,973만원으로 통제군의 2,104만원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재산 수준 또한 2억 446만원으로 통제군의 재산 수준인 1억 6,740만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평균 가구원 수는 처치군에서 2.62명, 통제군에서 2.45명으로 대체로 부부와 1명의 아동으로 이루어진 가구로 보인다.

근로 및 자녀장려금의 실제수급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를 살펴본 결과 근로 및 자녀장려금 수급확률이 처치군(1%)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실제 수급자를 많이 포함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 차년도에 수급 여부 조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가능성과 재정패널의 자녀장려금 수급정보가 2016년(수급연도)부터 수집되어 첫해인 2015년의 수급 여부 정보가 누락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그에 더하여, 재정패널에 포함된 자녀장려금 실제 수급자가 2017~2023년(수급연도 기준 2016~2022년) 기간 동안 매년 55~116명 정도로 많지 않아 실제 자녀장려금 수급자에 대한 대표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존

13) 2014년에 출산한 가구의 경우 2015년에 자녀장려금 수급자격은 주어진 출산 연도(2014년)에 제도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통제군으로 분류 하였다.

재해 보인다. 재정패널에서 수집하고 있는 자녀장려금 정보의 대표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표본에 포함되어 있는 실제 수급자의 수가 적다는 점은 본 분석의 한계점이다.

어머니의 특성이 나타나있는 Panel B를 살펴보면, 처치군에 포함된 어머니는 노동시장 참여, 총소득(근로+사업소득), 교육수준이 통제군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시장 참여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는 총소득 존재 여부와 주중근로시간 여부 변수이다. 두 변수 모두에서 어머니의 노동시장 참여는 처치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처치군의 총소득 존재확률은 38%로 통제군(29%)보다 높았고, 주중근로시간 여부 또한 59%로 통제군의 40%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중근로시간 존재 여부를 통해서 살펴본 노동시장 참여 여부가 소득지표를 사용한 것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정보가 수집되는 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총소득정보는 소득이 존재한다고 답한 가구원들만 조사하는 가구원 조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가구원이 조사되지 않아 누락된 정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근로시간 정보의 경우 가구에 포함된 가구원 전체에 대하여 시행되는 조사에서 수집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소득원을 살펴보면 처치군과 통제군 모두 근로소득자가 대부분이었다. 처치군의 경우 상용직이 1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임시 및 일용직(4%), 정부기관 종사자(4%)로 나타났다. 반면, 통제군은 상용직이 1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도매 및 소매업자(2%)로 나타나 종사상 직위 및 종사 직종에서 다소 차이가 발견되었다. 학력 수준을 살펴보면 처치군의 경우 85%정도가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반면, 통제군에 포함된 어머니는 74% 정도가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학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처치군과 통제군 모두 첫째아 출생 시의 연령이 31세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특성 또한 어머니의 특성과 비슷한 패턴이 관찰되었으나, 두 그룹 간 차이는 더 작게 나타났다. Panel C에 나타난 아버지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아 출생 시 평균 연령은 33세로 처치군과 통제군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처치군의 학력 수준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총소득 여부 및 주중근로시간 여부로 측정한 노동시장 참여 수준은 처치군에서 63~98%, 통제군에서 70~99%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총소득은 처치군에 2,164만원으로 통제군(1,502만원)보다 높게, 주중평균 근로시간은 처치군에서 46시간으로 통제군에서 47시간보다 적게 나타났다. 종사상 직위 또한 비슷하게 나타나서, 상용직의 비중이 각각 36%,

이렇듯 처치군과 통제군은 아버지의 특성은 비슷하나, 종속변수인 어머니의 노동공급 및 소득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여러변수에서 발견되는 상이한 모습들은 코호트(출생연도)에 따라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아버지 및 어머니의 특성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이어지는 회귀분석에서는 공통추세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았다.

<표 3> 기초통계량

(단위: 만원, 명, 세)

구분	전체		처치군		통제군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b>A. 가구 특성</b>						
총소득 <sup>4)</sup> 존재 여부	0.68	0.47	0.65	0.48	0.70	0.46
총소득	2571.29	2669.74	2973.25	3343.91	2103.55	1420.86
총소득(조정률)	1902.49	1440.60	2018.94	1562.08	1766.99	1273.52
재산	18671.10	13623.07	20445.84	14455.76	16739.75	12395.03
가구원 수	2.54	0.57	2.62	0.60	2.45	0.52
특별시 광역시 거주	0.41	0.49	0.36	0.48	0.48	0.50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	0.01	0.11	0.02	0.13	0.01	0.07
자녀장려금 수급 여부	0.003	0.06	0.01	0.09	0.00	0.00
<b>B. 어머니 특성</b>						
연령(첫째아 출생 시)	31.24	4.01	31.22	4.28	31.26	3.68
고등학교 미만	0.01	0.11	0.00	0.00	0.03	0.16
고등학교 졸업	0.19	0.39	0.15	0.36	0.23	0.42
대학교 이상	0.80	0.40	0.85	0.36	0.74	0.44
총소득 여부	0.34	0.47	0.38	0.48	0.29	0.46
근로소득 여부	0.31	0.46	0.33	0.47	0.29	0.45
사업소득 여부	0.03	0.16	0.04	0.20	0.01	0.09
주중근로시간 여부	0.50	0.50	0.59	0.49	0.40	0.49
총소득	713.35	896.17	809.38	952.97	601.61	812.20
총소득(조정률)	696.12	873.45	782.75	922.30	595.31	802.41
근로소득	650.62	857.55	709.61	906.58	581.98	792.36
사업소득	62.73	340.98	99.77	448.26	19.63	120.59
주중근로시간	25.70	16.83	26.89	17.24	23.19	15.88
상용직	0.18	0.38	0.17	0.38	0.18	0.38
임시일용	0.03	0.17	0.04	0.20	0.01	0.11
자영	0.02	0.13	0.02	0.15	0.01	0.09
고용없는 자영	0.02	0.12	0.02	0.15	0.01	0.09
무급가족	0.01	0.08	0.01	0.11	0.00	0.00
공공기관	0.00	0.06	0.01	0.08	0.00	0.00
정부기관	0.03	0.16	0.04	0.19	0.01	0.11
농업	0.00	0.00	0.00	0.00	0.00	0.00
도매소매업	0.02	0.13	0.02	0.14	0.02	0.12
협회	0.02	0.15	0.02	0.14	0.02	0.15
<b>C. 아버지 특성</b>						
연령(첫째아 출생 시)	33.41	3.83	33.35	3.98	33.48	3.65
고등학교 미만	0.00	0.00	0.00	0.00	0.00	0.00
고등학교 졸업	0.14	0.34	0.12	0.32	0.16	0.36
대학교 이상	0.86	0.34	0.88	0.32	0.84	0.36
총소득 여부	0.66	0.47	0.63	0.48	0.70	0.46

<표 3>의 계속

근로소득 여부	0.56	0.50	0.52	0.50	0.61	0.49
사업소득 여부	0.11	0.31	0.12	0.33	0.09	0.29
주중근로시간 여부	0.98	0.13	0.98	0.15	0.99	0.11
총소득	1857.94	2260.17	2163.88	2882.66	1501.94	1076.49
총소득(조정률)	1206.37	912.35	1236.19	981.37	1171.68	824.70
근로소득	1186.21	909.89	1205.61	978.70	1163.63	823.31
사업소득	671.73	2351.43	958.26	3024.35	338.32	1060.86
주중근로시간	46.58	781	46.33	6.75	47.14	9.89
상용직	0.39	0.49	0.36	0.48	0.43	0.50
임시일용	0.03	0.16	0.03	0.16	0.03	0.17
자영	0.09	0.28	0.10	0.31	0.07	0.25
고용없는 자영	0.07	0.26	0.08	0.28	0.06	0.24
무급가족	0.00	0.03	0.00	0.00	0.00	0.05
공공기관	0.01	0.08	0.00	0.05	0.01	0.10
정부기관	0.02	0.15	0.02	0.15	0.02	0.13
농업	0.00	0.05	0.00	0.00	0.01	0.07
도·소매업	0.06	0.23	0.06	0.24	0.05	0.23
협회	0.05	0.21	0.05	0.21	0.04	0.21
관측치(개인)	161		84		77	
전체 관측치(개인×시점)	833		448		385	

주: 1. 기초통계량은 2~16차 재정패널자료(2009~2023년)를 사용하고 어머니 소득 유무변수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에 사용된 표본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2. 표본은 '자녀장려금 수급이 가능 가구'로 출산 당시 아버지 총소득(조정률 적용)이 4천만원 미만과 재산이 2억원 미만인 가구이다.
3. 통제군은 자녀장려금의 도입(2015년)의 영향을 받지 않은 2011~2014년 출생아의 어머니, 처치군은 2015~2021년 출생아의 어머니이다.
4. 총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5.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평균은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한정된 수치이다.

출처: 저자 작성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은 자영업자가 10%, 7%, 도매 및 소매업이 6%, 5%로 나타났다.

이렇듯 처치군과 통제군은 아버지의 특성은 비슷하나, 종속변수인 어머니의 노동공급 및 소득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여러변수에서 발견되는 상이한 모습들은 코호트(출생연도)에 따라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아버지 및 어머니의 특성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이어지는 회귀분석에서는 두 그룹의 노동공급 및 소득의 차이를 교육수준 및 연령 변수를 통해 통제하고 출생이라는 사건 전후에 공통추세조건(Common Trend Assumption)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추정치의 편의발생 가능성을 검토해보았다.

본 회귀분석에서  
처치군과 통제군은  
첫째 자녀의  
출생연도에 따라서  
정의된다.

### 3. 식별전략

자녀장려금 도입이 만 0-1세 이하 영아기 아동(첫째아)을 둔 가구의 동적인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Kleven et al.(2022)에서 사용된 이중차분 이벤트스터디(Difference-in-Differences Event Study Model) 방법을 사용하였다. Kleven et al.(2022)은 육아휴직도입에 따른 여성의 노동공급 및 임금의 동적인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모성페널티(Child Penalty)를 계산하였는데, 본고에서는 Kleven et al.(2022)의 모형을 자녀장려금 도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적절히 변형한 다음의 식 (1)을 사용하였다.

$$Y_{ist} = \sum_{j \neq -1} \alpha_j \cdot I[j = t] + \sum_{j \neq -1} \beta_j \cdot I[j = t] \text{ Treat}_i + \sum_k \gamma_k \cdot I[k = \text{age}_{is}] + \sum_y \delta_y \cdot I[y = s] + \text{edu}_i + \epsilon_{ist} \quad \text{식 (1)}$$

회귀식에서 종속변수인  $Y_{ist}$ 는 가구  $i$ 의  $s$ 연도 결과변수로 소득활동 정도(총소득, 주중근로시간) 및 소득활동 여부(총소득 여부, 주중근로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를 사용하였다. 총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을 의미한다.  $t$ 는 이벤트(출산)시점으로 조사연도( $s$ )와 첫째아 출산연도와의 차이를 의미하는데, 출산연도에는  $t=0$ 이 되고, 출산 1년 후에  $t=1$ , 출산 3년 전에는  $t=-3$  등으로 정의된다. 회귀식에는 출산 1년 전( $j \neq -1$ )을 제외한 모든 이벤트 타임 더미( $I[j = t]$ )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 회귀식의 관심계수인  $\beta_j$ 는 첫째아 출산 직전해 대비  $j$ ( $-3, -2, 0, 1$ )기의 처치군의 상대적인 노동공급을 의미하는데, 이를 통해 동적인 노동공급 효과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생애주기 트렌드를 비모수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가구주 연령 더미  $I[k = \text{age}_{is}]$ 와 경기순환, 최저임금상승, 물가상승으로 인한 임금상승 효과 등을 통제하기 위한 연도고정효과 더미변수( $I[y = s]$ )를 포함하였다. 연도고정효과의 경우 본 분석에 사용된 식별전략의 특성으로 인하여 2008~2022년 연도고정효과의 일부가 통제군 혹은 처치군에 의해서만 추정된다. 즉, 2008~2010년의 연도고정효과는 통제군에 의해서, 2016~2022년의 연도고정효과는 처치군에 의해서 추정되는데 이는 연도고정효과를 온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별 여성 취업률을 추가로 통제해 본 결과, 추정 결과는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지역정보의 누락이 빈번

하게 발생함에 따라 표본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 주된 분석 결과로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 외에도 곽은혜·김민희(2023)에서와 같이 Kleven et al.(2022)의 방식에 더하여 가구주 교육 수준( $edu_i$ )을 통제함으로써 학력에 따라 생애주기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고려하였다.

$Treat_i$ 는 처치군의 경우 1이 되고 통제군의 경우 0이 되는 이항변수이다. 본 회귀분석에서 처치군과 통제군은 첫째 자녀의 출생연도에 따라서 정의된다. 처치군은 자녀장려금의 도입 이후(2015~2021년) 첫째아를 출산한 가구로, 통제군은 자녀장려금의 도입 이전(2011~2014년)에 첫째아를 출산한 가구로 정의한다. 통제군의 대부분인 2011~2013년 출생아의 가구는 출산 후 1기에도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2014년 출생아 가구는 2015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되므로 출생아가 만 1세일 경우(출산 후 1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반면, 본고에서는 출생연도에 제도를 인지하는 것 또한 처치(Treatment)의 일부로 정의하고 있어, 2014년 첫째아 출산 가구를 통제군으로 분류하였다. 강건성 분석의 일환으로 2014년도 첫째아 출산 가구를 제외하고 분석을 하였으나, 표본의 수가 크게 감소하는 반면 분석 결과에는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아 2014년도 첫째아 출산 가구를 통제군으로 사용한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차분법에 기반하고 있는 본 회귀분석에서 중요한 가정은 처치군과 통제군 간에 출산 전 종속변수의 공통추세가정(Common Trend Assumption)이 성립하는가이다. 특히, 기초 통계량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치군과 통제군은 가구 특성에 다소 차이가 있어 평행추세 가정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이는 식 (1)에서  $\beta_{-3}$ 과  $\beta_{-2}$ 의 크기가 0에 가까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회귀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 함께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는 식 (1)을 사용한 종속변수인  $Y_{ist}$ 에 대한 추정치인  $\hat{\beta}_t$ 를 모성 패널티(Child Penalty) 문헌의 전통에 따라 정규화된 수치( $P_t$ )로 제시하였다. 즉, 아래 식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추정치인  $\hat{\beta}_t$ 를 출산의 효과를 제거한  $t$ 기 종속변수( $\tilde{y}_{ist}$ )에 대한 처치군(2015~2021년 출생아 가구)의 평균과의 상대적인 크기( $P_t$ )로 변환하고 이를 보고한다.

$$P_t = \frac{\hat{\beta}_t}{E[\tilde{Y}_{ist}|t]} \quad \text{식 (2)}$$

$$\tilde{y}_{ist} = \sum_k \hat{\gamma}_y \cdot I[K = age_{is}] + \sum_k \hat{\delta}_y I[y = s] + edu_i + \epsilon_{ist} \quad \text{식 (3)}$$

통제군의 대부분인 2011~2013년 출생아의 가구는 출산 후 1기에도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2014년 출생아 가구는 2015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되므로 출생아가 만 1세일 경우(출산 후 1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림 3], [그림 4]는 처치군인 2015~2021년에 첫째아를 출산한 가구의 노동공급이 대조군인 2011~2014년에 첫째아를 출산한 가구(대조군)에 비하여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나타내는데,  $t$ 기 처치군의 평균적인 노동공급에 대한 비율로 표현되어 있다.

$P_t$ 는  $t$ 기에 출산이라는 이벤트가 없었을 시의 결과변수( $\bar{y}_{ist}$ )의 평균과 대비 비율(%p)로 변환된 효과를 의미하는데, 이 수치는 분석 결과를 시각화한 그림에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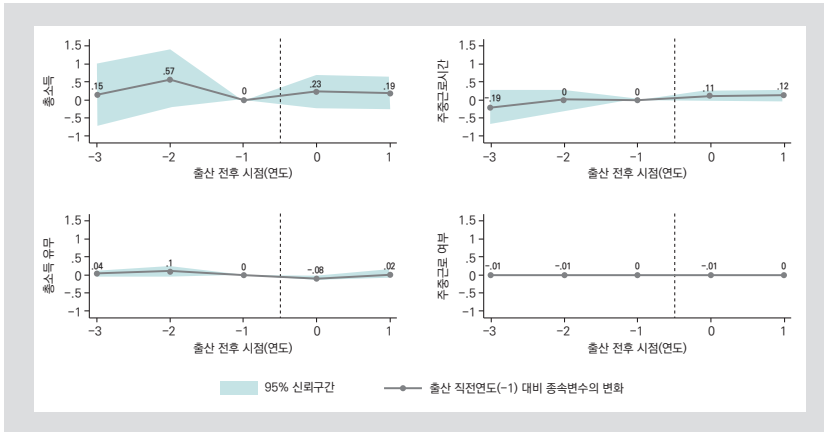
## 4. 분석 결과

### 가. 가구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분석

먼저, 자녀장려금의 도입이 가구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3], [그림 4]와 같다. [그림 3], [그림 4]는 처치군인 2015~2021년에 첫째아를 출산한 가구의 노동공급이 대조군인 2011~2014년에 첫째아를 출산한 가구(대조군)에 비하여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나타내는데,  $t$ 기 처치군의 평균적인 노동공급에 대한 비율로 표현되어 있다. 즉, 식 (1)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식(2)와 같이 정규화하여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기 앞서 먼저 식별전략이 유효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처치군과 대조군 간 공통추세가정(Common Trend Assumption)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는 식 (1)에서  $\beta_{-3}$ 과  $\beta_{-2}$ 의 크기가 0에 가까운지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림 3]에 나타난 -3기, -2기의 추정치에 대한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는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확인 결과 총소득, 주중근로시간, 총소득 여부 및 근로시간 여부 측면 모두에 대해서 이벤트(출산) 전 처치군과 통제군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공통추세가정(Common Trend Assumption)을 위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노동공급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15년 자녀장려금의 영향(제도인지 및 수급)을 받은 처치군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하여 출산연도 및 출산 1년 후 총소득과 주중근로시간이 대체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그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출산 당시 총소득이 존재할 확률은 8%p, 근로 여부를 나타내는 주중근로시간 여부는 1%p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주중근로시간 여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는 출산 1년 후에는 사라졌다.

[그림 3] 자녀장려금 도입이 가구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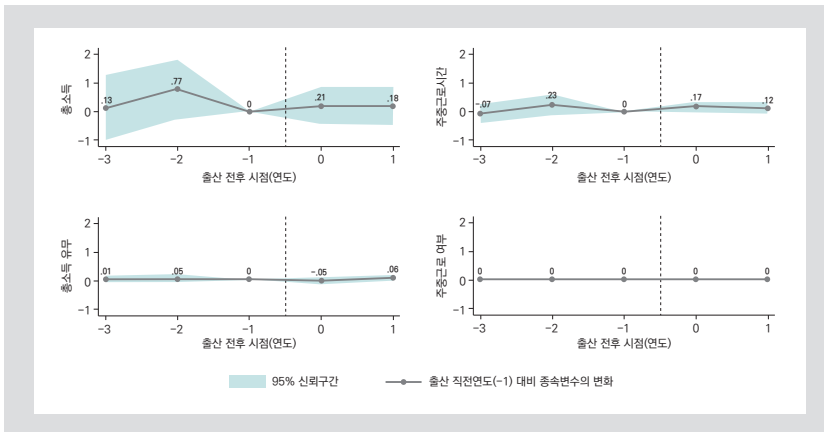


- 1. 그림은 재정패널(2~16차)데이터에 포함된 2021년 자녀장려금의 소득요건(아버지 총소득 기준 4천만원 미만)을 만족하면서 자산수준이 낮은(3억 5,000만원 미만) 표본이며, 이중차분사건연구방식을 사용하여 2015년 자녀장려금 도입에 따른 처치군의 동적인 가구노동공급을 출산 1년 전과 비교한 추정치이다.
- 2. 각각의 추정치는 식(1)에서의 추정치를 (2)의 방식을 따라 정규화한 값으로, 2015~2021년 출생아 가구의 평균적인 노동공급 대비 비율로 표현되었다.
- 3. 음영구간은 95% 신뢰구간을 나타낸다.

출처: 저자작성

가구단위로 주어지는 현금성 지원이 소득효과를 통하여 노동공급을 줄일 것이라는 이론적인 예측과는 달리 자녀장려금의 도입이 가구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뚜렷한 실증적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그림 4] 자녀장려금 도입이 가구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소득활동자



- 1. 그림은 재정패널(2~16차)데이터에 포함된 2021년 자녀장려금의 소득요건(아버지 총소득 기준 4천만원 미만)을 만족하면서 자산수준이 낮은(3억 5천만원 미만) 표본이며, 이중차분사건연구방식을 사용하여 2015년 자녀장려금 도입에 따른 처치군의 동적인 가구노동공급을 출산 1년 전과 비교한 추정치이다.
- 2. 각각의 추정치는 식(1)에서의 추정치를 (2)의 방식을 따라 정규화한 값으로, 2015~2021년 출생아 가구의 평균적인 노동공급 대비 비율로 표현되었다.
- 3. 음영구간은 95% 신뢰구간을 나타낸다.

출처: 저자작성

자녀장려금 수급이 모(母)의 출산 후 근로정도(총소득, 주종근로시간) 및 근로 여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분석 결과 자녀장려금을 인지 및 수급하는 경우, 출산 1년 후 총소득 여부, 근로 여부, 주종근로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미 출산 전기(-1)에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던(총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가구에 한정하여 분석한 [그림 4]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출산 1년 후 처치군의 총소득(18%p)과 주종근로시간(12%p)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출산연도 주종근로시간의 증가(17%p)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반면, 총소득 여부는 출산연도(5%p)에 감소하였으나, 부정적인 효과는 1년 후에 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근로시간 존재 여부는 표본을 한정함에 따라 충분한 변동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앞에서 얻은 추정치는 식별전략의 한계상 2015년 이후 처치군과 통제군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거시경제적 요인 등이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의 효과로만 단정지을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2015년 이후 가구 노동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적 변화(보육서비스, 현금성 지원의 확대, 출산 후 다양한 인프라 및 지원정책 등)가 있었다면 이는 처치군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추정치에는 그 효과가 일부 포함되어 나타날 것이다. 또한, 2020~2021년에 있었던 코로나19도 처치군의 일부 그룹에게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 이러한 효과가 혼합되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강건성 분석의 일환으로 자녀장려금 수급자격이 없는 그룹(고자산·고소득 가구)을 사용한 삼중차분법(Tripplle Differnece-in -Differences)분석으로 제도효과를 제거하여 보거나, 2020년을 제외한 표본을 사용한 분석을 실시하여 보았으나 결론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가구단위로 주어지는 현금성 지원이 소득효과를 통하여 노동공급을 줄일 것이라는 이론적인 예측과는 달리 자녀장려금의 도입이 가구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뚜렷한 실증적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 나. 모(母)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

앞선 분석을 통해 자녀장려금 도입이 출산 후 가구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가구원들의 노동공급 변화를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항에서는 출산으로 노동시장참여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母)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추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자녀장려금의 도입으로 가구 내 노동공급형태에 변화유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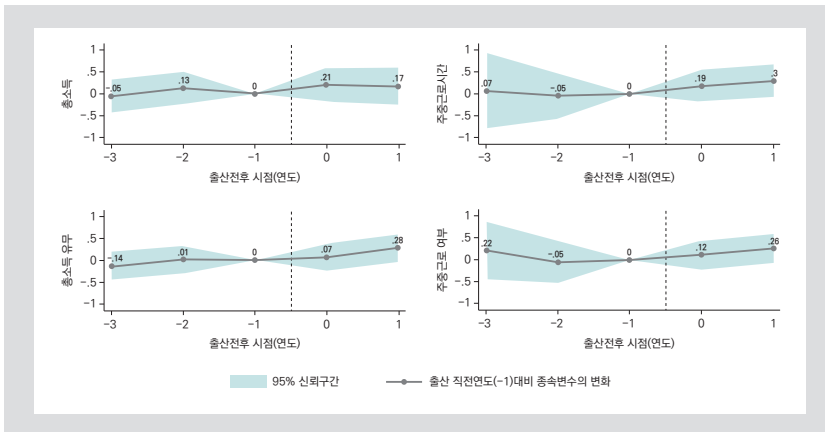
자녀장려금 수급이 모(母)의 출산 후 근로정도(총소득, 주종근로시간) 및 근로 여부(총소득 여부, 근로 여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5]와 같

다. 분석 결과 자녀장려금을 인지 및 수급하는 경우, 출산 1년 후 총소득 여부, 근로 여부, 주중근로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출산 1년 후 총소득이 존재할 확률은 출산 1년 전에 비하여 28%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주중 근로시간에 기반한 근로 확률 또한 26%p 증가하였고 주중 근로시간은 7.2시간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총소득에서도 유의한 변화를 찾지 못하였다.

Ang(2015), 우석진(2008) 등의 선행연구는 저출산 대응으로 시행되는 현금지원 정책이 동반효과로써 여성의 노동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고한다. 자녀장려금을 가구단위로 제공되는 양육비 지원으로 이해한다면, 자녀장려금 또한 소득 효과나 출산율 제고를 통해서 여성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예측과는 달리 본 실증분석은 기존 현금성 지원정책에서 발견되는 부정적인 노동공급 효과가 자녀장려금에서는 발견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앞선 가구단위 노동공급의 결과와 함께 해석해본다면, 가구의 노동공급변화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부(父)의 노동공급 증가를 동반한 모(母)의 노동공급 감소를 의미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측과는 달리 본 실증분석은 기존 현금성 지원정책에서 발견되는 부정적인 노동공급 효과가 자녀장려금에서는 발견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림 5] 자녀장려금 도입이 모(母)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 1. 그림은 재정패널(2~16차)데이터에 포함된 저자산(3억 5천만원 미만)-저임금(아버지 총소득 4천만원 미만) 표본을 사용하여 자녀장려금(출산연도)수급이 어머니의 임금 및 노동공급의 동적변화에 미치는 상대적 효과(출산 1년 전 대비)를 나타낸다.
- 2. 각각의 추정치는 식(26)에서의 추정치를 (27)의 방식을 따라 정규화한 값으로, 2015~2021년 출생아 가구의 평균적인 노동공급 대비 비율로 표현되었다.
- 3. 음영구간은 95% 신뢰구간을 나타낸다.

출처: 저자작성

본 항에서는 주된 분석에서 살펴본 노동공급의 변화가 특정한 소득구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 파악해 봄으로써, 근로·자녀장려금이 형성하고 있는 상이한 인센티브 구조가 노동공급의 차이로 이어지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 다. 이질성 분석: 소득구간별 분석

본 항에서는 주된 분석에서 살펴본 노동공급의 변화가 특정한 소득구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 파악해 봄으로써, 근로·자녀장려금이 형성하고 있는 상이한 인센티브 구조가 노동공급의 차이로 이어지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제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에 근로장려금을 수급하고 있던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는 상이한 노동공급 제고 효과를 받는다. 즉, 2021년 기준 근로장려금을 수급하고 있었던 가구에는 자녀장려금의 도입으로 점증구간(0~800만원)에서 좀 더 큰 외연적 노동공급 제고 효과를, 평탄구간(800만~1,400만원)에서는 증가한 소득효과, 점감구간(1,400만~3,600만원)에서는 점증률이 감소하면서 노동공급 저해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기존 근로장려금을 수급하지 않았던 가구(3,600만~4,000만원)는 자녀장려금의 점감구간에 위치하게 되면서 내연적 노동공급 제고 효과는 받지 못하는 구조에 있다.

본 항에서는 제도의 소득구간별 이질적 효과를 살펴보고자, 소득구간을 2021년 기준 점증 및 평탄에 해당하는 1,400만원 미만, 첫 번째 점감구간인 1,400만~3,600만원 미만, 두 번째 점감구간인 4천만원 미만으로 구분하고 제도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구간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점증구간의 경우 표본의 수가 많지 않아 평탄구간과 합하여 결과를 살펴본다. 이질성 분석을 위한 통계군 또한 처치군과 같은 소득 및 재산요건을 적용한 부표본을 사용하였다.

먼저, [그림 6]은 점증 및 평탄구간(1,4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한 자녀장려금 도입이 가져오는 노동공급 효과를 보여주는데, 총소득과 관련한 변수에서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그림 7]에 따르면, 총소득은 출산 1년 후 평균 대비 116%p로 다소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앞선 [그림 3]에서 나타난 총소득 증가의 효과는 주로 점증 및 평탄구간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총소득이 존재할 확률이 12%p 증가하거나 주중근로시간이 1%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근로시간이 존재할 확률은 충분한 변동성이 확보되지 않아 분석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다.

반면, [그림 7]에 나타난 첫 번째 점감구간(1,400만~3,600만원 미만)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줄어들거나 부정적 효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구간에 해당하는 처치군의 경우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총소득이 20%p 감소하고, 총소득이 존재할 확률이 5%p 감소하여 전체표본에서의 분석과 다소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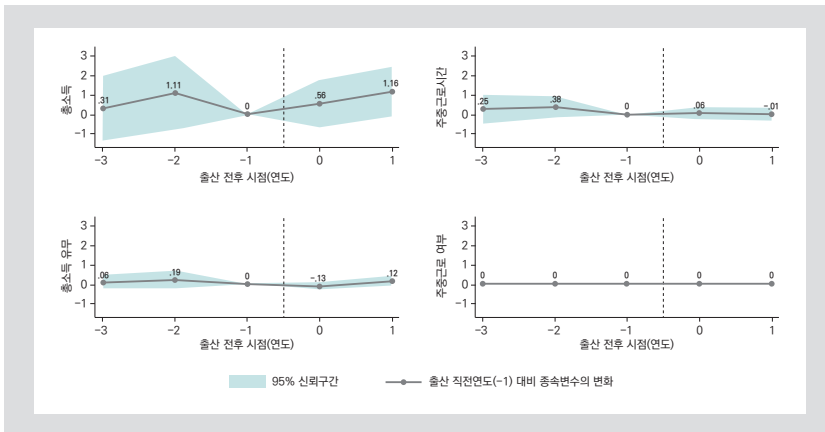
이가 있었다. 주중근로시간은 12%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근로시간이 존재할 확률은 마찬가지로 충분한 변동성이 확보되지 않아 분석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림 8]은 새롭게 자녀장려금을 수급하게 된 두 번째 점감구간(3,600만~4천만원)에 있는 가구들에 대한 노동공급 효과를 나타내는데, 유사하게 긍정적인 효과가 감소하거나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두 번째 점감구간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출산 1년 후 총소득(32%p)과 총소득이 존재할 확률(5%p)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시간은 2%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첫 번째 점감구간(1,400만~3,600만원 미만)에서보다 노동공급의 부정적 효과가 좀 더 크게 나타났다.

정리하면, 유의하지는 않으나 총소득 측면에서 가구의 노동공급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난 소득구간은 점증 및 평탄구간(1,4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노동공급의 감소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점감구간 모두에서 나타났다.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부정적 효과는 두 번째 점감구간(3,600만~4천만원)에서 좀 더 크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이론적 예측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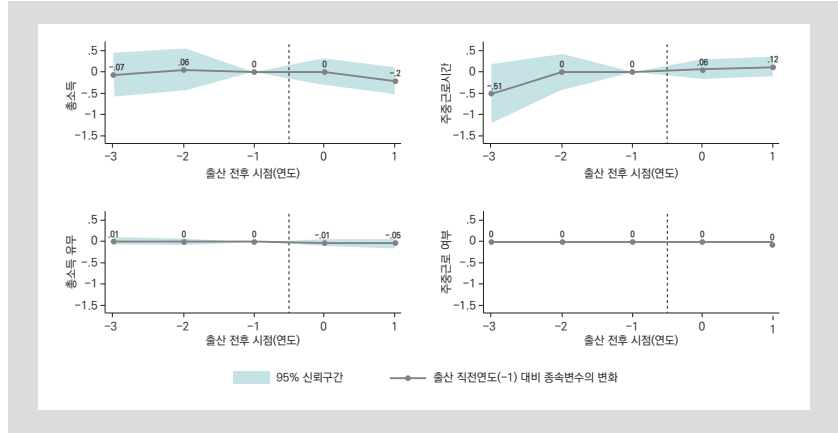
정리하면, 유의하지는 않으나 총소득 측면에서 가구의 노동공급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난 소득구간은 점증 및 평탄구간(1,4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노동공급의 감소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점감구간 모두에서 나타났다.

[그림 6] 자녀장려금 도입이 가구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점증 및 평탄구간



다만, 본 하위그룹 분석은 표본 수가 크게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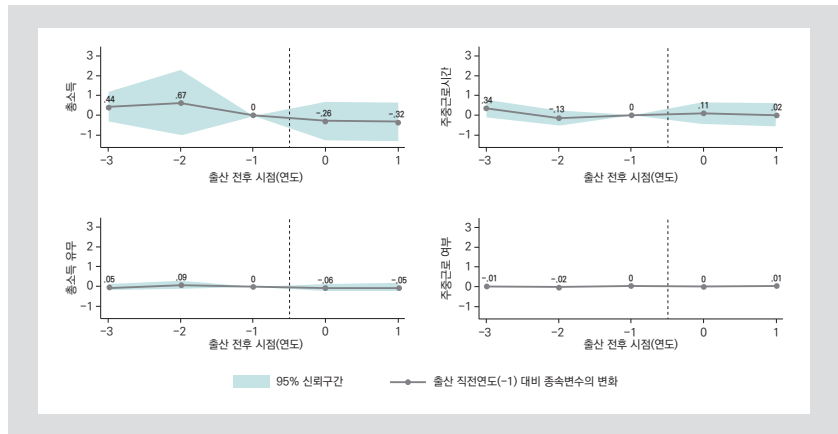
[그림 7] 자녀장려금 도입이 가구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 점감구간



- 주: 1. 그림은 재정패널(2~16차)데이터에 포함된 첫 번째 점감구간(아버지 총소득 1,400만~3,600만원 미만)에 해당되면서 자산수준이 낮은(3억 5천만원 미만) 표본이며, 이중차분사건연구방식을 사용하여 2015년 자녀장려금 도입에 따른 처치군의 동적인 가구노동공급을 출산 1년 전과 비교한 추정치이다.
- 2. 각각의 추정치는 식(1)에서의 추정치를 (2)의 방식을 따라 정규화한 값으로, 2015~2021년 출생아 가구의 평균적인 노동공급 대비 비율로 표현되었다.
- 3. 음영구간은 95% 신뢰구간을 나타낸다.

출처: 저자작성

[그림 8] 자녀장려금 도입이 가구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두 번째 점감구간



- 주: 1. 그림은 재정패널(2~16차)데이터에 포함된 2021년 자녀장려금의 두번째 점감구간(아버지 총소득 3,600만~4천만원 미만)에 있는 자산수준이 낮은(3억 5천만원 미만) 표본이며, 이중차분사건연구방식을 사용하여 2015년 자녀장려금 도입에 따른 처치군의 동적인 가구노동공급을 출산 1년 전과 비교한 추정치이다.
- 2. 각각의 추정치는 식(1)에서의 추정치를 (2)의 방식을 따라 정규화한 값으로, 2015~2021년 출생아 가구의 평균적인 노동공급 대비 비율로 표현되었다.
- 3. 음영구간은 95% 신뢰구간을 나타낸다.

출처: 저자작성

즉, 세 구간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큰 노동공급제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 점증 및 평탄 구간에서의 노동공급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두가지 점감구간 중에서 점증률의 감소가 있었던 첫 번째 점감구간에서의 노동공급 감소가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다만, 본 하위그룹 분석은 표본의 수가 크게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좀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충분한 표본이 확보된 데이터를 사용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 V. 결론 및 시사점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현금성 지원 재정정책을 도입하였는데, 그 예로는 첫만남 바우처,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등이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자녀양육을 보조함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동시에 소득효과를 통해서 수혜가구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조운영, 2006; 우석진, 2008).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녀양육비 경감을 위한 조세제도로는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소비행위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충분한 변동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된 자녀장려세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자녀장려세제는 ‘저소득자의 자녀양육을 보조하기 위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 2015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는데, 자녀장려세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조금 형태의 현금지원보다는 가구의 노동공급을 저해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sup>14)</sup> 이와 더불어서, 일정한 수급구간에서는 노동공급을 제고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수급하게 되어 그로 인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존재할 수 있다.

본고는 재정패널 2~16차(2009~2023년)데이터를 사용하여 출산력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녀장려금도입이 첫째아 출산을 경험한 가구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첫째아 출산 3년 전부터 출산 이후 1년까지(영아기) 가구노동공급 및 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분석을 위하여서는 Kleven et al(2022)의 이중차분 이벤트스터디(Difference-in-differences event study model)을 사용하였다. 첫 출산이라는 사건(event)

분석 결과 2015년 자녀장려금 도입으로 가구의 노동공급이 증가한다는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하였으나 동시에 뚜렷한 노동공급 감소 효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모(母)의 노동공급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14) 물론 현실적으로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대부분 소득활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특히 홀벌이 가구나 저임금 가구의 경우) 외연적 노동공급 효과가 크지 않거나 내연적 노동공급을 줄일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다.


현금성 지원이  
 목표하는 아동발달  
 및 복지 측면에서의  
 정책목표 달성 여부  
 또한 함께 복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정책수단 및  
 지원정도를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노동공급,  
 출산, 양육을 동시에  
 감안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을 경험한 가구의 출산 3년 전부터 출산 후 1년까지의 노동공급의 변화를 살펴봐왔는데, 자녀의 출생연도에 따라서 출산연도 제도인지 및 출산 차연도 수급자격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처치군(2015~2021년)과 통제군(2009~2014년)을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2015년 자녀장려금 도입으로 가구의 노동공급이 증가한다는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하였으나 동시에 뚜렷한 노동공급 감소 효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모(母)의 노동공급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등과 같은 재정정책을 통한 현금 지원정책의 경우 선행연구들이 여성의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부정적 효과를 예측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세정책을 통한 지원이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비효율성 발생을 줄이면서 자녀양육비용을 보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여성 노동공급의 감소가 나타나더라도 재정정책을 통한 현금성 지원정책은 여전히 그 나름의 의미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즉, 현금성 지원이 목표하는 아동발달 및 복지 측면에서의 정책목표 달성 여부 또한 함께 복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정책수단 및 지원정도를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노동공급, 출산, 양육을 동시에 감안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표본의 수가 적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나, 이질성 분석의 결과 노동공급 제고의 효과가 주로 점증 및 평탄구간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저소득 수급자들의 경우 육아휴직 등의 사용이 어려워 자녀양육과 노동시장 참여의 병행을 위한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 있어 근로유인과 더불어 보완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있을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연구 및 관심이 필요해보인다. 그 과정에서, 소득활동을 전제로 하는 지원 정책은 지역의 경제적 상황, 출산 여성 본인의 인적자본이나 건강 상태, 조부모 등 보호자와의 거주지 거리 등 여러 상황에 따라 소득 활동이 어려운 부모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언급하며 본고를 마치고자 한다. 먼저, 본고는 방법론 및 데이터의 한계상 출생 이후 1년까지만 추정범위에 포함하였으므로, 중장기적인 노동공급 변화를 살펴보는 못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자녀장려금의 부양자녀 연령요건이 만 18세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노동공급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 또한 추후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또

한, 자녀장려금의 수급 대상은 저소득·저자산 가구라는 점에서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보편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현금성 지원과는 구별되며,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모든 소득 및 자산가구에 적용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강건성 분석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는 식별전략의 한계상 처치군에만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거시경제적 요인 등을 완전히 통제하지는 못하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이를 좀 더 정밀하게 통제할 수 있는 식별전략 및 데이터를 사용하여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곽은혜, 『출산지원정책의 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21.
- 곽은혜·김민희, 『육아휴직 사용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23-03, 한국노동연구원.
- 고지현,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가 여성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재정포럼』 현안분석, Vol. 312, 2022, pp. 8~38.
- 고지현·고창수(2024), 『여성의 지속적인 근로에 조세 및 재정정책이 미치는 영향분석』, 2024. 12 발간 예정
- 김미곤·고재이·이철희·홍석철·전병목 외, 「아동수당 및 출산·양육 지원체계 발전 방안 연구」, 정책 보고서 2019-3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 김빛마로·김문정, 『근로장려세제 확대개편이 근로빈곤가구 소비에 미친 영향 연구』, 2022.
- 김재진·기은선, 『2019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Ⅰ) 자녀장려세제』, 2019.
- 김지경, 「기혼여성의 출산 후 경력단절 및 노동시장 복귀에 관한 분석」, 『제4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Ⅱ』, 2003.
- 박창우, 송헌재, 「출산장려금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추정」, 『응용경제』, 16(1), 2014, pp. 5~34.
- 우석진, 「출산 제고 정책이 한국 여성의 출산, 노동공급, 결혼에 미치는 효과」, 『한국경제의 분석』, 한국금융연구원, Vol.14, No.3, pp. 55~105, 2008.
- 양미선 · 김나영 · 박은정 · 오미애 · 송신영, 「가정양육수당지원가구 현황 및 제도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2022.
- 이상협·이철희·홍석철, 「저출산 대책의 효과성 평가」, 연구보고서 2016-44-0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 이철희, 김정호, 이소영, 민규량, 『저출산 정책 평가 및 핵심과제 선정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 9.
- 조윤영, 『기혼 여성의 출산과 노동공급: 생애주기 모형』, 한국개발연구원, 2006.
- 한중석·이영재·홍재화, 「보육료 지원정책이 기혼여성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 생애주기 모형을 이용한 정량 분석」, 『경제학연구』, 제65집 제3호, 2017, pp. 5~46.

- Ang, X. L., "The Effects of Cash Transfer Fertility Incentives and Parental Leave Benefits on Fertility and Labor Supply: Evidence from Two Natural Experiment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Vol. 36, No. 2, 2015, pp. 263~288.
- C de Chaisemartin, X D'Haultfœuille, "Fuzzy Differences-in-Differences,"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ume 85, Issue 2, April 2018, pp. 999~1028, <https://doi.org/10.1093/restud/rdx049>
- Duvall, E. M., "Family development's first forty years," *Family Relations*, 37(1), 1988, pp. 127~134.
- Kleven, Ladas, Posch, Steinhauer, Zweimuller, "Do Family Policies Reduce Gender Inequality? Evidence from 60 years of Policy Experimentation," *NBER working paper*, 2022.

국세청, 『개정세법해설』 각 연도

\_\_\_\_,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_\_\_\_, 「근로장려금소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lid=7781>, 접속일자:2024. 7. 14

\_\_\_\_, 「자녀장려금소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1&cntntslid=7782>, 접속일자: 2024. 7. 14

\_\_\_\_,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lid=238977>, 접속일자: 2024.7.9

재정패널 조사개요, [https://www.kipf.re.kr/panel/intro\\_Summary.do](https://www.kipf.re.kr/panel/intro_Summary.do), 검색일자:2024.6.2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TMB 뉴스\_12월 넷째주] 2024년, '더 탄탄해질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해 알아봐요!」 보도자료, 2023. 12. 28.

「조세특례제한법」



# 정책토론키포트

✦ 제13차 재정성과관리 국제포럼



## 제13차 재정성과관리 국제포럼

### 개요

- **주 제** 예산 과정에서 공공지출 성과 강화를 위한 증거기반 정책평가의 활용  
(Applying evidence-informed policy evaluation in budgeting to strengthen the delivery of results from public spending)
- **일 시** 2024년 11월 6일 (수) ~ 7일 (목)
- **장 소**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 루비홀
- **주 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후 원** 기획재정부
- **참 석 자** 45명
  - 해외 초청자 5명, Koscom 박노욱 상임감사, 기재부 재정정책국 송하늘 사무관, 유관기관 참석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포럼의 목적과 배경

- 공공 예산과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평가와 증거 기반 정책 평가를 논의하며, 공공 지출의 성과를 개선하고 정부 프로그램과 예산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현재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저성장, 인플레이션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제한된 자원으로 국민의 높은 기대와 수요를 충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성과평가 시스템은 정부 프로그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된 성과 정보를 공공 예산 과정에 적극 활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성과평가 시스템의 한계와 문제점

- 성과 지표 설정의 어려움: 결과 중심의 성과 지표를 유지하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존재
- 실무 부처의 소극적 참여: 평가 과정에 대한 동기 부여 부족
- 성과 정보 활용의 제약: 객관적 정보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성과평가가 예산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

■ 포럼 목표와 세션 구성

- 성과평가 시스템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며, 다양한 국가의 사례를 통해 성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최적의 방법을 모색하여 공공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개선 방안을 제시
- 포럼 세션 구성
  - 1세션: 성과평가 시스템의 현황과 장단점을 분석

- 2세션: 정부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 정보와 이를 생산하기 위한 국제적 사례를 소개
- 3세션: 예산 과정에서 성과 정보를 활용한 사례 연구 공유
- 4세션: 성과평가 시스템의 미래 방향을 논의하며, 전체 포럼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정리

DAY 1

11월 6일(수)

Session 1

Current Status of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s

Presentation 1

- Andrew BLAZEY (Deputy Head, Public Management and Budgeting, OECD)

1. 서론

- OECD 공공정책평가 권고안(OECD Recommendation on Public Policy Evaluation)
  - OECD 회원국은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 저하, 복잡해지는 정책 문제, 자원의 한계에 직면해 있음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증거 기반 의사결정이 필요하며, 공공정책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공공정책평가는 무엇이, 왜, 누구를 위해, 어떤 상황에서 작동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결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함

- OECD 권고안은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장려하여, 공공정책평가 활용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OECD 공공정책평가 권고안의 3개 구성요소 (Pillars)와 7개 원칙

- (Pillar 1) 공공정책평가 제도화(Institutional Pillar)
  - 원칙 1) 체계적인 방식으로 평가를 수행하고, 그 평가 결과가 정책 및 예산 의사결정에 활용되도록 범정부적인 평가를 시행
  - 원칙 2) 경영진(the executive) 내외에서 평가에 대한 수요와 옹호를 촉진하여 평가 관련 학습 및 책임 문화를 조성
- (Pillar 2) 공공정책평가 품질 증진(Quality Pillar)
  - 원칙 3) 의도한 목적에 비례하고 시의적절하게 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획, 설계 및 관리
  - 원칙 4) 신뢰할 수 있는 평가 결과를 위해 평가 품질 기준과 메커니즘을 수립
  - 원칙 5)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를 의뢰·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과 역량 개발
- (Pillar 3) 정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책평가 수행(Impact Pillar)
  - 원칙 6) 조직 및 범정부적 차원에서 의사결

정 과정에 평가를 포함할 수 있는 제도적 메커니즘 확립

- 원칙 7) 평가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결과를 의도적으로 공개하고 접근성을 높임

■ 공공정책평가와 예산의 연계

- OECD 조사<sup>1)</sup>에 따르면 회원국에서는 정책평가 결과를 정부지출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활용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지만, 실제 정책평가 결과가 예산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빈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동 조사에 따르면, 예산 의사결정에 정책평가 결과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부분은 지출 검토(spending reviews)임
  - 그러나 평가 결과가 예산 검토 시작 시점에 적절히 준비되지 못하는 문제, 재정 목표가 정책평가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 등이 존재하여 개선이 필요함

2. 공공정책평가 제도화(Institutional Pillar)

■ OECD 조사에 따른 회원국의 공공정책평가 제도화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중앙 평가부서(central evaluation units/evaluation champions)는 주로 재무부 및 총리실 산하에 있으며, 별도 조직을 두지 않는 OECD 국가는 5개국에 불과함

1) OECD, "Survey on Public Policy Evaluation," 2023.

- OECD 국가 중 13%만 모든 부처에 평가 담당부서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선 부처(line ministry) 단위의 제도화는 아직 제한적인 상황임
- 행정부 외부의 정책평가 권한은 주로 의회와 최고 감사기관(Supreme Audit Institution)에 주어져 있음

진하기 위한 정부 전략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OECD 국가의 70%는 데이터 전략이 없다, 30%는 데이터 전략이 있다고 응답함

- 미국은 연방 데이터 전략(the Federal Data Strategy)을 통해 연방 기관들의 데이터 사용을 지도하고 있으며, 이 전략에는 데이터 사용방법에 대한 40가지 지침이 포함되어 있음

### 3. 공공정책평가 품질 증진(Quality Pillar)

#### ■ 정책평가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

-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정책평가에 대해 하나 또는 다수의 공식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음
  - OECD 조사에서 “정부는 정책평가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OECD 국가의 43%는 하나의 정의를 가지고 있다, 17%는 다수의 공식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다, 40%는 공식적인 정의가 없다고 응답함
- 정책평가에 대해 다수의 정의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비율은 2019년 이후 감소하고 있음
- 국가별로 정책평가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정책평가의 목표, 기준,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음

#### ■ 증거기반 정책 결정을 위한 데이터 전략

- 데이터 수집, 접근,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가진 나라는 거의 없으며, OECD 국가의 1/3이 데이터 전략을 개발함
  - OECD 조사에서 “평가 및 증거기반 정책 결정을 위한 데이터의 가용성과 접근성을 촉

#### ■ 상호 검토(peer review)

- 많은 OECD 국가들은 상호 검토 시스템이 없음
  - OECD 조사에서 “평가는 외부에서 상호 검토 시스템을 통해 검토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OECD 국가 중 57%는 상호 검토 시스템이 없다, 40%는 일부 평가에 대해 상호 검토 시스템이 있다, 3%는 모든 평가에 대해 상호 검토 시스템이 있다고 응답함
- 뉴질랜드의 각 평가는 상호 검토의 대상이며, 비공식적인 내부 검토부터 공식적인 학술 상호 검토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짐

### 4. 정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책평가 수행(Impact Pillar)

#### ■ 정책평가 결과에 대한 논의

- 정책평가의 절반은 고위급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음
  - OECD 조사에서 “평가 결과가 장관 협의회 또는 기타 고위급 집행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는가?”라는 질문에 OECD 국가 중 50%는 논의되지 않는다, 40%는 일부 평가는 논의된다, 10%는 모든 평가가 논의된

다고 응답함

- 캐나다, 코스타리카, 일본은 모든 평가 결과가 고위급 회의에서 논의됨

■ 정책평가와 관련된 의회의 책임

- 의회의 책임은 평가 요구 및 평가 결과 논의와 관련이 있음
- OECD 조사에서 “의회는 정책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중 하나의 책임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OECD 국가 중 67%는 정책평가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 57%는 정책을 평가하도록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53%는 정책평가 결과에 대해 논의한다고 응답함

■ 정책평가 결과 공개

- OECD 국가 중 60%는 기본적으로 정책평가 결과를 공개함
- 정책평가 결과는 접근하기 쉬운 형식으로 제공되지만 이를 체계적인 관행으로 만들고 배포방식을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OECD 조사에서 “평가 결과는 접근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맞춤화되고 접근가능한 형식으로 공개되는가?”라는 질문에 OECD 국가 중 27%는 항상 사용할 수 있다, 27%는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 33%는 일부 평가는 사용할 수 있다, 13%는 사용할 수 없다고 응답함

5. 사례 연구

■ 호주는 2023년 정부 전반의 평가역량 강화를

위해 재무부 산하에 호주 평가센터(Australian Centre for Evaluation, 이하 ACE)를 설립함

- 정부 및 전문가 그룹의 지원을 받아 평가 도구와 정책영향평가(Policy Impact Analysis) 가이드 개발
- ACE의 역할은 예산과정에서 평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평가가 예산 우선순위 설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임

■ 미국은 2019년 증거기반 정책결정(Evidence-Based Policymaking)을 위한 법률을 마련함

- 사후(ex-post)평가에 중점을 두어 범정부적 프로그램 정책평가 수행을 위한 기반 마련
- 신규 재정투입 없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부처 간 협의회 등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평가 지침과 도구 등을 제공함
- 예산관리국(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주도하에 정책목표 대비 평가받는 지출의 비율을 높이고자 하며, 2023년 대통령 예산안 및 대통령 관리 어젠다에 포함됨

6. 결론

■ 증거기반 정책평가의 발전은 부족한 기반하에서 출발하였으나, 예산과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보 제공 역할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정부 전반에 걸친 공통된 개념정의, 데이터 및 평가 전략, 상호 검토 과정 등이 평가 과정과 결과 보고의 품질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증거기반 정책평가의 기반을 강화하고 있음

- 이는 재정적 압박과 더불어 정책의 설계와 실행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를 이해하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서, 아래와 같은 측면이 강화되고 있음
  - 정책평가에 대한 제도적·체계적 접근
  - 투입 대비 효과성 평가에 도움이 되는 평가 활용
  - 평가 방법론과 기법의 정교화·고도화

■ 정책평가와 관련된 가장 도전적인 과제는 평가 결과를 예산 및 의회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통합하는 것임

**Presentation 2**

- Heewoo KANG(Director, Center for Performance Evaluation and Management,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한국의 성과평가지시스템은 성과목표관리제도(Performance Goal Management System), 자율평가(Self-Assessment),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Performance Management of Core Programs), 심층평가(In-depth Evaluation)를 포함하며, 정책과 사업의 목표 설정, 성과 지표 관리, 목표 달성 여부 평가를 포함하여 정부 사업의 성과를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성과목표관리제도(PGMS)는 부처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이며,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가 이에 해당됨

- 성과계획서는 전년도(t-1)에 해당 연도(t)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지표의 목표치 등을 미리 설정함
- 성과보고서는 다음 연도(t+1)에 해당 연도(t)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 미흡원인 등을 분석·보고함

■ 최근 성과목표관리제도(PGMS)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변경되었음

- 거시적·전략적 성과목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 사업 중심에서 프로그램으로 전환함
- 평가과정을 간소화하여 부처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국민들이 부처의 재정운용성과를 보다 쉽게 파악하고자 부처대표지표를 도입함
-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단위의 성과지표가 예산편성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현재 예산은 세부사업 수준에서 편성되는데 프로그램 단위의 성과지표가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자율평가(Self-Assessment)는 사업 수행부처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기획재정부가 확인·점검한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 이러한 평가방식은 미국의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를 벤치마킹하여 도입되었으며, 평가 결과가 낮은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을 의무화하여, 예산 삭감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 성과관리 개선대책을 제출해야 함

- 최근에는 세부사업 단위로 자율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를 통해 예산 운용의 세부적인 관리와 개선이 이루어지며 각 부처는 보다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 국정과제, 경제정책 방향 등 국정운영 핵심가치를 반영하는 12개의 핵심 재정사업을 선정하여 현 정부 임기동안 성과를 가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핵심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Performance Management of Core Programs)를 도입함
  - 이러한 제도를 통해 성과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 및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함
- 심층평가(In-depth Evaluation)는 정부의 정책적 이슈나 다부처 간 협력사업 등 유사한 성격을 가진 사업(군)에 대해 정량 및 정성적 방법으로 사후 성과 평가를 통해 사업효과성을 분석함
  - 이러한 평가제도는 다부처 협력사업에 대해 성과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량적 분석에 치우쳐 중요한 정성 평가 요소를 간과할 위험성이 있고, 평가 결과를 활용한 재원 배분과 정책제안에 대해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Session 2

### Efficiency of Government Programs and Performance Information

#### Presentation 1

- Etienne GENET(Head of Budget Control,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France)

#### 1. 예산 과정에서의 성과관리체계(Performance Framework)의 중요성

- 프랑스에서의 성과관리체계 도입
  - 프랑스는 2001년 「재정 헌법(financial constitution)」이라는 기본법 제정으로 공공재정 틀이 크게 변화되기 시작
  - 우선, 지출 목적에 따른 예산 편성 제도가 도입됨
  - 또한 공공행정의 결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을 임무(mission) 단위로 구분
  - 이때 각 임무는 하나의 공공정책에 해당하며, 각 임무는 다시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짐
- 공공부문 관리자의 재량권 및 책임 확대
  - 예산 사용에 대한 제한이 줄어들어 예산을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됨
  - 예를 들면, 인건비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이를 다른 항목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짐
    - 성과지표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됨
    - ① 사회 경제 지표: 광범위한 정치목표의 성과를 측정
    - ② 효율성 지표: 납세자의 관점에서 공공 지출의 효율성을 측정
    - ③ 품질 지표: 공공서비스 수혜자의 관점에서 서비스의 질을 측정

관점	목표	예시
시민	정치적 목표	- 국가 차원에서의 미충원 직위 수 - 행정 및 사법 처리 전 기타 분쟁 승소율
납세자	공공지출의 효율성	- 구매 활동으로 인한 이익- 행정직 원당 면적 비율 m <sup>2</sup>
서비스 이용자	공공서비스의 품질	- 거주 허가 갱신 신청 처리 시간 - 난민 지원센터에서 난민 신청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

## 2. 성과주의 예산

### ■ 예산국과 관련 부처 간의 대화

- 일관된 성과평가를 위한 예산 관리국의 역할
  - 각 임무와 프로그램의 성과 체계가 부처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부합한 후에 지표와 목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 지표는 사회의 광범위한 발전이 아닌 공공 활동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유사한 프로그램에서는 목표와 지표가 일관성 있게 설정되어야 함
  - 부처는 성과지표 설정 시 결과지표보다 정책 수행 활동을 측정하는 산출지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지표 설정 시에는 이미 정책적 지원이 확정된 성과나 특정 부처가 강점을 가진 성과만을 강조하는 지표가 설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주요 주제별 우선순위
  - 성과지표로 환경이나 성평등 관련 지표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
  - 환경 및 성평등과 같은 중요한 주제를 우선순위로 두지 않은 부처들도 이런 지표를 설정하게 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성과를 도출

할 수 있도록 유도

- 성평등 지표 예시: 여학생의 바칼로레아 응시율(%), 성폭행 피해 여성 수, 여성 인구 대비 스포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여성 비중(%)
- 환경 관련 지표 예시: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율(%), 청사 개보수를 통해 달성한 에너지 절감량(Twh),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MaPrimeRénov)으로 ‘열 손실 주택(heat sinks)’ 상태에서 벗어난 주택 수, 환경에너지관리청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의 효율성(€/MWh)

- 2025년도 프랑스의 성과평가제도 주요 목표
  - 정치적 지표와 관리적 지표의 분리
  - 성평등 및 환경 관련 지표 추가
  - 정보가 부족한 지표 삭제
  - 국회가 설정한 지표에 목표 추가
  - 연간 성과보고서에 목표 달성 여부 직접 반영

### ■ 정부와 의회 간의 대화

- 2021년부터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하여 추가적으로 새로운 성과 목표와 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 단,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정부에게만 주어짐
- 국회의원이 제안한 성과 목표와 지표는 정치적인 입장이 투영되어 정부의 우선순위와 맞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 논의 결과 소수의 성과 목표와 지표만 채택이 됨
-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우선시하는 이슈를 강조하고 논의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또한 이러한 개혁은 성과에 대한 관심을 높이

고, 국회의원들이 지표를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함

용될 수 있음

### 3. 성과 결과

#### ■ 국회의 정부 활동에 대한 평가의 근거

- 성과 결과는 연간 성과보고서의 형태로 결산서의 부록에 수록됨
- 이는 국회의원들이 공공정책 성과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수단이 됨
- (n-1)년의 성과 결과가 (n+1)년 예산안 논의 전에 검토됨
- 이 과정을 통해 국회에서 장관과 고위공무원들에게 더 큰 책임을 부과하며, 필요에 따라 주제별 청문회가 진행되기도 함

#### ■ 투명성 증진: 국민과의 소통

- 성과 현황판(Tableau de Bord SG)에서 국민들이 직접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해 성과지표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함 (<https://datavision.economie.gouv.fr/performance>)

#### ■ 지출 검토(spending review)와 같은 심층 분석을 위한 기초

- 연례 성과검토는 모든 공공정책에 대해 수행되지만, 특정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정책의 방향 전환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평가 방법을 활용한 보완이 필요함
-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는 연례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가 기초 자료로 활

### Presentation 2

• Luc MABILLE(Director General of Budget, Belgium)

- 벨기에는 2017년 2월 22일자 왕령에 따라 연방 공공 서비스 정책 및 지원(Federal Public Service Strategy and Support, BOSA) 내 예산 및 정책 평가 총국(Directorate General Budget and Policy Evaluation)을 설립하였음

- 그러나 총국 설립 당시에는 정책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명확한 권한이 왕령에 의해 부여되지 않았음

- 이후 2020년 9월 30일, 벨기에 연방 정부는 정책 평가와 증거에 기반한 의사 결정을 목표로 협약을 체결하며, 정책 평가의 기반을 마련하고 증거 기반 의사 결정 접근 방식을 확립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하였음

- 또한, 벨기에는 2020년에 유럽연합 구조 개혁 지원 총국(Directorate-General for Structural Reform Support, DG Reform)의 자금 지원을 받아 OECD와 공동으로 벨기에에 특화된 세 가지 기술 지원 도구(Technical Support Instruments, TSI) 프로젝트를 시행하였음

- 첫 번째 프로젝트는 공공 지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출 검토를 다룬 연구였으며, 2023년에는 정책 평가를 통한 의사결정 개선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2024년에는 이전

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역량 강화 연구가 진행됨

■ 2020년에 진행된 “벨기에 연방 예산 시스템에서 지출 검토를 통합하는 방법에 관한 기술적 메모” 연구는 공공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 연구로서, 유럽 연합과 OECD는 연방 정부가 우선 순위를 정하고 공공 지출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출 검토를 시행할 것을 권고함

- 증거기반 프로세스로서 예산 주기에 지출 검토를 통합하는 권고 사항이 반영되어, 2020년 이후 매년 예산 준비 및 정부의 예산 채택 과정에서 새로운 지출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현 시점까지 11건의 지출 검토가 완료됨

- 또한, 지출 검토는 COVID-19 이후 만들어진 회복 및 복원력 기금(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RRF)의 조건으로, 이는 재정 개혁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를 포함하며 그중 하나는 정부의 모든 행정 단계에서 지출 검토를 실행하는 것임

- 지출 검토 수행 후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이행된 권고 사항과 그 결과를 명시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며, 이는 정부 예산 관리의 외부적 동기로 작용하고 정부에 대한 압박 요소로 작용함

■ 2023년에 발표된 두 번째 연구 “정책 평가를 통한 벨기에의 의사 결정 개선”은 정책 평가에 대한 필요성을 다루고 있음

- 제도적 프레임워크의 필요성: 현재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

지만 각 분야에 국한되어 전체적인 시각이 부족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 국가 구조에서는 부처 간, 정부 수준 간의 조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올해 평가 네트워크가 새롭게 구축됨

- 평가 기술과 데이터의 질: 평가를 위한 전문성과 데이터의 질이 중요함. 평가 기술을 가진 전문가와 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데이터에 대한 문화를 구축하여야 함

- 평가의 영향력

-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함. 평가 결과는 대체로 비판적이므로 부처는 일반적으로 평가 결과를 반기지 않음. 결과를 숨길 수 없도록 개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정책 평가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의사 결정 과정에 내재화하여야 하며, 법안에는 일정 기간 후 정책 효과를 분석하도록 하는 조항이 필요함

- 중앙 평가 기관, 즉 ‘평가 챔피언’을 두어 조정 및 공통된 방법론을 확립하여야 함

■ 앞선 두 연구를 바탕으로 2024년 “벨기에의 거버넌스 및 공공 행정 분야에서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을 위한 역량 구축”이라는 연구가 진행됨

- 이 연구는 벨기에에 특화된 실용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연구로, 강점과 약점을 토대로 7개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권고안을 제시함

- 연구 결과, 역량, 기술, 데이터의 질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OECD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술을 가진 인력은 많지만 경력 개발 기회가 부

축합. 행정 분야에서 경력을 위해서는 평가자 보다는 관리자가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으나, 이는 옳지 않으며 평가자도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계와의 관계 강화가 필요하며, 대학과의 협력이 필수적임

■ 벨기에는 2020년부터 체계적인 지출 검토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총 11회의 지출 검토 사례를 통해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졌으며, 정책 평가를 위한 법·제도적 틀과 평가 시스템을 마련 중임

- 지출 검토의 한 가지 사례로, ‘COVID-19 이후 사무실 공간 축소 계획’을 다루었으며, 약 20%의 공간 축소 계획을 수립함
- 최근에는 보조금 체계를 검토하여, 모든 보조금을 법적 근거에 따라 분류하고 보조금 등록 시스템의 필요성을 확인함

■ 그러나 성과목표 및 그 수단에 대한 공통된 이해가 부족하고, 데이터와 기술 역량 부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

- 벨기에는 연방 국가로서 자치 정부와 연합 정부 체제를 이루고 있어 정책 조율의 어려움이 존재함
- 각 부처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실용주의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부처의 협조가 소극적일 수 있으며 효율적인 정책 평가와 지출 검토의 체계적 결정에 장애가 되기도 함
- 벨기에 정부는 지출 검토가 단순 예산 절감 수단을 넘어 공공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음

### Session 3

##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s in Budgeting Process

### Presentation 1

• Ray SHOSTAK(Consultant and former Head of the Prime Minister's Delivery Unit, United Kingdom)

#### 1. 성과관리-예산프로세스 연계 필요성

■ 정부의 궁극적인 정책목표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해 빠른 시일 내 국민이 더 나은 결과를 얻게 하는 것임

- 대부분의 정부는 예산편성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으나, 성과 개선을 위한 성과 프레임워크는 부족한 실정

- 구체적으로 데이터 활용, 성과지향적인 리더쉽, 명확한 목표 및 관리지표 설정 등이 미흡

- 이는 정부의 예산(사업)이 기존에 달성하고자 했던 정책목표를 달성하였는지 관리할 수 있는 구조적 접근(성과 프레임워크)이 필요함을 시사함

■ 성과 프레임워크란 정부 활동의 효율성, 비용효과성, 정책 목표를 관리하고 측정하기 위한 구조적인 접근방식임

-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여 모니터링과 성과 데이터를 통한 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포함함

- 이를 위해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예산편성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산과 성과가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브라질의 한 주(state)의 사례를 소개하면, 주지사가 사업성과를 수시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저성과 사업이 식별될 시 주지사가 사업에 대해 담당 공무원에게 실시간으로 문의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함
- 따라서 범정부의 상위부처(예: 총리실, 재정부 등), 일선부처, 하위기관 등의 협력, 성과지향적인 리더십이 갖추어져야 하며, 실시간 데이터 관리 및 성과확인을 통해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마련되어야 함

■ 성과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성과지표의 단순화도 필요

- 수많은 성과지표는 관료에겐 큰 부담이 되고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국민이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지표들로 성과지표들의 수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 2. 영국의 성과 프레임워크

■ 정부 부서 간 협력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통해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정책 목표와 예산을 연계하여 각 정책이 목표

한 성과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평가, 이를 토대로 향후 예산 책정을 개선함

- 부처가 배정받은 예산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정책 목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공개하여 책임성을 강화함
- 성과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책의 성과를 파악하고 성과가 부족한 원인에 대해 필요한 개선 조치를 마련함
- 정부가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데이터 분석, 정책 평가 등 필요한 역량을 지원하고, 전 부처가 성과와 책임을 중심으로 활동하도록 종합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함

## 3. 결론

■ 성과 프레임워크의 도입은 정책 목표달성과 공공서비스 질 향상에 있어 핵심 과제임

- 이를 통해 정부는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목표를 달성하며 국민의 만족도를 증대시킬 수 있음
- 성공적인 성과 프레임워크 적용을 위해 전체 정부 및 공공부문에 걸친 성과문화의 확산과 성과지향적인 리더십을 갖추고 이해당사자 간의 연계 및 협력이 필요하며, 실시간(주기적) 데이터 수집, 보고 및 확인, 문제 해결 등의 루틴을 만들어야 함

Presentation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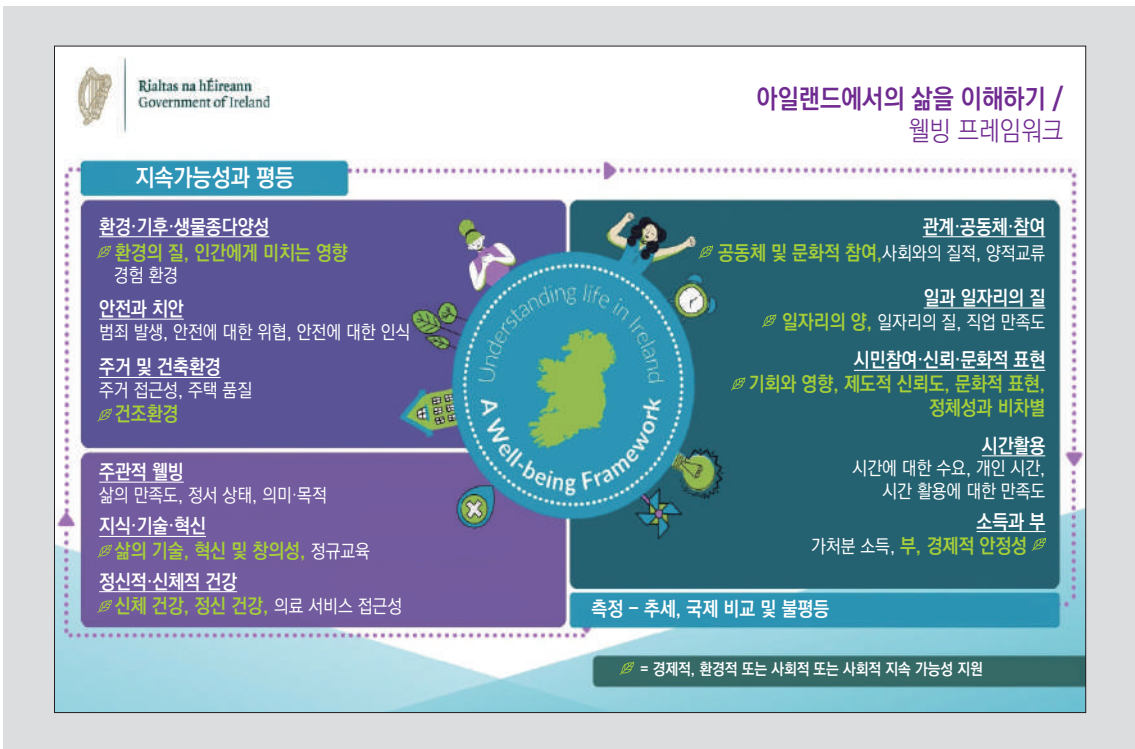
• Fiachra KENNEDY (Assistant Principal Officer, Department of Public Expenditure and Reform, Ireland)

- 본 발표에서는, 아일랜드 정부의 정책 및 예산관리에서 웰빙 프레임워크(Well-being Framework) 적용 사례를 소개
- 웰빙 프레임워크 도입배경
  - 웰빙 프레임워크란 예산편성 및 성과관리 단계에서 재정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다

차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틀

- 기존 예산관리 시스템이 재정 효율성에 초점을 맞췄던 반면, 웰빙 중심 예산관리는 삶의 질, 즉 웰빙(Well-being)을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며 평가하는 데 주력
- OECD, 아일랜드 등은 정책이 실현되는 복잡함 맥락에 주목하여, 공공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상호작용 요인을 발굴
- 더불어 공공정책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발전시키기 위한 기회로 새롭게 정의하였으며,

[그림 1] 아일랜드 웰빙 프레임워크 11대 지표



출처: 아일랜드 정부 홈페이지(검색일자: 2024. 11. 19)  
 (https://www.gov.ie/en/campaigns/1fb9b-a-a-well-being-framework-for-ireland-join-the-conversation/)

- 궁극적으로 정책 성과와 공공 서비스 간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 웰빙 프레임워크의 기대효과

- 재정사업의 효과성 증대
- 정책 간 상호 연계성 강화
- 성과기반 예산관리제도의 체계적 운영

■ 웰빙 프레임워크의 기본설계 및 적용

- 환경, 안전, 주거 등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11개의 주요 영역(Primary well-being dimension)을 설정
  - OECD 및 뉴질랜드의 모델을 참고하여 아일랜드만의 독자적 틀 구축
  - 개인, 사회, 지역을 아우르는 다차원적 접근 시도
- 세대 간 형평성(intergenerational equity)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웰빙(sustainable well-being)의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하도록 유도
  - 시간의 흐름에 따른 웰빙 지표의 변화를 측정하고, 그룹 간 및 그룹 내 차이를 비교하여 정책 효과를 평가
- 정책 태그(tagging) 과정에 반영
  - 개별 사업별로 정책 목표, 수혜 대상 등을 태그(tagging)하여 예산편성과 정책목표 간 연계를 강화
  - 정책 태그의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음
    - 부처 간 협력 증대

- 정책 설계의 효율성 제고
- 정책 목표(대상)의 명확화
- 정부 개입의 타당성 확보
- 기존 성과 프레임워크에 적용
  - 웰빙 프레임워크와 대시보드
    - 웰빙이 공공 정책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정의
  - 평가 및 관련 보고서 작성
    - 웰빙 프레임워크를 통해 기존 공공정책에 대한 평가
    - 웰빙과 관련된 새로운 차원을 반영하는 보고서를 작성<sup>2)</sup>

■ 도전 과제 및 향후 계획

- 아일랜드 정부가 직면한 도전 과제
  - 성과 정보의 제한적 활용
  - 정책 목표와 성과 간의 연계성 부족
  - 정치적 의사결정에 웰빙 지표 활용 확대 필요
- 향후 계획
  - 예산 편성 및 성과목표 관리체계에서 웰빙 프레임워크의 적용 범위 확대
  - 증거 기반 정책 평가 틀의 완성도 제고
  - 정책의 시행 및 성과평가의 체계적 연결을 위한 새로운 매커니즘 도입
  - 2025~2026년 새로운 전략을 수립을 통해 웰빙(Well-being), 평등(Equity), 녹색(Green) 등 정부 전반의 주요한 정책 목표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수행 중

2) 본 작업의 경우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더 많은 보고서가 작성될 것으로 기대

■ 결론

- 아일랜드의 웰빙 프레임워크는 단순히 예산과 지출을 관리하는 도구가 아닌, 정책의 목표와 결과를 연결하여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
- 데이터 기반 정책설계와 협력을 통해 아일랜드 정부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적 영향을 증대하려는 노력을 지속 중

DAY 2

11월 7일(목)

Session 4

Future Direction of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s

Presentation

- Nowook PARK(Former Director of Center for Performance Evaluation and Management)

1. 한국의 M&E(Monitoring and Evaluating) 시스템의 개요

- 한국의 M&E 시스템은 투입과 프로세스 중심의 제도에서 결과 중심의 제도로 변화하였음
  - 1961년 경제개발계획에 맞추어 투입과 프로세스 중심의 제도로 시행되었으나, 시간 지남에 따라 정책 이슈의 복잡성 증가로 인해 제도의 초점이 산출 및 결과로 이동하였음
  - 또한 2000년대 중반 M&E 시스템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인구 고령화,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PFM 개혁(Public Financial Management reforms)으로 강화되었음. 이로써 결과 지향적 M&E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M&E 시스템의 예산 과정에의 반영이 이루어짐

- 한국의 M&E 시스템은 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일선 부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총리실은 전반적인 정책 모니터링 및 일부 정책 이슈에 대한 심층 조사를 수행하고, 법령 제정을 통해 정부의 모든 M&E 시스템의 통합을 시도 하였음
- 기획재정부는 2000년대 중반 PFM 개혁을 통해 예산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검토 및 평가 시스템 개발하였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경영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관리를 검토하며, 그 밖에 개별부처에서도 자체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 한국의 M&E 시스템은 공공연구기관과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행정부는 M&E 시스템의 직접 수행이 아닌 조정 역할을 하고 있음

- 중앙부처에서는 평가 과정에 필요한 핵심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고 대부분의 평가는 공공연구기관이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에서 수행
- 일부 부처 중 자체 평가 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부처도 있지만 대부분은 공공연구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평가를 의존하고 있음

- 감사원과 국회예산처에서도 성과평가와 관련 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감사원에서는 정기감사와 성과감사 그리고 중앙부처의 연간 성과보고서 검토를 수행하고 있음
- 국회예산처에서는 중앙부처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검토, 예산 프로그램에 대한 자체 평가, 예산 프로그램의 M&E 시스템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음

## 2. 한국의 예산 프로그램에서의 M&E 시스템

■ PB 및 성과평가제도는 2000년대 중반 PFM 개혁(Public Financial Management reforms)의 일환으로 도입됨

- 즉 M&E 시스템은 중기재정관리(MTEF), top-down 제도, 프로그램 예산제도, 발생주의 회계 등과 같이 도입되었음
- 2000년~2002년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을 시범 시행하여, 전략적 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도입하였음
- 2003년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PGMS)을 시행하였고, 모든 부처로 PBB를 확대 도입하여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음
- 2005년 미국의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제도를 기반으로 설계된 예산 프로그램 평가(Budgetary Program Assessment)를 실시하여 주요 예산의 1/3을 매년 평가하게 되었음. 또한 2005년에는 매년 약 10개 사업을 선정하여 분석, 평가하는 심층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음
- 2018년부터는 중앙부처의 프로그램 수를 80

여 개로 줄여, 연간 프로그램 단위의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한국 중앙정부는 4단계의 M&E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M&E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

- 각 부처는 연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통해 성과지표 및 목표를 관리하고 연간 모니터링이 이루어짐
- 우선순위가 높은 12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분기별 모니터링 및 연간 평가를 실시하여 연간 모니터링 및 중기 성과관리가 이루어짐
- 자율평가제도(BPA)는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각 부처 자체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부처 및 기관의 예산절감 및 프로그램 개선방안을 마련
- 심층평가(In-depth Evaluation)는 범분야(Crosscutting)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평가와 지출 검토를 수행

■ 또한 예산 프로세스의 각 단계별로 공공재정관리(PFM)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예산수립 전 단계에서는 SOC 등 대규모투자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평가, 민관협력사업(PPP) 제안서 평가, 지출검토 등을 수행
- 예산 수립단계에서는 중기재정관리(MTEF)와 부처별 연간 성과관리계획,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지출 재검토 등이 이루어짐
- 예산 집행단계에서는 예산집행에 어려움을 겪는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조사나 일부 프로

그램에 대한 분기별 모니터링, 예산낭비신고 센터(Budget Waste Center)를 운영

- 예산집행 이후 단계에서는 연간 성과보고서, 자체평가, 심층평가, 기타 주요평가(focused assessment)가 이루어짐

■ 최근 성과관리의 법적기반을 구축하는 등 발전이 이루어짐

- 2021년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과거 국가재정법에 분산 규정되었던 M&E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장을 새롭게 추가하고, M&E 관련 개념과 원칙을 명확히 함
- M&E에 대한 중기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존 중간 관리자 수준에서 내부적으로 관리되었던 M&E 책임자를 차관 등 고위급 관리자로 명확히 함
- 환류(feedback loop)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와 M&E 역량강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M&E 정보공개를 의무화함

■ 또한 연간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의 정보단위를 프로그램단위로 변경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관리 등 개편이 이루어짐

- 2021년부터 연간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의 사업단위를 세부사업(sub-project)에서 프로그램단위로 변경하여 프로그램 단위로 전략을 수립하고 시민지향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
- 일례로 과거 환경부의 연간 성과보고서를 살펴봤을 때 대기 질이나 수질 등 시민지향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다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시스템 개혁을 통해 시민지향적인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개선

- 이에 따라 연간 성과계획서에 더 많은 전략적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는 관료들에게 쉽지 않은 작업일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에 대한 전략적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과거에는 관료들이 실용적인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 문서를 작성하여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였으나 시민친화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 내 역량을 강화할 필요

- 2023년에는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그램에 대해 성과관리 시스템을 개편함

3. 한국의 성과평가제도의 한계 및 향후 방향

■ 한국 정부는 그간 누적된 M&E 경험을 바탕으로 긴축재정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M&E 시스템의 간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

- 일선 부처의 역할 강화를 통해 탈중앙화(de-centralization)를 유도하고, 정책의 초점을 시스템 구축에서 벗어나 정책효과 개선으로 이동할 필요
- 긴축재정 상황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성과정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중기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현실은 연간 예산에 초점을 두는 한계

- 다양한 M&E 시스템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개별 부처가 아닌 정부 전반에 걸쳐 협력이 필요한 복잡한 문제로 정부 내부에서 인센티브와 역량을 투입할 필요
  - 우리나라는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등 많은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나 규제 등을 이유로 데이터를 통합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개별 부처의 정보보호 규정이나 문화적 저항 등을 이유로 통합·공유 활용에 어려움 존재하므로 행정 데이터의 거버넌스를 확립할 필요
- 이처럼 우리나라는 M&E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있으나 부처간 협력이 제한적이고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하는 등 여전히 한계가 존재
- 중앙정부 부처 간 협력이 부족하여 범정부적 정책 목표를 다루기 위한 M&E 시스템 제도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무르는 실정
  - M&E 품질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관료주의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
  -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M&E 시스템을 운용할 필요
    - 국제적으로도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하는 추세로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 평가를 무력화하는 등 M&E 시스템 자체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차단할 필요
- 향후 우리나라 M&E 시스템은 정부 내 협업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부처의 활동역량 및 역할을 강화하며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개선이 필요
- 정부 내 협업 메커니즘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M&E 활동에 대한 역량 및 소유권 (ownership)을 강화할 필요
  - 중기적 관점에서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M&E 담당부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독립적으로 자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
  - M&E 정보공개를 의무화하였으나 전략적인 정보노출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고품질의 이해하기 쉬운 M&E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하여 합리적인 정치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M&E 시스템의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할 필요
  - 정부차원의 데이터 공유 및 통합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정부 내 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립할 필요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주요국의 조세동향



### 미국

####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최종 규정 발표]

■ 미국 국세청(IRS)은 2024년 10월 24일,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Section 45X of the Internal Revenue Code)의 최종 규정(final regulations)을 발표함<sup>1)</sup>

-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는 바이든 행정부의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이하 IRA)」에 의해 도입됨
- 이번에 발표된 최종 규정을 통해 미국 내에서의 태양광 에너지 부품, 풍력 에너지 부품, 배터리 부품 등의 생산과 50여 가지의 핵심 광물 채굴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정함<sup>2)</sup>
- 미국 재무부(U.S. Department of the

Treasury)는 2024년 10월 24일 보도자료에서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생산 기술을 발전시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 내에서 첨단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며, 청정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힘<sup>3)</sup>

- 최종 규정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부품의 정의, 부품 목록, 부품별 세액공제 규모, 핵심 광물 목록, 부품 판매 방식, 세액공제 남용이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sup>4)</sup>
  - 세액공제는 2022년 12월 31일 이후에 미국 내에서만 생산된 부품을 대상으로 함<sup>5)</sup>
  - 최종 규정의 효력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발생함<sup>6)</sup>

<자료수집 및 조사: 김현정 변호사>



### 영국

#### [2024년 가을 예산안 발표]

■ 영국은 2024년 10월 30일, 2024년 가을 예산안

1) IRS, "Treasury, IRS issue final regulations for the 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보도자료, 2024. 10. 24., <https://www.irs.gov/newsroom/treasury-irs-issue-final-regulations-for-the-advanced-manufacturing-production-credit>, 검색일자: 2024. 11. 18.

2) Id.

3)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Releases Final Rules to Onshore Clean Energy Technologies, Strengthen Critical Minerals Supply Chains, and Expand U.S. Manufacturing Base as Part of Investing in America Agenda," 보도자료, 2024. 10. 24.,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2671>, 검색일자: 2024. 11. 20.

4) IBFD, "US Treasury Releases Final Rules for 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Tax Credits for Clean Energy Components," 2024. 10. 2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0-28\\_us\\_4.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0-28_us_4.html), 검색일자: 2024. 11. 18.

5) Federal Register, "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4/10/28/2024-24840/advanced-manufacturing-production-credit>, 검색일자: 2024. 11. 18.

6) Id.

(Autumn Budget 2024)을 발표하였음<sup>7)</sup>

- 금번 예산안에는 송금기준 제도 폐지 및 거주지 기반 제도로의 대체, 에너지 이익부담금 인상, 유류세 동결 등의 내용이 포함됨

■ 개인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발표함<sup>8)</sup>

- 2025년 4월 6일부터 영국 비거소 개인(Non-UK domiciled individuals)에 대한 현행 소득세 제도가 폐지되고, 거주지 기반 제도로 대체될 예정임
  - 현행 제도에 따르면 비거주자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총 소득 및 이익에 대한 소득세가 아니라, 해당 과세연도에 영국으로 송금하는 해외 소득 및 이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를 선택할 수 있음<sup>9)</sup>
  - 지난 10년간 영국 거주자가 아니었던 신규 입국자에게 4년간 해외 소득 및 이익 (foreign income and gains, FIG)에 대해 100% 세금 감면을 제공하는 거주지 기반 제도로 대체될 예정임
  - 이에 따라 2025년 4월 6일 이전에 발생한 비과세 및 미송금 FIG를 영국으로 송금하고 2025년 4월 6일부터 3년간 낮은 세율로 과

세하도록 선택할 수 있음

- 2024년 10월 30일 이후 처분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되어 하위 세율은 10%에서 18%로, 상위 세율은 20%에서 24%로 인상됨

■ 법인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발표함<sup>10)</sup>

- 고용주가 부담하는 국민보험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 이하 NIC) 부담금은 2025년 4월 6일부터 1.2%p 인상되어 15.0%로 인상될 예정임
  - 다만 소규모 사업체에 경감을 제공하고자 고용 수당(employment allowance)을 연간 5천파운드에서 1만 500파운드로 인상할 예정이며 10만파운드 기준은 삭제될 예정임
- 현 의회 임기 동안 법인세율 최고 한도를 25%로 제한하는 한편, 공장 및 기계 지출에 대한 전액 즉시비용처리(full expensing), 연간 100만파운드의 투자 공제 및 현행 R&D 감면을 유지를 재확인함

■ 국제조세 및 기타 세목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발표함

7) GOV.UK., "Autumn Budget 2024 speech," 2024. 10. 30., <https://www.gov.uk/government/speeches/autumn-budget-2024-speech>, 검색일자: 2024. 11. 4.

8) IBFD, "United Kingdom - Budget 2025 in Depth: Personal Tax Proposals Include Abolition of Non-Domicile Regime, Increase in Capital Gains Tax Rates," 2024. 10. 3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0-31\\_uk\\_2.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0-31_uk_2.html), 검색일자: 2024. 11. 1.

9) IBFD, "United Kingdom - HMRC Issues Technical Note for Proposed Change to Taxation of Non-UK Domiciled Persons," 2024. 11. 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1-05\\_uk\\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1-05_uk_1.html), 검색일자: 2024. 11. 11.

10) IBFD, "United Kingdom - UK Budget 2024 Would End Non-Dom Regime, Hike Capital Gains Tax Rates, Increase Employers'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2024. 10. 30.,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4-10-30\\_uk\\_1%23tns\\_2024-10-30\\_uk\\_1](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4-10-30_uk_1%23tns_2024-10-30_uk_1), 검색일자: 2024. 11. 4.

-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와 관련하여 소득산입보완규칙(undertaxed profits rule, 이하 UTPR) 시행을 확인함<sup>11)</sup>
- 2027년 1월 1일부터 영국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이 도입될 예정임을 밝힘<sup>12)</sup>
  - 이를 통해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및 철강 부문에서 영국으로 수입되는 탄소 누출 위험이 있는 상품에 탄소 가격을 부과할 예정이며, 유리 및 세라믹 부문 제품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에너지(석유 및 가스) 이익부담금(energy(oil and gas) profits levy, 이하 EPL)이 현행 35%에서 38%로 인상되고 부과 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2030년 3월까지 연장할 예정임
  - 이에 따라 40%의 표준세율에 38%의 EPL까지 더하면 총세율은 현행 75%에서 78%로 인상될 것이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 또한 영국 정부는 유류세 동결 기간을 1년 연장할 것이라고 밝힘
  - 영국 유류세는 2011년부터 동결되어 왔는데, 러-우 전쟁 이후 2022/23년도에 일시적

으로 5펜스 인하되었음<sup>13)</sup>

<자료수집 및 조사: 이희경 회계사>



## 룩셈부르크

### [CbCR 질의응답 개정]

- 룩셈부르크 국세청은 2024년 11월 6일, 국가별보고(Country-by-Country Reporting, 이하 CbCR)와 관련하여 질의응답을 개정하여 웹사이트에 게시함<sup>14)</sup>
  - CbCR의 세전이익(손실)에 지급인의 조세 관할국에서 배당으로 처리되는 다른 구성기업으로부터 받은 지급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모든 보고 회계연도에 적용되도록 함
  - 이러한 개정은 OECD가 2024년 5월에 발표한 CbCR 이행 지침에 근거함<sup>15)</sup>
    - OECD BEPS Action 13 보고서는 CbCR의 매출액에서 다른 구성기업으로부터의 배당이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세전이익(손실)에서 다른 구성기업으로부터의

11) IBFD, "United Kingdom - Budget 2025 in Depth: UK Confirms Implementation of Pillar Two Undertaxed Profits Rule," 2024. 11. 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1-01\\_uk\\_2.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1-01_uk_2.html), 검색일자: 2024. 11. 4.

12) IBFD, "United Kingdom - Budget 2025 in Depth: Announcements on Duties, Levies Include Increase in Air Passenger Duty, Stamp Duty Land Tax for Additional Properties," 2024. 11. 1.,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4-11-01\\_uk\\_1%23tns\\_2024-11-01\\_uk\\_1](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4-11-01_uk_1%23tns_2024-11-01_uk_1), 검색일자: 2024. 11. 4.

13) 에너지경제연구원, 「영국 정부, 가을 예산안에 북해 석유가스 기업에 대한 횡재세 인상 및 유류세 인하 발표」,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 24-22호, 2024. 11. 11., [https://www.keei.re.kr/pdfOpen?bid=0014&list\\_no=123889&seq=1](https://www.keei.re.kr/pdfOpen?bid=0014&list_no=123889&seq=1), 검색일자: 2024. 11. 22.

14) IBFD, "Tax Administration Updates CbCR Frequently Asked Questions," 2024. 11. 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1-07\\_lu\\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1-07_lu_1.html), 검색일자: 2024. 11. 11.

15) OECD, Guidance on the Implementation of Country-by-Country Reporting BEPS ACTION 13, 2024, p. 12.

- 배당 제외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없었음
- 이에 따라 관할국 및 다국적기업그룹은 다양한 접근법을 채택하였고,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과세당국은 이전가격 및 기타 BEPS 관련 위험 평가, 경제 및 통계 분석에 CbCR 정보를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음
  -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회원국은 구체적인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가능한 신속하게 지침을 적용할 것이 권장되었으며, 지침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보고 회계연도에 적용될 예정임

<자료수집 및 조사: 김재경 변호사>



**독일**

**[필라2 규칙에 따른 모회사 통지를 위한 공식 양식 발표]**

- 독일 재무부는 EU 「최저한세법(Minimum Taxation Law)」 지침(2022/2523)의 국내 이행을 위한 최저한세법 제3조에 따른 그룹 모회사 통지(Group Parent Notification) 공식 양식을 발표함<sup>16)</sup>
  - 독일의 「최저한세법」 제3조에 따르면, 최저한

세 대상이 되는 국내 법인 그룹은 최저한세 그룹을 형성해야 하며 다국적 기업(MNE) 그룹의 최종 모회사(The Ultimate parent entity, 이하 UPE)가 독일에 있는 경우 독일 그룹 모회사로 간주함

-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독일 내 모회사가 그룹 모회사로서 역할을 하거나 최종 모회사가 그룹 모회사를 지정하여야 함
- 그룹 모회사는 그룹 모회사로서의 지위를 연방 중앙 세무청에 전자적으로 통지해야 하며, 세금 기간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공식 양식을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전자 제출은 2025년 1월 2일부터 가능할 예정이며, 공식 양식은 독일 연방 세무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자료수집 및 조사: 정호림 세무사>



**오스트리아**

**[2025년 세금 감면 법안 승인]**

- 오스트리아 연방의회(Bundesrat)는 2024년 10월 3일,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2025년부터 세금을 감면하는 법안(Progressionsabgeltungsgesetz 2025)을 승인하고, 2024년 10월 9일, 관보에 법안의 내용을 게재함<sup>17)</sup>

16) IBFD, “Ministry of Finance Publishes Official Specimen Form for Group Parent Notification for Domestic Pillar Two Rul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0-22\\_de\\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0-22_de_1.html), 2024. 10. 22., 검색일자: 2024.11.18.

17) IBFD, “Bill on Inflation Relief for 2025 Enters Into Force,” 2024. 10. 1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0-17\\_at\\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0-17_at_1.html), 검색일자: 2024. 11. 13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sup>18)</sup>

- 최상위 구간을 제외하고 개인소득세 소득 구간 확장
-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또는 외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매달 아동 한 명당 60유로<sup>19)</sup>의 세액공제
- 판매세와 소득세 관련 영세사업 수익 기준을 4만 2천유로<sup>20)</sup>에서 5만 5천유로<sup>21)</sup>로 상향
- 자동차, 이륜차, 자전거를 대상으로 km당 0.5유로<sup>22)</sup>의 세액공제
- 국내 출장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증액

<자료수집 및 조사: 김현정 변호사>

### 개정함<sup>23)</sup>

- 2024년 10월 16일 기자 회견에서 이탈리아 경제 및 재정 장관은 2025년 예산법 초안에 포함된 주요 세금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자본 이득세) 암호화폐 처분으로 실현된 자본 이득에 대한 대체 세율을 기존 26%에서 42%로 인상
- (디지털 서비스세(이하 DST) 적용 변경) 2020년부터 적용해 온 기준인 DST의 적용 대상에서 전 세계 매출이 7억 5천만유로,<sup>24)</sup> 이탈리아 내 매출이 550만유로<sup>25)</sup> 이상인 기준을 삭제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함

<자료수집 및 조사: 정효림 세무사>



## 이탈리아

### [2025년 예산안 발표]

- 이탈리아 각료회의는 2025년 예산법 초안을 승인하며, 디지털 서비스세(DST)와 암호화폐 자산 처분으로 실현된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 방안을



## 포르투갈

### [2025년 예산안 발표]

- 포르투갈 정부는 2024년 10월 10일, 2025년 예

18) Bloomberg Tax, "Austria Gazettes Law on Tax Relief Measures for 2025," 2024. 10. 31.,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EIOBSF4000000?bc=W1siU2VhcmNoICYgQnJvd3NlIiwiaHR0cHM6Ly93d3cuYmxvb21iZXJnbGF3LmNvbS9wcm9kdWN0L3RheC9zZWYy2gvcMvzdWx0cy84MWMzMjFlNjNjMjQwM2RiOGYyYTNlNmQ5NzY0M2QwZCJdXQ-1fa3ebba9425ee6f74ce6cfa7899704bb933caa8&criteria\\_id=81c361e63c2403db8f2a3e6d97643d0d&search32=0Vtvza-TWqLLwb4l7EqTCQ%3D%3DwnHiUx\\_Ae95LIEYDkfDoKJO9ib3Hj5tvul0r3XYzG4nsw\\_ANFRkXshdLqedc0l09dgkrLvk\\_hkxAd-QNPAhwHw%3D%3Dm](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EIOBSF4000000?bc=W1siU2VhcmNoICYgQnJvd3NlIiwiaHR0cHM6Ly93d3cuYmxvb21iZXJnbGF3LmNvbS9wcm9kdWN0L3RheC9zZWYy2gvcMvzdWx0cy84MWMzMjFlNjNjMjQwM2RiOGYyYTNlNmQ5NzY0M2QwZCJdXQ-1fa3ebba9425ee6f74ce6cfa7899704bb933caa8&criteria_id=81c361e63c2403db8f2a3e6d97643d0d&search32=0Vtvza-TWqLLwb4l7EqTCQ%3D%3DwnHiUx_Ae95LIEYDkfDoKJO9ib3Hj5tvul0r3XYzG4nsw_ANFRkXshdLqedc0l09dgkrLvk_hkxAd-QNPAhwHw%3D%3Dm), 검색일자: 2024. 11. 13.

19) 2024년 11월 19일 환율 기준 약 8만 8,477원

20) 2024년 11월 18일 환율 기준 약 6,191만원

21) 2024년 11월 18일 환율 기준 약 8,107만원

22) 2024년 11월 18일 환율 기준 약 737원

23) Tax Note, Italian Budget Delays Bank Deferred Tax Credits, Strengthens DST, <https://www.taxnotes.com/tax-notes-today-international/budgets/italian-budget-delays-bank-deferred-tax-credits-strengthens-dst/2024/10/17/7m6k0>, 2024. 10. 17., 검색일자: 2024. 11. 18.

24) 2024년 11월 25일 환율 기준 약 1조 1천억원

25) 2024년 11월 25일 환율 기준 약 80억 7천만원

산안을 의회에 제출함<sup>26)</sup>

-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인상과 각종 공제금액 인상 등으로 세부담 완화, 청년 근로자를 위한 세제혜택 확대 등을 제안함<sup>27)</sup>
  -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전반적으로 약 4.6% 증가함<sup>28)</sup>
  -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는 식대의 면제 한도를 9.60유로에서 10.20유로로 인상함
  -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연간 최저임금을 1만 1,480유로에서 1만 2,180유로로 인상함
  - 현행 28세 이하 개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를 35세 이하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혜택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 전문직 활동에서 발생하는 자영업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25%에서 23%로 인하함
  - 비거주자가 100시간(50시간에서 최대 100시간)까지 보충 근로로 얻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함
- (법인소득세) 법인세율 인하, 직원 비용공제 인상 등을 제안함<sup>29)</sup>
  - 일반세율은 21%에서 20%로 인하, 중소기업의 세율은 17%에서 16%로 인하함

- 경승용차, 특정 경화물차, 오토바이와 관련된 비용에 부과되는 자율세율은 0.5% 인하함
- 근로자, 연금수급자 또는 그 가족을 위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으로 발생한 비용이 사회적으로 유용하다고 간주될 경우 그 가치의 120%를 비용으로 인정함
- (부가가치세 및 기타 간접세) 비친환경적인 제품 사용에 대한 세금 면제 폐지, 담배의 소비세 인상 등을 제안함<sup>30)</sup>
  - 석유 등 비친환경적 제품이 전기, 난방, 도시가스 생산에 사용될 경우 현재 부분적으로 세금 면제를 적용하는 것을 폐지하고 석유 및 에너지 세금을 부과함
  - 담배와 시가릴로에 대한 소비세를 전반적으로 인상함<sup>31)</sup>
  - 가축, 가금류 및 기타 동물의 사료로 사용되는 비료, 토양 개량제 및 기타 제품을 농업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재산세) 특정 인지세 면제, 취득세 완화 등을 제안함<sup>32)</sup>
  -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 대출에 대한 인지세

26) IBFD, "Budget 2025: Portugal Proposes Changes to PIT, CIT, Other Tax Measures," 2024. 10. 1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0-10\\_pt\\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0-10_pt_1.html), 검색일자: 2024. 11. 18.

27) IBFD, "Budget 2025 in Depth: PIT Proposals Include Increase in Tax Brackets and New Benefits for Young Workers," 2024. 10. 1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0-11\\_pt\\_2.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0-11_pt_2.html), 검색일자: 2024. 11. 18.

28) 과세표준의 인상으로 일부 납세자의 경우 적용받는 누진세율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세부담이 완화됨

29) IBFD, "Budget 2025 in Depth: CIT Proposals Include Rate Reductions, Increased Deduction for Employee Expenses," 2024. 10. 11.,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4-10-11\\_pt\\_5%23tns\\_2024-10-11\\_pt\\_5](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4-10-11_pt_5%23tns_2024-10-11_pt_5), 검색일자: 2024. 11. 18.

30) IBFD, "Budget 2025 in Depth: Portugal Proposes to Remove Exemption for Certain Non-Environmentally-Friendly Products," 2024. 10. 11.,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4-10-11\\_pt\\_1%23tns\\_2024-10-11\\_pt\\_1](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4-10-11_pt_1%23tns_2024-10-11_pt_1), 검색일자: 2024. 11. 18.

31) 담배의 경우 전국 평균 담배세를 참고하고 시가릴로의 경우 각각의 최소 세금을 최소 담배세의 50%까지 인상함

32) IBFD, "Budget 2025 in Depth: Government Proposes to Relax Stamp Duty, Transfer Tax on Property Acquisitions," 2024. 10. 11.,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4-10-11\\_pt\\_3%23tns\\_2024-10-11\\_pt\\_3](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4-10-11_pt_3%23tns_2024-10-11_pt_3), 검색일자: 2024. 11. 18.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면제 혜택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영구 거주지로만 사용되는 재산,<sup>33)</sup> 주거용으로 간주되는 재산, 10만 4,261.00유로 이하의 취득에 대해 과세를 면제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권정교 세무사>

- 또한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 관리, 세액공제의 사용, 외화 환산 등에 대한 규칙을 포함함
- 새로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영향을 받는 그룹은 해당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음

<자료 수집 및 조사: 이미현 세무사>



### 스웨덴

#### [글로벌 최저한세 개정안 승인]

- 스웨덴 정부는 2024년 10월 15일, 스웨덴의 「글로벌 최저한세법」을 개정하는 법안에 서명함<sup>34)</sup>
  - 아직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이 법안은 대기업 그룹의 글로벌 이익에 대해 최소 1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OECD의 최근 행정 지침을 반영함
  - 이 법안은 인위적 조치(konstlade arrangemang)의 처리 방식,<sup>35)</sup> 특정 저위험 관할국에서 간소화된 세금 계산의 가능성 등 다양한 과도기적 세이프하버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포함함



### 인도

#### [2024~2025년도 「소득세법」에 따른 공정가액 범위 명확화]

- 인도 중앙 직접세 위원회(The Central Board of Direct Taxes, CBDT)는 2024년 10월 18일 116/2024를 통해 공정가액 범위를 명확히 함<sup>36)</sup>
  - 2024~2025년 기간 중 「소득세법」 제92C조에 따라 결정된 가액과 국제거래 또는 특정 국내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진 가액의 차이가 도매 거래의 경우 1%, 기타 거래의 경우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모두 공정가액으로 간주함<sup>37)</sup>
    - 완제품의 매입원가가 총매입원가의 80% 이

33) 35세 이하가 취득한 영구거주지로만 사용되는 부동산은 32만 4,058 유로 이하의 취득에 대해 과세를 면제함

34) Bloomberg Tax, "Swedish Government Approves Global Minimum Tax Amendments," 2024. 10. 16.,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international/XSS5R8K000000?bc=W1siU2VhcmNoICYgQnJvd3NlIiwiaHR0cHM6Ly93d3cuYmxb21iZXJnbGF3LmNvbS9wcm9kdWN0L3RheC9zZWZyY2gvcmlvdWw0cy9hNmFjZjRhMmQyNDNhMjM0NDJkOGZlMjYwMmZlNyJkXQ--611afc6d52bb1c422e7b9cd162a5bf227b2aac4a&bna\\_news\\_filter=daily-tax-report-international&criteria\\_id=a6acf4a2d243a234646a7d8fe2602b37](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international/XSS5R8K000000?bc=W1siU2VhcmNoICYgQnJvd3NlIiwiaHR0cHM6Ly93d3cuYmxb21iZXJnbGF3LmNvbS9wcm9kdWN0L3RheC9zZWZyY2gvcmlvdWw0cy9hNmFjZjRhMmQyNDNhMjM0NDJkOGZlMjYwMmZlNyJkXQ--611afc6d52bb1c422e7b9cd162a5bf227b2aac4a&bna_news_filter=daily-tax-report-international&criteria_id=a6acf4a2d243a234646a7d8fe2602b37), 검색일자: 2024. 11. 4.

35) 스웨덴은 복잡한 계산횟수를 줄이고 대신 간소화된 계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영구적 세이프 하버를 허용하는데, 이 때에 간소화된 계산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산 방식을 다룸

36) Bloomberg Tax, "India Tax Agency Clarifies Calculation Procedure of Arm's Length Price Under Income Tax Act for AY 2024-2025," 2024. 11. 1.,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EUCR8DC000000?bc>, 검색일자: 2024. 11. 12.

37) 인도국세청, "Notification," 2024. 10. 18., <https://incometaxindia.gov.in/communications/notification-116-2024.pdf>, 검색일자: 2024. 11. 12.

상이며, 해당 상품의 월말 재고가 해당 거래와 관련된 매출의 10% 이하인 경우를 도매 거래로 정의함

- 본 개정 사항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때는 소급 적용되지 아니함

<자료 수집 및 조사: 문교현 세무사>

## 인도네시아

### [선도 산업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 연장]

■ 인도네시아 재무부(이하 MoF)는 2024년 10월 8일 특정 선도 산업 신규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발표함<sup>38)</sup>

- 당초 조세 감면 규정은 MoF 규정 130/PMK. 010/2020(PMK-130)에 따라 2024년 10월 9일 까지 적용되며, MoF 규정 69/2024(PMK-69)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조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연장됨
  - 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전 규정(MoF 규정, 150/PMK. 010/2018)의 자격 기준을 갖추는 것 외에도 자본투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감면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자본투자계획을 실행하여야 함<sup>39)</sup>

- 자본투자계획에 따른 감면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특정 사업 또는 분야에 대한 투자 계획인 경우, 순이익이 감소하는 신규사업 또는 노동집약산업의 경우, 특별 경제 구역에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에 감면 적용이 제한됨

- 특정 선도 산업에 투자하여 조세 감면 자격을 갖춘 기업은 주요 사업 활동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세 감면이 적용됨
- PMK-69에 따라 조세 감면 혜택을 받는 인도네시아 다국적 기업은 글로벌 최저한세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며, PMK-69 시행 전 조세 감면 적용 대상 시설을 취득한 경우 소득산입 규칙(top-up tax)<sup>40)</sup>에 따라 추가 과세 될 수 있음

<자료 수집 및 조사: 문교현 세무사>

38) IBFD, "Indonesia Extends Tax Holiday Incentive for Pioneer Industries until 31 December 2025," 2024. 11. 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1-06\\_id\\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1-06_id_1.html), 검색일자: 2024. 11. 13.

39) IBFD, "Indonesia Updates the Tax Holiday Incentive for Pioneer Industries," 2020. 11. 2.,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0-11-02\\_id\\_1%23%20tns\\_](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0-11-02_id_1%23%20tns_), 검색일자: 2024. 11. 13.

40) 해외 자회사 소득이 최저한세 이하로 과세되는 경우, 최저한세율까지의 자회사 소득을 지분비율에 따라 모회사 과세소득에 포함시키는 것

<표 1> 투자수준에 따른 조세 감면

(단위: IDR, %, 년)

구분	투자수준	면세비율	적용기간
1	1,000억 ~ 5,000억 미만 <sup>1)</sup>	50	5
2	5,000억 ~ 1조 미만 <sup>2)</sup>	100	5
3	1조 ~ 5조 미만 <sup>3)</sup>	100	7
4	5조 ~ 15조 미만 <sup>4)</sup>	100	10
5	15조 ~ 30조 미만 <sup>5)</sup>	100	15
6	30조 이상 <sup>6)</sup>	100	20

- 주: 1) 2024년 11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8억 2,657만원~441억 3,286만원 미만임
- 2) 2024년 11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41억 3,286만원~882억 6,572만원 미만임
- 3) 2024년 11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82억 6,572만원~4,413억 2,860만원 미만임
- 4) 2024년 11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413억 2,860만원~1조 3,239억 8,580만원 미만임
- 5) 2024년 11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3,239억 8,580만원 임~2조 6,479억 7,160만원 미만임
- 6) 2024년 11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조 6,479억 7,160만원 이상임

출처: IBFD, "Indonesia Updates the Tax Holiday Incentive for Pioneer Industries," 2020. 11. 2.,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0-11-02\\_id\\_1%23%20tns\\_](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0-11-02_id_1%23%20tns_), 검색일자: 2024. 11. 13.

발 및 확장 인센티브(Development and Expansion Incentive, 이하 DEI)'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하여, 1967년 경기 부양 인센티브법의 투자 공제와 관련한 제41조 및 제43조에 대한 개정안을 제공함

- DEI를 부여받은 회사에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회사의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감면 세율이 2024년 2월 17일 이후부터 5% 및 10%뿐만 아니라 15%까지 확대됨
  - 각 세율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차등 적용됨
- 상기한 DEI 수령자의 소득세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가능함

<자료 수집 및 조사: 박하얀 연구원>

 **싱가포르**

**[「경기 부양 인센티브법」 개정안 의회 통과]**

- 싱가포르 의회는 2024년 10월 15일 소득세 감면과 관련한 「경기 부양 인센티브법」의 개정안을 통과시킴<sup>41), 42)</sup>
  - 본 개정안은 2024년 예산안에서 발표한 '개

 **뉴질랜드**

**[과세 목적 거주 관련 해석서 초안 발표]**

- 뉴질랜드 국세청은 2024년 10월 30일 과세 목적 거주에 대한 해석서인 "PUB00483: Tax residence" 초안을 발표함<sup>43)</sup>
  - 본 해석서는 2007년 「소득세법」의 과세 목적 거주 규칙을 설명하고 개인 및 회사의 세무 거주와 신탁과 관련된 거주 의미를 다루며, "IS 16/03: Tax residence"를 업데이트하고 대체함

41) Singapore Parliament, "Economic Expansion Incentives (Relief from Income Tax) (Amendment) Bill (Bill No, 41/2024)," [https://www.parliament.gov.sg/docs/default-source/bills-introduced/economic-expansion-incentives-\(relief-from-income-tax\)-\(amendment\)-bill-41-2024.pdf?sfvrsn=69e55708\\_1](https://www.parliament.gov.sg/docs/default-source/bills-introduced/economic-expansion-incentives-(relief-from-income-tax)-(amendment)-bill-41-2024.pdf?sfvrsn=69e55708_1), 검색일자: 2024. 11. 18.

42)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4-11-14\\_sg\\_1](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4-11-14_sg_1), 검색일자: 2024. 11. 18.

43) IBFD, "Inland Revenue Issues Draft Updated Interpretation Statement on Tax Residence,"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4-11-12\\_nz\\_1](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4-11-12_nz_1), 검색일자: 2024. 11. 18.

■ 뉴질랜드의 거주자로서의 과세 범위와 국외원천 소득에 대해 납부한 외국 세금에 대한 세액공제 자격의 내용 등을 다루고 있음<sup>44)</sup>

- 개인의 거주와 관련하여서는 뉴질랜드 내국세 관련 거주자 규정과 뉴질랜드 이중과세방지협정(이하 DTA)에 포함된 거주 조항 간의 관계 등을 확인함
  - 신규 이민자 및 귀국한 뉴질랜드인에게는 과도기적 거주자 규정을 통해 일시적인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규정을 포함함
- 법인의 조세 목적상 거주지와 관련하여 본사의 위치 판단 방법 및 거주지 변경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이때 법인에 대한 이중과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DTA보다 BEPS 조치 관련 다자간 협정을 우선할 수 있음
- 수익자 혹은 수탁자와 같은 소득 수혜자의 유형과 신탁 관계자의 거주지에 따라 달라지는 신탁 소득 관련 과세와 관련됨
  - 뉴질랜드 거주 신탁 관리인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비거주 신탁 관리인은 뉴질랜드 소스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일반적인 입장을 수정하여, 수탁자의 세무 거주지에 따라 신탁 관리인의 소득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됨

<자료 수집 및 조사: 박하얀 연구원>



OECD

##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XML 스키마 보고서 발간]

■ OECD는 2024년 10월 2일,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 이하 CARF)와 관련하여 과세당국을 위한 사용자 지침인 XML 스키마 보고서를 발간함<sup>45)</sup>

- OECD는 2023년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 서비스 제공자(Reporting Crypto-Asset Service Provider)’에게 사용자들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각 과세당국 간 교환하도록 하는 CARF를 승인함
  - 후속 조치인 XML 스키마는 구체적인 데이터 요소와 각 데이터를 설명하는 속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XML 스키마는 과세당국 간의 CARF 관련 정보 교환을 위해 설계되었지만, 관할국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고하는 암호화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국내 보고에도 사용할 수 있음
- 보고서는 ‘CARF XML 스키마 제공 정보’ 및 ‘정정(correction)’으로 구성되고, 부록에서 정보교환 다이어그램을 제공함

44) Inland Revenue, “PUN00483: Tax Residence,” <https://www.taxtechnical.ird.govt.nz/-/media/project/ir/tt/pdfs/consultations/current-consultations/pub00483/pub00483-is.pdf?modified=20241030011128&modified=20241030011128>, 검색일자: 2024. 11. 18.

45) OECD,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XML Schema,”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crypto-asset-reporting-framework-xml-schema\\_578052ec-en.html](https://www.oecd.org/en/publications/crypto-asset-reporting-framework-xml-schema_578052ec-en.html), 검색일자: 2024. 11. 4.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정정’은 정보를 보내는 과세당국이 부정확한 정보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정하는 것임  
<자료수집 및 조사: 김재경 변호사>

- 위원회가 언어적 합의를 포함한 표준 전산양식을 수립하는 이행 행위를 채택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함
- 첫 번째 보고 회계연도가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관련 역년 또는 보고 기간이라고 명시함



EU

### [유럽연합집행위원회, 행정협력지침 개정에 관한 이사회 지침 채택]

<자료 수집 및 조사: 이미현 세무사>

-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2024년 10월 28일, 조세분야의 행정협력에 관한 지침 2011/16/EU을 개정하는 이사회 지침 No. COM (2024) 497을 채택함
- 제안된 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포함됨<sup>46)</sup>
  - 이사회 지침(EU) 2022/2523<sup>47)</sup> 제44조에 따른 추가세액 정보신고서에 관한 정보 교환 조항인 제8ae항을 도입함
  - 추가세액 정보신고서와 관련된 수정, 규정 준수 및 집행에 관한 협력 조항인 제9a항을 도입함
  - 각 회원국의 관할국이 제8항에서 제8ae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정보 교환을 통해 획득한 정보의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장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명시함

46) Bloomberg Tax, “European Commission Adopts Proposed Council Directive to Amend Directive on Administrative Tax Cooperation,” 2024. 10. 31.,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international/X1IK5TR4000000?bc=W1siU2VhcmNoICYgQnJvd3NlIiwiaHR0cHM6Ly93d3cuYmxvb21iZXJnbGF3LmNvbS9wcm9kdWN0L3RheC9zZWYy2gvcMvzdWx0cy9jODQ1NmlyMzdjNmU1MmVlMmZhMGY0YzVkNTY3ZDE0YiJdXQ—a62969ce98491cd90ff27be0f4296ad8081abfab&na\\_news\\_filter=daily-tax-report-international&criteria\\_id=c8456b237c6e52ee2fa0f4c5d567d14b](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international/X1IK5TR4000000?bc=W1siU2VhcmNoICYgQnJvd3NlIiwiaHR0cHM6Ly93d3cuYmxvb21iZXJnbGF3LmNvbS9wcm9kdWN0L3RheC9zZWYy2gvcMvzdWx0cy9jODQ1NmlyMzdjNmU1MmVlMmZhMGY0YzVkNTY3ZDE0YiJdXQ—a62969ce98491cd90ff27be0f4296ad8081abfab&na_news_filter=daily-tax-report-international&criteria_id=c8456b237c6e52ee2fa0f4c5d567d14b), 검색일자: 2024. 11. 4.

47) 이사회 지침 2022/2523은 유럽연합 역내 다국적 그룹 및 역내 대규모 그룹에 대한 글로벌 최소세 수준 확보에 관한 지침을 뜻함



## 주요국의 재정동향



### EU

■ EU 집행위원회, 2024년 가을 경제전망 발표 (2024. 11. 15.)<sup>1)</sup>

- (동향) EU는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침체에 이어 올해 1분기에 성장을 재개했으며 물가상승 압력이 더욱 완화되는 가운데 2분기와 3분기에는 완만하고 안정적인 성장세가 지속됨
  - 경제 전망에 관한 불확실성이 높지만 대내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
- (경제성장률) 2024년 EU의 실질 GDP 성장률 전망은 0.9%로 올해 5월 봄 경제 전망에 비해 0.1%p 하락하였고, 유로지역<sup>2)</sup>은 0.8%로 봄 전망과 동일
  - (2025년) EU에서는 소비 증가와 투자 반등으로 GDP 성장률은 최대 1.5%로 전망되고, 유로지역 역시 소비와 투자 증가에 힘입어 1.3%로 전망
  - 2026년 EU 경제성장률은 수요의 지속적인 확대로 1.8%, 유로지역은 1.6%로 전망
- (물가) 2022년 말부터 물가상승률이 하락하여 EU 물가상승률은 2023년 6.4%에서 2024년

2.6%로, 유로지역은 5.4%에서 2.4%로 각각 절반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물가는 계속해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EU는 2025년 2.4%로 하락한 후 2026년 2.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유로지역은 2025년 2.1%, 2026년 1.9%로 감소 전망

- (노동) 2024년 상반기에 75만명의 노동자가 신규 취업되어 EU 노동시장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노동 수요는 공급을 초과하고 있으나, 고용 증가 속도는 둔화되고 있음
  - (실업률) 2024년 10월 EU 실업률은 역대 최저치인 5.9%로 2024년 연간 실업률은 6.1%에서 2026년 5.9%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
    - ◆ 유로지역 실업률은 2024년 6.5%로 전망되고 2025년과 2026년 각각 6.3%로 하락 전망
  - (고용) 2024년 고용 성장률은 0.8%에서 2026년 0.5%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재정) EU의 일반정부 적자는 2024년 3.1%에서 2026년 2.9%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유로지역은 2024년 3.0%에서 2026년 2.8%로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
  - (재정수지) 2024년 EU의 재정적자는 예상치 못한 수입 증가와 재정건전화 노력의 결과로 전년 대비 0.4%p 감소한 GDP 대비 3.1%로 전망되며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 예상

1) EU 집행위원회, "Autumn 2024 Economic Forecast: A gradual rebound in an adverse environment," 2024. 11. 15.,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economic-forecast-and-surveys/economic-forecasts/autumn-2024-economic-forecast-gradual-rebound-adverse-environment\\_en](https://economy-finance.ec.europa.eu/economic-forecast-and-surveys/economic-forecasts/autumn-2024-economic-forecast-gradual-rebound-adverse-environment_en), 검색일자: 2024. 11. 18.

2) EU 27개 회원국 중 유로화를 자국 통화로 채택한 20개 회원국이 유로지역에 해당되고, 2024년 기준 유로지역 국가들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사이프로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이며, 비유로지역 국가들은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스웨덴, 덴마크임

<표 1> 유로지역 및 EU 27개국의 경제 전망

(단위: %)

국가	실질 GDP 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sup>1)</sup>			실업률			재정수지 <sup>2)</sup>		
	2024	2025	2026	2024	2025	2026	2024	2025	2026	2024	2025	2026
유로지역(20개국)	0.8	1.3	1.6	2.4	2.1	1.9	6.5	6.3	6.3	-3.0	-2.9	-2.8
EU(27개국)	0.9	1.5	1.8	2.6	2.4	2.0	6.4	5.9	5.9	-3.1	-3.0	-2.9

주: 1) 소비자물가조화지수(Harmonized index of consumer prices(HICP)) 기준. 소비자물가조화지수는 유럽연합 내에서 국가 간 소비자물가 변동을 비교하는 물가지수로 각 국가의 특수성과 가중치를 부여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달리 EU 전역에서 표준화된 항목과 기준에 따라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기초로 하며 일반적으로 자가 거주 비용을 포함하지 않음

2) 재정수지는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비율

출처: EU 집행위원회, "European Economic Forecast Autumn 2024," 2024. 11. 15.,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document/download/7173e7c9-3841-4660-8d6a-a80712932f81\\_en?filename=ip296\\_en.pdf](https://economy-finance.ec.europa.eu/document/download/7173e7c9-3841-4660-8d6a-a80712932f81_en?filename=ip296_en.pdf), Table 1 편집, p.1, 검색일자: 2024. 11. 27.

- (재정기조) EU 기금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2024년 EU 재량 재정정책은 다소 긴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2025년과 2026년에는 대체로 중립적 영향을 미칠 전망
- (2024년) 긴축 재정기조는 EU 자금 지출

- 의 일시적인 감소와 이탈리아의 주택세 공제의 단계적 폐지에 주로 기인함
- (2025년) 기초 순경상지출의 긴축이 '회복·복구기금' 및 '기타 EU 기금' 활용 증가를 통한 공공투자 확대에 의해 상쇄될

[그림 1] 2024~2026년 EU 일반정부 재정수지 전망

(단위: GDP 대비 %)



출처: EU 집행위원회, "Autumn 2024 Economic Forecast: A gradual rebound in an adverse environment," 2024. 11. 15.,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economic-forecast-and-surveys/economic-forecasts/autumn-2024-economic-forecast-gradual-rebound-adverse-environment\\_en](https://economy-finance.ec.europa.eu/economic-forecast-and-surveys/economic-forecasts/autumn-2024-economic-forecast-gradual-rebound-adverse-environment_en), 검색일자: 2024. 11. 18.

것으로 예상

- (총부채) EU 총부채 비율은 2023년 GDP 대비 82.1%에서 2026년 83.4%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유로지역은 2023년 88.9%에서 2026년 90.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EU 총부채는 2020년에서 2023년 사이 약 10%p 감소하였고 이후 여전히 높은 적자로 인해 금리 상승의 영향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

- (위험) EU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고 위험은 하방 요인이 높음

- (지정학적 위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의 갈등 심화는 지정학적 위험과 에너지 안보의 취약성을 높이고 있음
- (보호무역) 교역 상대국의 보호 무역주의 조치가 더 증가할 경우 세계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EU 개방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낮은 생산성) 낮은 생산성 성장률은 임금 상승이 지속되기 어렵게 하고 기업들이 노동을 줄이거나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위험을 높임

- (건축 정책) 회복·복구기금<sup>3)</sup>의 집행 지연이나 2026년 중기재정구조계획이 실행되면서 엄격한 재정 건축 정책은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음

- (자연재해) 최근 스페인에서 발생한 홍수와 같이 자연재해의 빈도와 피해 범위의 증가는 경제·사회에 미치는 심각한 결과를 다시 한번 보여줌

■ EU 이사회·의회, 2025년 EU 예산 합의(2024. 11. 16.)<sup>4)</sup>

- (우선순위) 녹색 및 디지털 전환 촉진, 일자리 창출,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과 글로벌 역할을 강화하여 유럽의 회복력(Resilient)을 더욱 높이고 미래를 대비

- EU 우선순위에 집중하는 동시에 재난 대응을 강화하고 난민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유지

- (재난 대응 능력 강화) 자연 재해 대응을 위한 EU 역량은 다년도 예산의 중간 개정<sup>5)</sup>을 통해 강화되었으며, EU 연대기금과 긴급구호예비기금을 확대

- (지속적 지원) 시리아 난민과 발칸반도 서부 등에 지원을 계속할 것이며 우크라이

3) 회복·복구기금(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은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EU 회원국의 경제를 더 지속가능하게 만들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며, 개혁 및 투자를 촉진하도록 지원함

4) EU 이사회, "EU budget for 2025: Council and Parliament reach agreement," 2024. 11. 16.,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4/11/16/eu-budget-for-2025-council-and-parliament-reach-agreement/>, 검색일자: 2024. 11. 18.; "Council gives go-ahead to EU annual budget for 2025," 2024. 11. 25.,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4/11/25/council-gives-go-ahead-to-eu-annual-budget-for-2025/>, 검색일자: 2024. 11. 26.; EU 집행위원회, "EU annual budget 2025: pursuing our political priorities and addressing crises," 2024.11.16.,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4\\_5866](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4_5866), 검색일자: 2024. 11. 18.; "Questions and Answers - Agreement on the EU Annual Budget 2025," 2024. 11. 16.,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4\\_5867](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4_5867), 검색일자: 2024. 11. 18.

5)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재정동향」, 2024년 2월호, 2024, pp.7-9,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6094>, 검색일자: 2024. 11. 27. 참조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나에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

- (규모) 2025년 확정 예산은 미래 지불 금액을 포함한 승인기준<sup>6)</sup> 1,927억 6,860만유로, 해당 연도 지불 계획인 지출기준 1,496억 1,570만유로로 편성(기타 특수 기금 제외)
  - (차입 비용) 금리 상승에 따른 차입 비용 증가로 2025년 EU 예산안 재원 배분 의사결정에 관한 이사회와 의회 간의 입장차가 있었으나, 새로운 체계 도입으로 조정<sup>7)</sup>
- (주요 내용) 2025년 예산은 EU 우선순위에 집중하는 동시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여력을 유지하고자 함
  - (1. 단일시장, 혁신 및 디지털) 연구 및 혁신 지원 프로그램(Horizon Europe) 128억유로, 유럽 우주 기술 개발 지원 20.5억유로, 운

송·에너지·통신에 관한 유럽연결프로젝트 유럽연결프로젝트<sup>8)</sup> 28억유로 등 약 215억유로 지원

- (2. 결속, 회복력 및 가치) EU 내 지역 발전을 위한 유럽지역발전기금 유럽지역발전기금<sup>9)</sup> 4억유로, 포용성 강화를 위한 유럽사회기금 플러스<sup>10)</sup> 1,718만유로, EU 저소득 국가의 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돕는 결속기금(Cohesion Fund)<sup>11)</sup> 872만유로 등 약 780억유로 배정
- (3. 천연자원 및 환경) 유럽농업보증기금(EAGF)<sup>12)</sup> 399.8억유로, 유럽농촌개발기금(EAFRD) 132억유로, 공정전환기금(Just Transition Fund)<sup>13)</sup> 15억유로 등 약 567억유로 편성
- (4. 이주 및 국경관리) 망명·이주 및 통합

6) 승인기준(commitments)은 특정 프로젝트, 계약, 연구 등 몇 년에 걸쳐 지출을 약속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금액. 지급기준(payments)은 현재 혹은 이전 회계 연도 동안 EU 예산에서 반영된 계획에서 발생한 지출 금액을 의미

7)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EU 집행위원회의 경제 회복 패키지인 “차세대 EU 프로그램”을 통해 2026년 말까지 EU 집행위원회가 통합 자금 조달 형태로 최대 7,120억유로를 차입하여 EU 예산에 추가적인 자금을 제공하고 있음

8) 유럽연결프로젝트(Connecting Europe Facility(CEF))는 운송, 에너지, 통신 등 세 개 분야 회원국 간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여 EU 단일시장 형성을 목표로 함

9) 유럽지역발전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은 EU 내의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경제적으로 뒤쳐진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둠. 교통 및 통신 인프라 개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 경제 다각화 및 디지털화, 사회적 통합과 고용 기회 확대 등 지원

10) European Social Fund Plus (ESF+)는 EU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사회적 포용, 고용 촉진, 교육, 훈련 등을 지원

11) 1인당 GNI가 EU 평균 90% 이하인 국가를 대상으로 유럽연합의 지역 간 경제적,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재정 지원 기금으로 환경 지속 가능성 증진,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개선 등을 목표로 하며, 지역보다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중점을 둠(EU 집행위원회, “Cohesion Fund,” [https://ec.europa.eu/regional\\_policy/funding/cohesion-fund\\_en](https://ec.europa.eu/regional_policy/funding/cohesion-fund_en), 검색일자: 2024. 11. 26.)

12) 유럽농업보증기금(European agricultural guarantee fund (EAGF))과 유럽농촌개발기금(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은 EU 공동 농업 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의 주요 재원 수단으로 2021~2027년 다년도 재정체계에서 공동 농업 정책에 할당된 3,866억유로 중 유럽농업보증기금에 2,911억유로, 유럽농촌개발농업기금에 955억원이 지원되고, 유럽농업보증기금은 주로 농가 소득 지원, 농업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며, 유럽농촌개발농업기금은 농촌 지역 발전과 농촌 개발 프로그램 지원, 농촌 기업과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보증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EU 집행위원회, “Common agricultural policy funds,” [https://agriculture.ec.europa.eu/common-agricultural-policy/financing-cap/cap-funds\\_en](https://agriculture.ec.europa.eu/common-agricultural-policy/financing-cap/cap-funds_en), 검색일자: 2024. 11. 27.)

13) 2050년까지 EU의 기후 중립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유럽 그린딜 차원에서 공정전환 메커니즘의 핵심 요소로 2021~2027년 결속 정책의 새로운 수단. 기후 중립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을 지원하여 지역 간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격차 감소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EU 집행위원회, Just Transition Fund, [https://ec.europa.eu/regional\\_policy/funding/just-transition-fund\\_en](https://ec.europa.eu/regional_policy/funding/just-transition-fund_en), 검색일자: 2024. 11. 26.)

- 기금<sup>14)</sup> 18.7억유로, 국경 관리 및 비자 도구 12.3억유로, 세관 관리 지원 체계 1.5억유로 등 47.9억유로 편성
- (5. 안보 및 국방) 유럽연합의 공동 안보 및 방위를 위해 회원국 간 협력을 촉진하고 방위 프로젝트 개발 기업들을 지원하는 등 유럽 방위 기금(EDF) 비연구 분야 10.3억유로, 연구분야 4억유로 등 총 26.3억유로 지원
  - (6. 파트너 및 세계) 이웃, 개발 및 국제 협

- 력 기구<sup>15)</sup> 108.9억유로, 인도주의적 지원 (Humanitarian Aid(HUMA))<sup>16)</sup> 19.4억유로 등 총 163억유로 편성
- (7. 유럽 공공 행정)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한 예비비 성격의 재정수단에 66.7억유로, 우크라이나 지원 43.2억유로 등 총 128.5억유로 지원
  - (향후 단계) 2025년 EU 연간 예산은 향후 EU 의회와 EU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어

&lt;표 2&gt; 2025년 EU 확정 예산

(단위: 백만유로, %)

구분	승인기준 <sup>1)</sup>	지급기준
1. 단일시장, 혁신 및 디지털	21,480	20,461
2. 결속, 회복력 및 가치	77,980	44,445
3. 천연자원 및 환경	56,731	52,092
4. 이주 및 국경관리	4,791	3,204
5. 안보 및 국방	2,633	2,143
6. 파트너 및 세계	16,308	14,426
7. 유럽 공공 행정	12,845	12,845
<b>합계</b>	<b>192,769</b>	<b>149,616</b>
기타 특수 기금 <sup>2)</sup>	6,670	5,594
<b>기타 특수 기금 포함 합계</b>	<b>199,438</b>	<b>155,209</b>
EU 27개국 GNI 대비 %	1.08%	0.84%

주: 1) 승인기준(commitments)은 특정 프로젝트, 계약, 연구 등을 위해 몇 년에 걸쳐 지급하기 위한 법적 약속을 의미. 지급기준(payments)은 주어진 해에 실제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의미

2) 'Thematic special instruments'는 예산의 유연성을 높이고,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특정 예산 항목에 추가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연대 및 긴급 원조 예비비(Solidarity and Emergency Aid Reserve)', '유럽 세계화 조정 기금(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 '브렉시트 조정 예비비(Brexit Adjustment Reserve)' 등이 해당됨(EU 집행위원회, Flexibility and special instruments, [https://commission.europa.eu/strategy-and-policy/eu-budget/long-term-eu-budget/2021-2027/spending/flexibility-and-special-instruments\\_en?utm\\_source=chatgpt.com](https://commission.europa.eu/strategy-and-policy/eu-budget/long-term-eu-budget/2021-2027/spending/flexibility-and-special-instruments_en?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자: 2024.11.26.)

출처: EU 이사회, "EU budget for 2025: Council and Parliament reach agreement," 2024.11.16.,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4/11/16/eu-budget-for-2025-council-and-parliament-reach-agreement/>, 검색일자: 2024.11.18.

- 14) 망명, 이주 및 통합 기금(Asylum, Migration and Integration Fund (AMIF))는 2021-2027년 동안 98억 8천만유로의 예산으로 국가의 이민 역량을 높이고 이주 관리 절차를 개선하며, 연대와 책임 분담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15) 이웃, 개발 및 국제 협력 기구(Neighbourhood,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strument(NDICI))는 유럽연합의 주요 대외 협력 자금 지원 기구로 총 795억유로의 예산으로 지원이 필요한 국가의 장기 개발 과제 해결 등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
- 16) 인간이 초래한 재해나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

야 하고, 최종 절차인 본회의 표결은 2024년 11월 27일로 예정됨

■ EU 집행위원회, 2025년 유로지역 국가 예산초안에 대한 평가 발표<sup>17)</sup>

※ EU 경제 거버넌스 체계(Economic governance framework)에 따라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지역의 회원국은 재정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매년 10월 EU 집행위원회에 차년도 예산계획 초안을 제출하며, EU 집행위는 예산초안이 EU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 혹은 준수하지 않을 위험이 있는지 평가함. 이번 평가는 새로운 재정체계의 중기 재정구조계획에 따른 첫째 예산이므로 유로지역 회원국들의 예산초안이 2024~2025년 순지출 증가율을 기초로 중기 재정구조계획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평가

- (평가 내용) 2024년 국가별 질적 권고사항을 반영하면서 회원국별 순지출 경로가 각국 중기 재정구조계획의 상한 이내에 있는지 평가<sup>18)</sup>
- (권고사항 반영 여부) 예산초안이 중기 계획의 순지출 증가율 상한을 준수하고, 국가별 권고안의 요구 조치를 반영한 경우 권고사항과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
  - (일치) 8개 회원국(크로아티아, 사이프로스,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은 권고사항과 일치한다고 평가
  - (불일치) 중기 재정 계획 및 권고사항에서 심각하게 벗어난 경우 ‘완전 불일치’로 평가하고 일부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불일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불일치 위험’으로 판단

- (완전 불일치) 네덜란드는 연간 및 누적 순지출이 모두 상한선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참조 궤적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
- (불일치) 4개국(에스토니아, 독일, 핀란드, 아일랜드)은 연간 혹은 누적 순지출 증가율이 지출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3개국(룩셈부르크, 몰타, 포르투갈)은 2024~2025년 겨울까지 에너지 긴급 지원 조치 철회를 하지 않는 등 권고사항을 반영하지 않음
- (불일치 위험) 리투아니아는 중기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고 연간 및 누적 순지출이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권고안과 일치하지 않을 위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미제출) 2025년 예산초안을 제출하지 않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페인의 경우 이들 국가의 2025년 재정 정책이 권고사항과 일치하는지 평가를 보류
- 예산초안이 국가별 권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독이 요구되고,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가 필요함
- (재정기조 평가) 2025년 회원국들의 예산초안은 다소 긴축 재정기조이고, 공공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새 거버넌스 체계의 전제(건전화와 투자)를 충족함

17) EU 집행위원회, “Draft budgetary plans 2025,” 2024. 11. 26.,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economic-and-fiscal-governance/stability-and-growth-pact/preventive-arm/annual-draft-budgetary-plans-dbps-euro-area-countries/draft-budgetary-plans-2025\\_en](https://economy-finance.ec.europa.eu/economic-and-fiscal-governance/stability-and-growth-pact/preventive-arm/annual-draft-budgetary-plans-dbps-euro-area-countries/draft-budgetary-plans-2025_en), 검색일자: 2024. 11. 27.

18) 회원국의 중기 재정구조계획이 제출되지 않았거나, 계획의 순지출 경로가 새로운 체계의 요구사항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2024년 6월 EU 집행위가 회원국에 제공한 사전 지침을 기초로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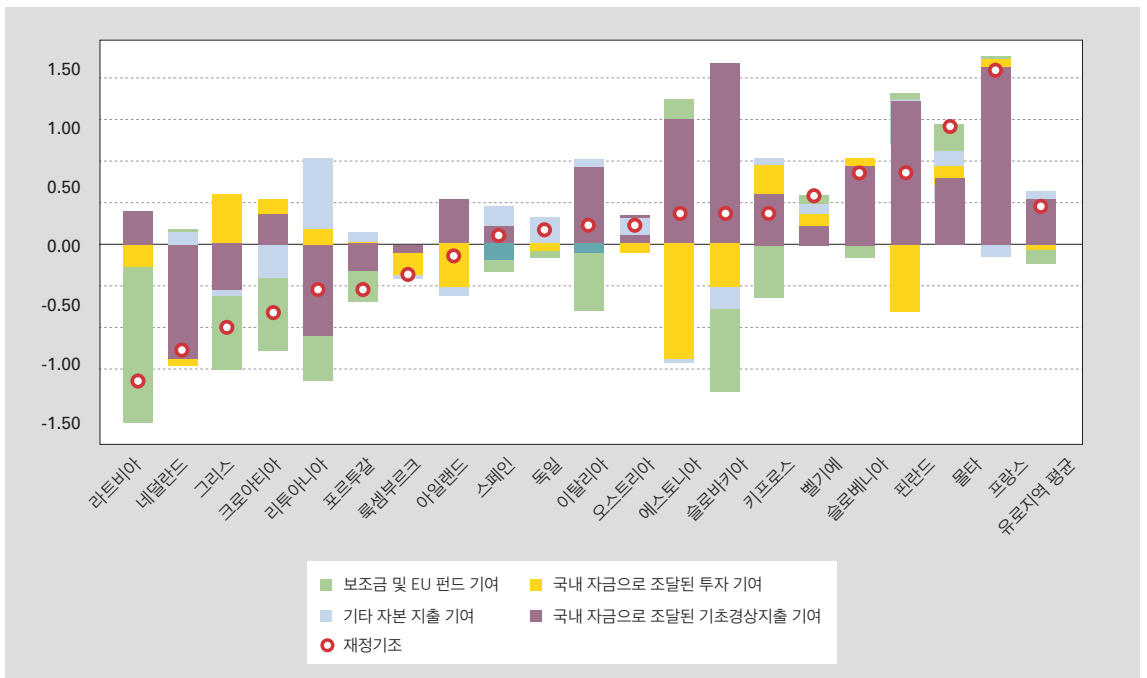
- (재정수지) 유로지역 국가들의 재정정책은 2025년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하로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
  - 2024년에는 민간 투자 보조금 감소와 세수 증가로 GDP 대비 재정적자가 3.0%로 감소 전망
  - 2025년에는 중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회원국의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재정적자는 GDP 대비 2.9%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채무) 유로지역의 GDP 대비 공공 채무 비율은 2025년에 90%로 약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2020년 약 99%의 최고치에 비해

-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2025년 채무 비율 증가는 기초 재정수지 적자와 이자 지출의 증가에 주로 기인
- (재정기조) 2024년 유로지역 재정기조는 자본지출 감소로 인해 GDP 대비 0.5%의 긴축 기조로 전환 전망
  - 2025년에는 순경상지출 감소가 투자 증가로 부분적으로 상쇄되면서 GDP 대비 0.25%를 약간 초과하는 긴축 재정기조로 예상됨

■ EU 집행위원회, EU 회원국이 제출한 중기 재정 구조계획(Medium-term fiscal structural plans)

[그림 2] 2025년 유로지역 국가들의 재정기조 전망

(단위: GDP 대비 %)



출처: EU 집행위원회, "2025 European Semester: bringing the new economic governance framework to life," 2024.11.26., Graph 5, a 패널, p 21,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document/download/0633b883-761d-4b68-91f9-6d8848c64f7c\\_en?filename=COM\\_2024\\_705\\_1\\_EN.pdf](https://economy-finance.ec.europa.eu/document/download/0633b883-761d-4b68-91f9-6d8848c64f7c_en?filename=COM_2024_705_1_EN.pdf), 검색일자: 20204.11.27.

에 관한 평가 보고서 발표(2024. 11. 25.)<sup>19)</sup>

※ EU 회원국이 2024년 10월 EU 집행위에 제출한 중기 재정구조계획은 2024년 4월부터 발표된 새로운 EU 경제 거버넌스 체계의 핵심 요소로 회원국의 재정 목표와 EU 우선순위 및 개별 국가별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혁과 투자를 담고 있음

- (사전 지침) 2024년 6월 EU 집행위는 재정적자 수준이 높은 회원국 등<sup>20)</sup>에 중기 재정구조계획 설정에 참조할 수 있도록 참조 궤적(Reference trajectories)을 전달함
  - 참조 궤적은 재정 조정기간 종료 시점에 일 반정부 채무가 하향 추세 또는 신중함 수준을 유지하며, GDP 대비 재정적자가 3% 이하로 감소·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별 순지출 최대 증가율을 의미
  - (국가별 평가) 22개 회원국에서 중기 재정구조계획을 제출했으며,<sup>21)</sup> 그 중 20개 회원국에서 새로운 재정체계 요건을 충족한다고 평가하고, 일부 5개국은 재정 조정 기간 연장을 승인
  - (재정경로 평가) EU 집행위는 대부분 회원국에서 중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재정 경로를 계획에 제

시한 것으로 평가함

\* 중기 재정 지속가능성은 EU 집행위원회의 참조 궤적을 준수하는지 평가

- 20개 회원국<sup>22)</sup> 중기 계획의 재정경로가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sup>23)</sup>
- (재정조정 기간 연장) EU 집행위의 권고사항을 잘 반영한 5개 회원국(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루마니아, 스페인)은 재정조정 기간이 4년에서 7년으로 연장됨<sup>24)</sup>
- (투자·개혁) 국가별 권고사항에 부합하는 투자·개혁 실행 계획과 EU 우선순위인 녹색 및 디지털 전환, 사회 및 경제 회복력, 에너지 안보, 국방 역량 강화 등을 계획에 포함함
- (향후 이행 평가) 이번 중기 재정구조계획에 대한 이행은 2025년 봄에 European Semester의 봄 패키지 일환인 연례 진행 보고서로 처음 평가될 예정
  - 연례 진행 보고서를 통해 재정 경로의 준수 여부, 중기 재정구조계획에서 약속한 개혁·투자 이행의 진척 정도, 국가별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를 평가

19) EU 집행위원회, National medium-term fiscal-structural plans, 2024.11.26.,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economic-and-fiscal-governance/national-medium-term-fiscal-structural-plans\\_en](https://economy-finance.ec.europa.eu/economic-and-fiscal-governance/national-medium-term-fiscal-structural-plans_en), 검색일자: 2024. 11. 27.

20)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 수준이 3% 이상이거나, 채무 수준이 60%를 초과하는 국가를 대상

21) EU 회원국 27개국 중 5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독일, 리투아니아)에서 중기 재정구조계획 제출이 지연되었고, 총선 및 신정부 구성으로 인해 지연되어 해당 국가들에 대한 평가가 이번 가을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음. 헝가리의 경우 중기 재정구조계획이 2024년 11월 4일에 제출되었으며, 규정에 따라 6주 기한을 두고 평가를 진행 중

22) 크로아티아, 사이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몰타,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23) 중기 구조계획을 제출한 국가 중 신뢰할 수 있는 재정 경로를 제시한 회원국에서 제외된 국가는 네덜란드와 헝가리로 네덜란드는 중기적으로 조약 기준 값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EU 집행위는 기술적 정보를 기초로 한 순지출 경로를 이사회에 권고할 것을 제안하였고, 헝가리의 경우 중기 재정구조계획이 2024년 11월 4일에 제출되었으며, 규정에 따라 6주 기한을 두고 평가를 진행 중

24) 핀란드, 이탈리아, 스페인은 중기 재정구조계획에 여러 새로운 조치를 도입하였는데, 핀란드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포괄적 개혁, 이탈리아는 세제 단순화, 스페인은 취업 및 구직 비자 제도 개혁을 계획에 포함함. 루마니아와 프랑스는 회복·복구기금 계획에 포함된 조치들을 계획에 포함시켜 재정 조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었음

- 또한 초과적자시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회원국은 초과적자시정 조치를 보고

■ EU 집행위원회, 초과적자시정절차 시행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 발표(2024. 11. 25.)<sup>25)</sup>

<표 3> EU 회원국 중기 재정구조계획의 순지출 변화율

(단위: %)

국가	중기 재정구조계획		EU 집행위의 사전 지침
	계획 기간 평균 순지출 변화율	재정 조정 기간 종료 시점	계획 기간 평균 순지출 변화율
체코	3.1	2028년	3.5
덴마크	4.4	2028년	5.8
에스토니아	4.7	2028년	3.1
아일랜드	5.3	2028년	-
그리스	3.3	2028년	3.1
스페인	3	2031년	2.8
프랑스	1.1	2031년	1.6
이탈리아	1.5	2031년	1.5
크로아티아	4.8	2028년	4
키프로스	5.2	2028년	4.9
라트비아	4.1	2028년	3.7
룩셈부르크	4.9	2028년	-
몰타	5.9	2028년	5.9
네덜란드	4.2	2028년	3.2
폴란드	4.5	2028년	4.5
포르투갈	3.6	2028년	3.6
루마니아	4.4	2031년	5.2
슬로베니아	4.5	2028년	4.4
슬로바키아	2	2028년	2
핀란드	2.4	2031년	1.5
스웨덴	4.4	2028년	4.5

주: 1. 순지출은 순기초지출(net primary expenditure)을 의미하고, 총지출에서 이차지출, 주기적 실업수당, 일회성지출, 팬데믹 관련 긴급조치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

2. 일반정부 재정적자가 GDP 대비 3% 미만이고, GDP 대비 채무가 60% 미만인 국가들은 EU 집행위원회의 기술 궤적(reference trajectory)이 없으므로 해당 국가의 기술적 정보를 기반으로 수치

3. 평균은 2025년을 시작점으로 계산

출처: EU 집행위원회, "2025 European Semester: bringing the new economic governance framework to life," 2024. 11. 26., 부록 Table 2, p. 12,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document/download/0633b883-761d-4b68-91f9-6d8848c64f7c\\_en?filename=COM\\_2024\\_705\\_1\\_EN.pdf](https://economy-finance.ec.europa.eu/document/download/0633b883-761d-4b68-91f9-6d8848c64f7c_en?filename=COM_2024_705_1_EN.pdf), 검색일자: 2024. 11. 2

25) EU 집행위원회, "2025 European Semester: bringing the new economic governance framework to life.," 2024. 11. 26.,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economic-and-fiscal-governance/stability-and-growth-pact/corrective-arm-excessive-deficit-procedure/excessive-deficit-procedures-overview\\_en#overview-of-ongoing-and-closed-excessive-deficit-procedures](https://economy-finance.ec.europa.eu/economic-and-fiscal-governance/stability-and-growth-pact/corrective-arm-excessive-deficit-procedure/excessive-deficit-procedures-overview_en#overview-of-ongoing-and-closed-excessive-deficit-procedures), 검색일자: 2024. 11. 27.

- (권고) EU 가을패키지에서는 초과적자 상황인 회원국의 적자를 시정하기 위한 재정경로 권고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권고안의 수정 경로는 회원국의 중기 재정 구조계획이 EU집행위가 권고한 순지출 경로와 일치하고, 연간 최소 GDP 대비 0.5%의 구조적 수지 개선이 요구됨
- (대상국) 초과적자 시정 중인 국가는 2024년 7월에 새롭게 초과적자시정절차 시행 대상 국가가 된 7개국\*과 2020년부터 시정 절차 중인 루마니아를 포함한 8개국이 해당
  - \* (7개국)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헝가리,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 (평가) 벨기에와 헝가리를 제외한 6개국에서 ‘초과 적자 개선을 위한 재정 경로’는 ‘중기 재정구조계획의 순지출 경로’를 준수함
  - ◆ 벨기에와 헝가리의 경우 EU 집행위가 회원국에 제공한 4년 기준 궤적을 수정 경로로 권고(벨기에는 중기 재정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고, 헝가리의 계획은 평가 중)
- (후보국 평가) 오스트리아와 핀란드를 평가하였고, 오스트리아는 초과적자시정절차 시행 대상 여부를 검토 중이며, 핀란드는 2025년 이후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을 전망이므로 제외됨
  - 오스트리아는 2024년 GDP 대비 3% 재정적자 기준치를 초과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정책 불변 시 2025년이나 2026년에도 기준

치 초과가 예상되므로 당국과 논의 중

- 핀란드는 2024년에는 기준치를 초과하지만 2025년부터 추가적인 정책 조치 없이도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을 전망이므로 초과적자 시정절차 대상에서 제외됨



IMF

■ IMF 협의단, 한국과의 2024년 연례협의 완료 (2024. 11. 20.)<sup>26)</sup>

- IMF 협의단이 2024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24년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으며, 이에 기초하여 향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사회에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sup>27)</sup>
- (개요) 한국 경제는 글로벌 충격에 대해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다고 평가되며, 성장을 재 활성화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
- (경제) 2024년 경제성장률은 국내 수요 회복 약세로 일부 상쇄되나,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2.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수렴하고 아웃풋 갭이 축소됨에 따라 2025년 실질 GDP는 2.0% 증가할 전망

26) IMF, “IMF Staff Completes 2024 Article IV Mission to Republic of Korea,” 2024. 11. 20.,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4/11/19/pr-24427-republic-of-korea-imf-staff-completes-2024-article-iv-mission?cid=em-COM-123-49316>, 검색일자: 2024. 11. 20.

27) 연례협의(Article IV Mission)는 IMF 협정 제4조에 의거, 연 1회 IMF 협의단이 회원국과 경제 발전과 정책을 논의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사회가 이를 의결하는 양자 간 점검 활동

- (물가) 물가상승률은 2025년에 목표치인 2.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
- (위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하방리스크가 더 높은 편
- (단기 정책) 단기적으로는 통화정책 정상화, 환율의 유연성 확보, 점진적인 재정 건전화 및 선별적인 금융 정책의 조합이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회복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절해보임
  - 당국의 2025년 예산안의 건전재정기조와 지출 우선순위 조정은 적절해보이나, 장기적인 지출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건전화 조치가 필요

- (중장기 정책)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대응, 자본 배분의 효율성 제고, 생산성 제고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으며, 개혁 추진이 지경학적 분절화, 기술 변화, 고령화, 기후 변화 등의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회복력을 제고할 것



OECD

- OECD, 2024년 2분기 가계소득 증가율 발표 (2024. 11. 13.)<sup>28)</sup>
  - OECD 회원국의 2024년 2분기 1인당 실질가

<표 4> 1인당 분기 실질가계소득

(단위: %, 전분기 대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Q2	Q3	Q4	Q1	Q2	Q3	Q4	Q1	Q2
OECD	-0.6	1.0	0.5	1.1	0.5	0.0	0.5	1.3	0.4
G7	-0.8	1.0	0.3	1.1	0.3	0.1	0.4	1.2	0.6
캐나다	-1.2	-0.4	0.8	-1.2	-0.1	0.6	-0.5	0.6	-0.2
프랑스	-0.7	1.5	1.2	-1.0	-0.2	0.1	0.9	0.5	0.3
독일	-0.3	1.0	-0.8	-1.1	1.2	0.0	-0.2	1.0	-0.2
이탈리아	0.0	0.5	-3.1	1.6	0.1	0.8	-0.1	1.0	1.0
일본	-2.8	0.3	-0.1	-0.8	..	..	..	..	..
영국	-1.1	0.2	1.8	-0.6	0.9	-0.1	0.3	1.1	1.1
미국	-0.5	1.3	0.5	2.3	0.5	0.0	0.6	1.2	0.4

주: 1. 계절조정 데이터

2. 일본은 2023년 2분기부터 분기별 가구 소득 추정치가 제공되지 않음

출처: OECD, "Growth and economic well-being: 2nd quarter 2024," Table1, p3, 2024.11.13.

28) OECD, "Growth and economic well-being: Second quarter 2024," 2024. 11. 13., <https://www.oecd.org/en/data/insights/statistical-releases/2024/11/growth-and-economic-well-being-second-quarter-2024-oecd.html>, 검색일자: 2024. 11. 21.,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계소득은 전분기 대비 0.4% 증가했으며, 이는 1분기 실질가계소득 증가율인 1.3%에 비해 감소한 수치임

- 실질가계소득이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나 국가별 양상은 상이하게 나타남
  - G7 국가 중 영국(1.1%), 이탈리아(1.0%)의 실질가계소득이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캐나다(-0.2%)와 독일(-0.2%)에서는 감소를 기록함
  - 미국은 실질가계소득 증가율이 전분기 1.2%에서 0.4%로 크게 둔화되었으며, 이는 주로 근로소득과 사회복지 급여의 감소에 기인함
  - 기타 OECD 국가들 중에서는 포르투갈은 근로소득 증가\*에 기인하여 가장 큰 증가율

(2.1%)을 기록했으며, 네덜란드는 자산소득 감소와 소득세 및 재산세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실질가계소득이 가장 크게 감소(-2.3%)

\* 포르투갈의 근로소득은 2021년 4분기부터 2024년 2분기까지 약 23% 증가하여 G7 국가들을 초과함

### ■ OECD, 2024년 3분기 GDP 성장률 발표(2024. 11. 21.)<sup>29)</sup>

-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실질 GDP 성장률(잠정)은 전분기(0.4%) 대비 소폭 상승한 0.5%를 기록했으며, G7 국가의 실질 GDP 성장률은 전분기와 동일하게 0.5%를 유지
  - 미국의 성장률은 3분기에 0.7%로 안정세를

<표 5> 분기 실질 GDP 성장률

(단위: %, 전분기 대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Q3	Q4	Q1	Q2	Q3	Q4	Q1	Q2	Q3
OECD	0.5	0.3	0.5	0.5	0.4	0.3	0.4	0.4	0.5
G20	1.5	0.5	1.0	0.7	0.8	0.7	0.8	0.6	..
유럽연합 27개국	0.5	-0.2	0.1	0.0	0.2	0.1	0.3	0.3	0.3
유로지역 20개국	0.6	-0.1	0.0	0.1	0.0	0.1	0.3	0.2	0.4
G7	0.5	0.4	0.6	0.4	0.5	0.4	0.3	0.5	0.5
캐나다	0.5	-0.2	0.8	0.2	-0.1	0.0	0.4	0.5	0.2
프랑스	0.5	0.1	0.1	0.7	0.1	0.5	0.2	0.2	0.4
독일	0.6	-0.5	0.1	-0.2	0.2	-0.4	0.2	-0.3	0.2
이탈리아	0.5	-0.2	0.4	-0.2	0.2	0.0	0.3	0.2	0.0
일본	-0.3	0.4	1.2	0.6	-1.0	0.1	-0.6	0.5	0.2
영국	0.1	0.3	0.1	0.0	-0.1	-0.3	0.7	0.5	0.1
미국	0.7	0.8	0.7	0.6	1.1	0.8	0.4	0.7	0.7

주: 계절조정 데이터

출처: OECD, "OECD GDP growth remains stable in the third quarter of 2024," Table1, p2, 2024. 11. 21.

29) OECD, "OECD GDP growth," 2024. 11. 21., <https://www.oecd.org/en/data/insights/statistical-releases/2024/11/gdp-growth-third-quarter-2024-oecd.html>, 검색일자: 2024. 11. 25.,

- 유지한 반면, 캐나다와 일본(양국 모두 2분기 0.5%→3분기 0.2%), 영국(0.5%→0.1%), 이탈리아(0.2%→0.0%)의 성장률은 둔화됨
- 일본의 경기침체는 주로 투자와 서비스 수출(주로 관광)의 위축이 반영됨
  - 이탈리아의 경우 주로 순수출 하락과 농업, 임업, 어업 및 산업에서의 부가가치 감소가 반영되었고, 영국은 재고 감소가 반영되어 성장이 둔화됨
  - 프랑스는 파리 올림픽 및 패럴림픽으로 인해 촉진된 개인소비 증가에 따라 3분기 성장이 가속화됨(0.2%→0.4%)
  - 독일은 정부와 민간소비가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성장 회복세(-0.3%→0.2%)를 보임
  - OECD 회원국의 연간 GDP성장률(전년 동기 대비)은 1.7%이며, G7 국가 중 미국이 지난 4개 분기 동안 가장 높은 성장률(2.7%)을 기록한 반면 독일이 가장 큰 하락(-0.2%)을 기록함



## 미국

### [예산·결산 등]

- CRS(의회조사처), 2025회계연도 예산안 의회 진행상황 업데이트(2024. 11. 15.)<sup>30)</sup>

- (배경) 2025회계연도의 개시일(2024. 10. 1.)까지 12개 분야의 정규 세출예산에 대한 의회의 합의가 이루어지 않아, 현재 2024년 12월 20일까지 유효한 임시세출예산\*으로 정부 운영 중
  - \* 현재 임시세출예산(P.L. 118-83)은 9월 25일에 의회에서 최종 확정된 후, 9월 26일에 대통령 서명으로 입법 발효
- (예산안 최근 현황) 의회 하원은 5개 분야(국방, 국토안보, 내무·환경, 군사시설·재향군인, 국무·외교) 분야에 대한 세출예산을 심의 완료하였으며, 입법 분야(부결)를 포함한 나머지 7개 분야의 법안은 계류 중
  - 상원의 경우, 모든 분야의 법안 의결 완료된 분야 없음
- (향후 전망) 2025년부터 임기 시작인 119대(2025~2026년) 의회의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표 6>)이 되면서, 차기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예산을 편성하고자 의회의 새로운 회기 시작 전까지 재차 임시 세출예산으로 꾸러질 가능성 존재
  - 바이든 대통령도 평화로운 정권 이양(smooth transition)을 선언한 상황에서 임기의 마지막 회계연도에 정부 셋다운 발생은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높음
  - 다만, 의회의 합의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셋다운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새로 구성되는 의회 회기가 2025년 1월 3일에 개시되기에 정부 셋다운 사태 장기화는 희박해 보임

30) CRS, "Appropriations Status Table: FY2025," 2024.11.15., <https://crsreports.congress.gov/AppropriationsStatusTable/Index/AppropriationsStatusTable?id=2025>, 검색일자: 2023.10.25.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표 6> 119대 미 의회 확보 의석 구성(2024.12.5. 기준)

구분	공화당	민주당
하원	220	215
상원	53	47

출처: NBC News, Decision 2024,<sup>31)</sup> 2024.12.

#### ■ 바이든 행정부, 의회에 재난 구호를 위한 추가 긴급 자금 지원 요청(2024. 11. 18.)<sup>32)</sup>

- (배경) 바이든 대통령은 허리케인 헬린(Helene) 및 밀턴(Milton)<sup>33)</sup> 등 2023년과 2024년에 발생한 주요 자연재해 관련 대응 및 피해 복구를 위해 하원 의장에 긴급 자금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신 - 행정부의 주요 부처들은<sup>34)</sup> 의회가 재난 구호를 위한 자금 지원 입법<sup>35)</sup>을 2022년 2월<sup>36)</sup>을 마지막으로 통과시킨 바가 없음을 강조하며 신속한 자금 지원을 촉구
- (주요 내용 및 규모)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재난 구호 기금 자금 보충에 400억달러, 중소기업청의 재난 대출 프로그램<sup>37)</sup> 자금 보충에 20억달러 지원 등을 포함한 총 986억달러 규모의 재난 지원 자금 편성

- 2024년 연초 연방재난관리청은 자금이 고갈되었으나 2025회계연도<sup>38)</sup> 예산으로 200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할당받았고, 이에 더해 이번 서한에서 긴급 지원으로 400억달러 규모의 추가 자금 조달을 요청한 상태
- 중소기업청(SBA) 재난 대출 프로그램은 자금이 소진됨에 따라 재해 대출 프로그램 신청 처리가 1만건 이상 일시 중단되어 추가 자금으로 20억달러 조달 요청

## [기타]

#### ■ 트럼프 당선인, 2024 미국 대선 승리 후 주요 정책 언급(2024. 11.)

- (개요) 지난 11월 5일에 진행된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인단 총 538명 중 과반(270명) 이상인 312명을 확보하면서 47대 대통령 당선인으로 선출
- (경합주 승리) 트럼프 당선인은 접전지역(battleground states)으로 불렸던 경합주(swing states)\* 7곳에서 모두 승리<sup>39)</sup>

31) CNBC News, "Decision 2024," 2024. 12. <https://www.nbcnews.com/politics/2024-presidential-election>, 검색일자: 2024. 12. 5.

32) 백악관, "Letter to the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Requesting for Additional Funding for Disaster Reliefs," 2024. 11. 18.,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4/11/18/letter-to-the-speaker-of-the-house-of-representatives-requesting-for-additional-funding-for-disaster-relief/>, 검색일자: 2024. 11. 25.

33) 허리케인 헬린의 피해는 재산상 80억달러에서 140억달러 사이 (Moody's RMS 기준) 및 인명상 232명 사망(24. 11. 9. 기준)으로 추정되며, 허리케인 밀턴의 경우 재산상 220억달러에서 360억달러 및 인명상 23명 사망(24. 10. 9. 기준)으로 추정

34) OMB, "Interested Parties Memo: Congress Must Move Swiftly to Pass Critical Disaster Relief," 2024. 11. 18.. <https://www.whitehouse.gov/omb/briefing-room/2024/11/18/interested-parties-memo-congress-must-move-swiftly-to-pass-critical-disaster-relief/>. 검색일자: 2024. 11. 25.

35) 재난 지원 자금 관련한 서신 발신 이전의 최신 입법 추진 시도로 2024년 11월 둘째주 톰 톨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의 중소기업청 재난 대출 프로그램 자금 보충 추진안이 존재

36) 2023년 세출예산의 일부로 편성

37) 연방재난관리청 보험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손실과 재해 발생으로 인해 납부가 어려운 사업 운용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가계와 사업체를 위해 운용되는 미국 중소기업청의 저리(low-interest) 대출 프로그램

38) 회계연도 개시(2024년 10월 1일) 10일여 만에 허리케인 복구로 90억달러 소진

39) CNBC News, "Decision 2024," 2024. 11. <https://www.nbcnews.com/politics/2024-elections/president-results>, 검색일자: 2024. 11. 22.

&lt;표 7&gt; 백악관이 의회에 요청한 자금 지원 주요 항목

(단위: 십억달러)

구분	규모
연방재난관리청의 재난 구호 기금 자금 보충	40
농무부의 농작물 및 가축 손실 지원 등	24
주택도시개발부의 재해 복구 관련 커뮤니티 개발 일괄 보조금 지원	12
교통부의 피해 도로 및 교량 복구 지원	8
환경보호청의 재해 예방을 위한 수도 시스템 개선 등	4
보건복지부의 허리케인 관련 의료 지원 등	3
상무부의 자연재해 피해지역에 대한 경제 개발 보조금 지원 등	2
중소기업청 재해 대출 프로그램 자금 보충	2
기타	4
총계	99

출처: 백악관, "Letter regarding critical disaster funding needs," 2024. 11. 18.을 바탕으로 작성

\* 노스캐롤라이나(NC)·네바다(NV)·미시간(MI)·애리조나(AZ)·위스콘신(WI)·조지아(GA)·펜실베이니아(PA)

- (공식 당선 확정 일정) 선거 결과 발표 이후, 2024년 12월 17일에 선거인단이 모여 공식적으로 차기 대통령을 선출<sup>40)</sup>
- (임기 개시) 최종 선출된 대통령 당선인은 수정헌법에 의거하여 2025년 1월 20일 정오부터 공식 임기 시작
- (주요 언급 정책) 불법 이민자 추방, 정부 효율, 관세 등 재정과 연관성이 높은 주요 정책에 대해 거론<sup>41)</sup>
  - (불법 이민자 추방) 집권 2기 최우선 정책으로 불법 이민자 추방 검토 언급<sup>42)</sup>
    - 트럼프 당선인은 유세기간 연설에서 역

- 대 최고 수준의 이민자 추방(largest mass deportation)을 지속 언급하였으며, 공화당의 정강정책에서도 불법 이민자 추방을 언급
- 한편, 트럼프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인 국경 강화 및 미승인 이민자 추방 정책으로 향후 10년 동안 최대 1조달러(중위값 기준은 3,500억달러) 비용 소요가 전망된 바 있음
- (정부 효율) 트럼프 당선인은 정부 효율(government efficiency)\* 구상의 일환으로 “낭비성 지출 감축, 과도한(excessive) 규제 축소, 관료주의 해체(dismantle) 및 정부 기관 구조조정(restructure)” 등을 거론<sup>43)</sup>

40)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재정지출분석센터), 「2024 미국 대선 후보 공약비용 분석(트럼프\_해리스)」, 2024. 10., <https://www.kipf.re.kr/cfa/Publication/Paper/kiPublish/CA1/Center/view.do?serialNo=527326>, 검색일자: 2024. 11. 22.

41) 본문에 언급되는 공약 비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재정지출분석센터), 「2024 미국 대선 후보 공약비용 분석(트럼프\_해리스)」, 2024. 10., <https://www.kipf.re.kr/cfa/Publication/Paper/kiPublish/CA1/Center/view.do?serialNo=527326>, 검색일자: 2024. 11. 22.”을 참고

42) NBC News, “Trump says there's 'no price tag' for his mass deportation plan,” 2024. 11. 8., <https://www.nbcnews.com/politics/2024-election/trump-says-no-price-tag-mass-deportation-plan-rcna179178>, 검색일자: 2024. 11. 27.

43) 참고 링크: <https://truthsocial.com/@realDonaldTrump/posts/113472884874740859>, 검색일자: 2024. 11. 27.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트럼프 당선인은 정부 효율 업무<sup>44)</sup>를 관장하는 공동 수장으로 다수<sup>45)</sup>의 기술 기업 CEO인 일론 머스크와 기업인 출신인 비벡 라마스와미<sup>46)</sup> 내정<sup>47)</sup>

• 트럼프 당선인은 정부효율 업무는 부처 신설이 아닌 자문 역할(advisory capacity)이 될 것으로 언급<sup>48)</sup>하였으며, 공동 수장으로 지명된 머스크는 연방예산에서 2조 달러를 절감할 것으로 발언<sup>49)</sup> -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설명은 부재

• 한편, 트럼프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인 낭비(waste), 사기(fraud), 남용(Abuse) 감축 정책은 향후 10년 동안 최대 2,500억달러(중위값 기준은 1천억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 바 있음

- (관세)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의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 부과, 중국을 대상으로는 추과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언급<sup>50)</sup>

\*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보편적 기준 관세를 부과,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상호 관세를 적용,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바 있음<sup>51)</sup>

• 해당 관세 부과는 트럼프 당선인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Fentanyl)의 유입의 원인을 중국으로 지목하면서 해당 물질이 멕시코 등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과 관련됨

• (향후 전망) 2025년에 새로 구성될 의회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을 확보한 상황 이기에 해당 정책의 집행은 트럼프 정부 초기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0.25%p 인하 (2024. 11. 7.)<sup>52)</sup>

•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11월 회의에서 기준금리(federal funds rate)를 4.75~5.00%에서 4.50~4.75%로 인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경제 상황 평가 및 정책 결정을 보고

- (경제성장) 경제활동이 강세를 보이며 계속하여 확장됨

- (물가) 연준의 물가 목표인 2%를 향한 진전

44)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의 약어인 DOGE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음

45) Tesla, X(구 Twitter), Space X 등

46) 비벡 라마스와미(Vivek Ganapathy Ramaswamy)는 2024 미국 대선 공화당 경선에 출마하였다가 중도 사퇴한 후 트럼프를 지지

47) USA Today, "Trump taps Elon Musk, Vivek Ramaswamy to lead new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2024. 11. 12., <https://www.usatoday.com/story/news/politics/elections/2024/11/12/trump-hires-elon-musk/76199958007/>

48)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캠프는 낭비를 식별하기 위한 정부 효율성 위원회(Government Efficiency Commission) 설립을 제안한 바 있음

49) 단,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설명은 없었으며, 머스크의 이 발언에 대해 초당적 재정기구의 수장인 맥기니아는 현 정부에서 요청한 2025회계연도 예산안 규모가 7조달러 수준이기에 10년 동안 절감되는 수치가 현실적일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피력함(National Public Radio, "President-elect Trump promises a massive overhaul of the federal government," 2024. 11. 19., <https://www.npr.org/2024/11/19/nx-s1-5195379/president-elect-trump-promises-a-massive-overhaul-of-the-federal-government>, 검색일자: 2024. 11. 22.)

50) 참고 링크 1: <https://truthsocial.com/@realDonaldTrump/posts/113546215051155542> / 참고 링크 2: <https://truthsocial.com/@realDonaldTrump/posts/113546215408213585>

51)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재정지출분석센터), 「2024 미국 대선 후보 공약비용 분석(트럼프\_해리스)」, 2024. 10., <https://www.kipf.re.kr/cfa/Publication/Paper/kiPublish/CA1/Center/view.do?serialNo=527326>, 검색일자: 2024. 11. 26.

52)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Press Release," 2024. 11. 7.,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monetary20241107a1.pdf>, 검색일자: 2024. 11. 11.

&lt;표 8&gt; 미국 2024년 3분기 주요 경제 지표 I - 물가, 노동시장

(단위: %, 천명)

구분		2024년 7월	2024년 8월	2024년 9월
물가 <sup>1)</sup>	PCE 물가 상승률	2.5	2.3	2.1
	재화	-0.2	-0.9	-1.2
	서비스	3.7	3.8	3.7
	PCE 물가 상승률, 식품 및 에너지 제외	2.7	2.7	2.7
노동 시장 <sup>2)</sup>	생산가능인구	268,644	268,856	269,080
	경제활동인구	168,429	168,549	168,699
	경제활동참가율	62.7	62.7	62.7
	취업자 수	161,266	161,434	161,864
	인구 대비 취업률	60.0	60.0	60.2
	실업자 수	7,163	7,115	6,834
	실업률	4.3	4.2	4.1

주: 1. 물가상승률은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개인소비지출) 지표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을 의미

1) 해당 지표의 9월 수치는 잠정치(preliminary)임

2) 해당 지표는 계절 조정된 수치임

출처: 1.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Personal Income and Outlays, September 2024," Table 7, 2024. 10. 31.<sup>53)</sup>

2.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 "Employment Situation Summary," Table A-1, 2024. 11. 1.<sup>54)</sup>

&lt;표 9&gt; 미국 2024년 3분기 주요 경제 지표 II - 경제성장률

(단위: %)

구분	연간 성장률		분기별 성장률(전기 대비 연율)						
			2023년				2024년		
	2022년	2023년	Q1	Q2	Q3	Q4	Q1	Q2	Q3 <sup>1)</sup>
실질 GDP 성장률	2.5	2.9	2.8	2.4	4.4	3.2	1.6	3.0	2.8
명목 GDP 성장률	9.8	6.6	6.6	4.3	7.7	4.8	4.7	5.6	4.7

주: 1. 분기별 성장률은 계절조정된 전기 대비 연율, 연간 성장률은 전년 대비 성장률을 의미

1) 해당 수치는 속보치를 사용

출처: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Gross Domestic Product, Third Quarter and Year 2024(Advance Estimate),"<sup>55)</sup> Table 1, 2024. 10. 30.

53) 링크: <https://www.bea.gov/sites/default/files/2024-10/pi0924.pdf>, 검색일자: 2024. 11. 11.

54) 링크: [https://www.bls.gov/news.release/archives/empsit\\_11012024.htm](https://www.bls.gov/news.release/archives/empsit_11012024.htm), 검색일자: 2024. 11. 11.

55) 링크: <https://www.bea.gov/sites/default/files/2024-10/gdp3q24-adv.pdf>, 검색일자: 2024. 11. 11.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이 있었지만, 물가 상승세는 여전히 다소 높은 상태를 유지

- (노동시장) 노동시장은 올해 초부터 전반적으로 완화되었으며, 실업률은 상승하였으나 낮은 상태를 유지

- (정책 결정) 연준의 양대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결정

● **과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sup>56)</sup> 재정정책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미국의 재정정책 수준에 대해 평가**

- (재정정책 영향) 대선 결과 등 재정정책의 변화를 미리 추측하여 단기적으로 통화정책에 반영하지는 않을 것이나, 연준 목표 수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정정책이 제정된다면 연준의 경제 모형에 반영될 것임

- (재정정책 평가) 연방정부의 재정 운용이 지속 불가능한 경로에 있음을 경고하며 완전 고용 상태에도 불구하고 적자 규모는 상당함을 지적, 또한 궁극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부채 및 재정적자는 미국 경제에 위협이 되므로 시정이 필요함을 강조

■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 발표 및 한국 관찰대상국 재지정(2024. 11. 14.)<sup>57)</sup>**

● (개요) 미국 재무부는 반기별로 미국의 주요

무역 교역국의 국제 경제 및 환율 정책 동향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보고

● (주요 내용)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약 7년간 지정되었던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2023년 11월에 제외되었으나,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GDP 대비 3% 이상을 기록하여 재지정

- 한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 재지정 사유는 “상당한 대미무역 흑자 규모 및 주목할 만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해당

● (흑자규모)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에너지 물가의 완화세와 주요 기술 관련 수출 반등 등 무역 조건의 회복에 기인하여 약 500억달러에 상응

● (경상수지)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주요 기술 관련 대외 수요 증가로 GDP 대비 3.7%에 상응



일본

■ **일본은행, 경제·물가 정세 전망 발표(2024. 10. 31.)<sup>58)</sup>**

● (경제) 해외 경제의 완만한 성장, 완화적인 금융환경 등에 기인하여 소득에서 지출로의 순환이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잠재성장률<sup>59)</sup>을

56) 미국 연방준비제도, “Transcript of Chair Powell’s Press Conference,” 2024. 11. 7., <https://www.federalreserve.gov/mediacenter/files/FOMCpresconf20241107.pdf>, 검색일자: 2024. 11. 11.

57) 미국 재무부, “Treasury Releases Report on Macroeconomic and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2024.11.14.,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2714>, 검색일자: 2024. 11. 21.

58) 일본은행, 「經濟・物価情勢の展望(2024年 10月)」, 2024. 10. 31., <https://www.boj.or.jp/mopo/outlook/gor2410a.pdf>, 검색일자: 2024. 11. 4.

59) 일본은행에서 추계한 2024년 2분기 전년 대비 잠재성장률은 0.64%. 출처: 일본은행, 「需給ギャップと潜在成長率」, 2024. 7. 3., [https://www.boj.or.jp/research/research\\_data/gap/gap.pdf](https://www.boj.or.jp/research/research_data/gap/gap.pdf), 검색일자: 2024. 11. 4.

상회하는 성장이 계속될 전망

- 실질 GDP 성장률은 2024회계연도에는 0.6%를 나타낼 것이며, 2025~2026회계연도에는 1.1%, 1.0%를 나타낼 전망

- (물가)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 상승률은 2024회계연도에는 2.5%를 나타낼 것이며, 2025~2026회계연도에는 ‘물가안정 목표’인 2%에 근접한 1.9%를 나타낼 전망
- (위험) 해외 경제·물가, 원자재 가격, 기업의 가격·임금 설정 변화 등으로 인한 높은 불확실성이 금융·외환시장과 경제·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할 필요
- (2024년 7월 전망과 비교) 경제성장률은 전반적으로 지난 전망과 큰 차이가 없으며, 2025회계연도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원유 등 자원 가격 하락에 기인하여 소폭 하향 조정

#### ■ 일본 내각부, 2024년 3분기 GDP 1차 속보치 발표(2024. 11. 15.)<sup>60)</sup>

- 전분기 대비 2024년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0.2%(연율 0.9%)로 2분기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명목 GDP 성장률은 0.5%(연율 2.1%)
- (내외수요 기여도) 실질 GDP 성장률에 대한 국내수요(내수) 기여도는 0.6%p로 2분기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재화·서비스 순수출(외수) 기여도는 -0.4%p로 3분기 연속 감

#### <표 10> 2024~2026회계연도 정책위원 경제·물가 전망

(단위: 전년 대비, %)

구분	실질GDP	소비자물가지수 (신선식품 제외)
<b>2024회계연도</b>	0.5~0.7 <0.6>	2.4~2.5 <2.5>
2024년 7월 전망	0.5~0.7 <0.6>	2.5~2.6 <2.5>
<b>2025회계연도</b>	1.0~1.2 <1.1>	1.7~2.1 <1.9>
2024년 7월 전망	0.9~1.1 <1.0>	2.0~2.3 <2.1>
<b>2026회계연도</b>	0.8~1.1 <1.0>	1.8~2.0 <1.9>
2024년 7월 전망	0.8~1.0 <1.0>	1.8~2.0 <1.9>

주: 1.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이며, 일본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4월~다음 연도 3월

2. 각 정책위원이 가장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전망의 수치에 대해 최대치와 최소치 1개를 제외하고 폭으로 나타낸 것이며, 예측 오차 등을 감안한 전망의 상하·하한을 의미하지 않음

3. 각 정책위원은 이미 결정된 정책을 전제로 또는 장래 정책 운영에 대해서는 시장의 호재와 악재를 반영하여 상기 전망을 작성하고 있음

4. < > 안은 정책위원 전망치의 중간값

출처: 일본은행, 「經濟·物価情勢の展望(2024年 10月)」, p. 9, 일부발췌, 2024. 10. 31.

#### 소세를 나타냄

- (민간수요) 민간수요는 전분기 대비 0.7% 증가하여 2분기 연속 증가세를 나타냄
  - 전분기 대비 민간최종소비지출 증가율은 자동차, 휴대전화, 식료품 등의 증가에 기인하여 0.9%를 나타냈으며, 민간주택과 민간기업설비 증가율은 각각 -0.1%, -0.2%를 나타냄
  - 민간재고변동의 GDP 기여도는 0.1%p로,

60) 일본 내각부, 「2024年7~9月期四半期別GDP速報(1次速報値)」, 2024. 11. 15., [https://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sokuhou/files/2024/qe243/pdf/qepoint2431.pdf](https://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sokuhou/files/2024/qe243/pdf/qepoint2431.pdf), 검색일자: 2024. 11. 18.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2024년 2분기부터 2024년 3분기까지 실질 재고 잔고의 증가폭이 확대됨에 따라 GDP 성장률에 긍정적으로 기여

- (공적수요) 공적수요는 전분기 대비 0.3% 증가하여 3분기 연속 증가세를 나타냄
  - 전분기 대비 정부최종소비지출은 의료비 등의 증가에 기인하여 0.5% 증가하였으며, 전분기 대비 공적고정자본형성은 -0.9%로 2분기 만에 감소세로 전환
  - 공적재고변동의 GDP 기여도는 0.0%p
- (수출입) 재화·서비스 수출은 금속 제품 등의 수출 증가에 기인하여 전분기 대비 0.4% 증가하였으며, 재화·서비스 수입은 의약품, 휴대전화 등 수입 증가에 기인하여 전분기 대비 2.1% 증가

■ 일본 내각부, 「국민의 안심·안전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종합 경제대책」 발표(2024. 11. 22.)<sup>61)</sup>

- (배경) 일본은 현재 명목 GDP 600조엔,<sup>62)</sup> 33년 만의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sup>63)</sup> 등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들이 이를 임금·소득 증가라는 형태로 실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진전시킬 필요가 있음

- (목표) 임금인상이 물가 상승을 안정적으로 상회하는 경제의 실현, '임금인상과 투자가 주도하는 성장형 경제'로의 확실한 이행을 통해, 나라와 국민, 지방, 청년·여성의 기회를 지키고 모든 국민이 안심·안전한 미래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주요 내용) 임금·소득 증가를 위한 경제 성장, 고물가 대응, 안심·안전 확보 관련 주요 과제에 대해 신속하게 대책을 강구
  - (일본경제·지방경제의 성장) 임금인상 환경 정비, 지방창생,<sup>64)</sup> 성장력 강화 등 모든 세대의 현재·미래의 임금 및 소득을 늘리는 정책
  - (고물가 대책) 고물가의 영향을 받는 저소득층 지원, 지역 실정에 따른 고물가 대책 추진, 고물가의 영향을 받는 업종 지원,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한 대응 등 모든 국민이 성장형 경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정책
  - (국민 안심·안전 확보) 자연재해로부터의 복구·부흥, 방재·감재 및 국토 강인화, 외교·안보 환경 변화 대응, 도시지역 등 방법 대책, 어린이·육아 지원, 여성·고령자 활약 및 참여 추진 등 성장형 경제로의 기초를 쌓는 정책
- (규모) 이번 경제대책으로 인한 총재정지출은

61) 일본 내각부, 「国民の安心・安全と持続的な成長に向けた総合経済対策～全ての世代の現在・将来の賃金・所得を増やす～」, 2024. 11. 22. [https://www5.cao.go.jp/keizai1/keizaitaisaku/2024/1122\\_taisaku.pdf](https://www5.cao.go.jp/keizai1/keizaitaisaku/2024/1122_taisaku.pdf), 검색일자: 2024. 11. 25.

62) 일본의 2024년 3분기 명목 GDP(계절조정, 연율 환산)는 610.88조엔. 출처: 일본 내각부, 「四半期別GDP速報 時系列表 2024年 7～9月期1次速報値」, 2024. 11. 15., [https://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sokuhou/files/2024/qe243/pdf/jikei\\_1.pdf](https://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sokuhou/files/2024/qe243/pdf/jikei_1.pdf), 검색일자: 2024. 11. 18.

63) 2024년 8월 2일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민간 주요 기업 총계 임금인상 요구·타결 상황에 따르면 임금인상률이 5.33%로 1991년 이후 33년 만에 5%를 상회함. 출처: 후생노동성, 「令和 6年 民間主要企業春季賃上げ要求・妥結状況を公表します」, 2024. 8. 22., [https://www.mhlw.go.jp/stf/newpage\\_41871.html](https://www.mhlw.go.jp/stf/newpage_41871.html), 검색일자: 2024. 11. 26.

64) 지방창생(地方創生)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인구 감소 문제와 도쿄권의 과도한 인구 집중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모든 지역에서 살기 좋은 환경을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활력 있는 일본 사회를 유지해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출처: 일본 내각관방·내각부 지방창생 홈페이지, <https://www.chisou.go.jp/sousei/index.html>, 검색일자: 2024. 11. 26.

21.9조엔으로, 이 중 13.9조엔을 2024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조달할 예정

- 이번 경제대책으로 인한 총재정지출은 21.9조엔, 총사업 규모는 39.0조엔으로 예상되며, 재정지출 21.9조엔은 일반회계 13.9조엔,

특별회계 0.9조엔, 재정투융자 1.1조엔으로 조달할 예정

● (경제효과) 이번 경제대책을 통해 실질 GDP 약 21조엔(연성장률 환산 약 1.2%, 향후 3년간 효과가 발현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단순 평균)

<표 11> 일본의 분기별 GDP 성장률(계절조정, 전분기 대비) 추이

(단위: %, %p)

구분	2023		2024			2024 <sup>1)</sup>
	Q3	Q4	Q1	Q2	Q3	
실질 GDP	-1.0	0.1	-0.6	0.5	0.2	0.9
국내수요	-0.8	0.0	-0.2	0.6	0.6	2.5
민간수요	-1.1	0.2	-0.3	0.6	0.7	3.0
민간최종소비지출	-0.4	-0.3	-0.6	0.7	0.9	3.6
민간주택	-0.9	-1.0	-2.9	1.4	-0.1	-0.4
민간기업설비	-0.1	2.1	-0.4	0.9	-0.2	-0.7
민간재고변동	(-0.6)	(-0.0)	(0.3)	(-0.1)	(0.1)	-
공적수요	0.0	-0.4	0.1	0.8	0.3	1.1
정부최종소비지출	0.5	-0.1	0.3	0.1	0.5	2.0
공적고정자본형성	-2.0	-1.7	-1.1	4.1	-0.9	-3.6
공적재고변동	(-0.0)	(0.0)	(0.0)	(-0.0)	(0.0)	-
재화·서비스 순수출 <sup>2)</sup>	(-0.2)	(0.1)	(-0.4)	(-0.1)	(-0.4)	-
재화·서비스 수출	0.2	2.9	-4.5	2.6	0.4	1.5
재화·서비스 수입	0.9	2.4	-2.4	2.9	2.1	8.5
명목 GDP	-0.1	0.8	-0.3	1.7	0.5	2.1
GDP 디플레이터	0.9	0.7	0.4	1.2	0.3	-

주: 1) 연율 환산 수치

2) 재화·서비스 순수출=재화·서비스 수출-재화·서비스 수입

1. () 안의 수치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냄

출처: 일본 내각부, 「2024년7~9月期四半期別GDP速報(1次速報值)」, p. 11 표 2-1 및 p. 13 표 2-3 재구성

<표 12> 일본의 「국민의 안심·안전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종합 경제대책」 재정지출 및 사업규모 내역

(단위: 조엔)

구분	재정지출	사업규모
일본 경제·지방 경제 성장	10.4	19.1
고물가 대책	4.6	12.7
국민의 안심·안전 확보	6.9	7.2
합계	21.9	39.0

출처: 일본 내각부, 「国民の安心・安全と持続的な成長に向けた総合経済対策～全ての世代の現在・将来の賃金・所得を増やす～」, 2024.11.22, p. 61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규모의 경기부양 효과가 전망되며, 직접적인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는 고물가 대책(3.8조엔 규모)으로 인해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약 0.3%p 완화될 전망\*

\* 연료유, 전기·가스 요금 급변 완화 대책에 의한 전년 동월 대비 2025년 2~4월 소비자물가(종합)의 완화 효과



### 독일

■ 독일 올라프 솔츠 총리, 조기 총선에 대한 정부 성명 발표(2024. 11. 13.)<sup>65)</sup>

- 독일의 총리 올라프 솔츠는 정부성명을 통해 12월 16일 총리에 대한 연방의회 신임 투표를 요청할 계획이며, 2025년 2월 조기 총선이 이 어질 예정이라고 밝힘

- 솔츠 총리는 신임 투표를 앞두고 네 가지 주요 정책 추진 과제를 발표

- (물가연동제(Die kalte Progression)<sup>66)</sup> 조정) 2025년부터 근로자들이 물가 상승률이나 소득 증가에도 더 많은 순소득(Netto)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세금 체계를 조정
- (독일 경제성장 촉진) 성장 이니셔티브(Wachstumsinitiative)<sup>67)</sup>와 관련된 법안이나 정책을 조속히 통과시켜 경제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
- (아동수당 및 아동 지원금 인상) 2025년 1월부터 자녀를 둔 가정이 받는 아동수당과 저소득층을 위한 아동 추가 지원금을 인상할 계획
- (헌법재판소 강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권위를 더욱 확고히 하여 외부의 정치

<표 13> 독일 고용 증가율

(단위: 만명,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취업자 수	4,551	4,564	4,572	4,583	4,594	4,601	4,603	4,607	4,612	4,615	4,610
직전 분기 대비	0.4	0.63	2.2	0.2	0.2	0.2	0.0	0.1	0.1	0.1	-0.1
전년 동기 대비	1.5	1.6	13.	1.1	0.9	0.8	0.7	0.5	0.4	0.3	0.2

주: 계절조정값

출처: 독일 연방 통계청, 「Erwerbstätige: Deutschland, Quartale, Inlands-/Inländerkonzept, Original- und bereinigte Daten,」 <https://www-genesis.destatis.de/datenbank/online/statistic/13321/table/13321-0002>, 검색일자: 2024. 11. 18.

65) 독일 연방 정부, “Einig handeln, wo wir einig sind,” 2024. 11. 13.,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regierungserklaerung-november-2024-2319784>, 검색일자: 2024. 11. 27. 독일 연방 정부, “Kanzler Scholz zur Entlassung des Finanzministers Christian Lindner,” 2024. 11. 6.,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bk-statement-zur-entlassung-des-finanzministers-2319062>, 검색일자: 2024. 11. 27.

66)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소득은 증가하지 않거나 줄어든 있음에도 명목상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율 구간이 높아지는 현상

67) 독일의 새로운 경제적 역동성을 제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49개 조치로 세금조정, 근로 인센티브, 전기요금 인하 등이 포함

- 적 압력이나 도전으로부터 보호하고 강화
- 독일 연방 통계청, 2024년 3분기 독일 고용률 발표(2024. 11. 15.)<sup>68)</sup>
    - 독일의 2024년 3분기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약 4,610만명으로 전분기 대비 0.1% (4만 5천명) 감소
      - 계절조정 취업자 수 감소세는 2021년 1분기 이후 처음 발생하였으며, 2024년 1분기와 2분기에는 각각 4만 6천명, 2만 9천명이 증가
      - 전년 동기 대비 2024년 3분기 취업자 수가 증가한 분야는 서비스업이었으며, 제조업에서의 하락세는 지속
        - ◆ 서비스업은 전년 동기 대비 17만명(0.5%) 증가하였으며,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업은 전년 동기 대비 7만 3천명(-0.9%) 감소
      - 2024년 3분기 유럽연합(EU) 27개국과 유로 지역의 고용률은 각각 0.8%, 1.0% 증가

- 독일 연방 통계청, 2024년 3분기 독일 GDP 성장률 발표(2024. 11. 22.)<sup>69)</sup>
  - (전분기 대비) 독일의 2024년 3분기 GDP(가격, 계절변동 및 달력효과 조정)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1% 증가
    - 전분기 대비 정부소비지출은 0.4%, 민간소비는 0.3% 증가
    - 전분기 대비 총고정자본형성은 장비(기계, 장치 및 차량)와 건설에서 각각 0.2%, 0.3% 감소
  - (전년 동기 대비) 독일의 2024년 3분기 GDP(가격, 계절변동 및 달력효과 조정)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
    - 전년 동기 대비 민간소비는 0.1% 증가에 그친 반면, 정부소비는 2.5% 증가
      - ◆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보험에서 제공하는 현금지원 증가에 기인
    - 장비투자 -5.7%, 건물투자 -2.6% 등 전년 동기 대비 투자가 크게 감소

&lt;표 14&gt; 독일 GDP 성장률

(단위: %)

구분	2023년				2024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직전 분기 대비	0.1	-0.2	0.2	-0.4	0.2	-0.3	0.1
전년 동기 대비	0.6	-0.4	-0.7	-0.4	-0.8	0.1	0.1

주: 1. 직전 분기 대비 성장률은 가격 조정, 계절 및 달력효과 조정 값

2.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가격 조정 값

출처: 독일 연방 통계청, "Bruttoinlandsprodukt: Ausführliche Ergebnisse zur Wirtschaftsleistung im 3. Quartal 2024," 2024. 11. 22.,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4/11/PD24\\_438\\_811.html](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4/11/PD24_438_811.html), 검색일자: 2024. 11. 25.

68) 독일 연방 통계청, "Schwächere Entwicklung der Erwerbstätigkeit im 3. Quartal 2024 als in den Vorquartalen," 2024. 11. 15.,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4/11/PD24\\_427\\_13321](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4/11/PD24_427_13321), 검색일자: 2024. 11. 18.

69) 독일 연방 통계청, "Bruttoinlandsprodukt: Ausführliche Ergebnisse zur Wirtschaftsleistung im 3. Quartal 2024," 2024. 11. 22.,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4/11/PD24\\_438\\_811.html](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4/11/PD24_438_811.html), 검색일자: 2024. 11. 25.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0.3% 감소, 수입은 1.2% 증가
  - 교통 서비스 및 지적 재산권 사용에 대한 수수료 증가에 따라 서비스 수입이 증가
- 2024년 3분기 EU의 GDP 성장률은 0.3%이며, 독일의 성장률은 0.1%로 EU전체 및 주요 회원국 평균 대비 낮은 수준
- 2024년 3분기 스페인, 프랑스의 GDP 성장률은 각각 0.8%, 0.4%

### ■ 독일 연방정부의 지속가능금융 자문위원회 (Sustainable Finance Advisory Board, SFB), 제 20차 입법기간 최종보고서 제출(2024. 11. 22.)<sup>70)</sup>

\* 금융·실물경제·시민사회·과학계 고위 인사 34명으로 구성된 지속가능금융 자문위원회는 2022년에 독일 연방정부에 의해 결성되었으며,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한 규제와 민간 자본을 활용한 경제 전환을 위해 정부 및 관련 기관에 자문을 제공하는 독립적인 전문위원회

- 이번 보고서는 독일의 경제와 금융 시스템 내

에서 지속가능한 금융의 발전과 관련된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주요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음

- (지속가능한 금융 시스템) 독일은 2034년까지 디지털화, 지속가능성 통합, 실물 경제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지속가능한 금융 규제) 지속가능한 금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규제들이 상호 연계되고 민간 자본이 효율적으로 경제에 투입되어야 함

\* EU의 지속가능한 금융 프레임워크는 Taxonomy,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s Regulation, SFDR,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을 포함

- (산업 및 인프라 투자) 산업과 인프라는 기후 전환의 중요한 요소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전략을 제시

<표 15> Taxonomy, SFDR, CSRD의 차이점

구분	Taxonomy	SFDR	CSRD
의의	경제활동의 지속가능성 정의 및 분류	금융 상품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 보고
대상	경제활동과 투자	금융 시장 참여자와 금융상품 제공자	대기업, 상장 기업, 중소기업
목적	지속가능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정의	금융 시장 내 지속가능성 투명성 강화	ESG 정보 공시 강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
법적기준	녹색 경제활동 정의를 위한 6개 환경 목표	지속가능 금융 상품 분류 및 공시 기준	기업의 ESG 보고 의무화
적용범위	경제활동 및 프로젝트	금융 상품 및 투자 전략	전체 기업 운영 및 공급망 정보

출처: EU 집행위원회 홈페이지 자료(EU Taxonomy for sustainable activities, Implementing and delegated acts - SFDR,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를 참조하여 저자 정리

70) 독일 연방 재무부, “Sustainable Finance-Beirat übergibt Abschlussbericht für die 20. Legislaturperiode an die Bundesregierung,” 2024. 11. 22.,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4/11/2024-11-22-sustainable-finance-abschlussbericht.html>, 검색일자: 2024. 11. 26.; Empfehlungen des Sustainable Finance-Beirats der Bundesregierung, FUNDING OUR TOMORROW, 2024

- (민간 자본 동원) 기후 변화와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민간 부문에서 동원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금융의 핵심



## [예산·결산 등]

■ 프랑스 재무부, 2024년 예산종료법안(projet de loi de finances de fin de gestion, PLFG 2024) 발표(2024. 11. 5.)<sup>71), 72)</sup>

- (경제전망) 2024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2025년 예산법안 전망(2024.10.)과 동일한 1.1%로 전망
  - 2024년 3분기 가계소비가 0.5% 증가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파리 올림픽의 경제 효과로 분석됨
  - 2024년 물가상승률은 2.1%로 전망
- (재정전망) 2024년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25년 예산법안 전망과 동일한 6.1%로 전망
  - 2024년 예산법(2023.12.)의 GDP 대비 재정적자 전망은 4.4%였는데, 재정수입이 전망보다 낮아 재정이 악화
  -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이 예산법 전망에

비해 각각 143억유로(19.9%), 38억유로(3.8%) 감소한 577억유로와 970억유로로 전망

- 국가지출범위(périmètre des dépenses de l'État, PDE)는 2024년 예산법 전망 4,920억 유로에 비해 60억유로 감소한 4,860억유로로 전망

- (기존 사업에 대한 예산 변동) 예산 관리 상의 변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42억유로의 추가적인 예산 반영
  - 파리 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따른 치안 강화 비용과 뉴칼레도니아의 재난 복구 비용을 반영하여 치안(Sécurité) 미션에 9억유로의 예산 추가 배정
  - 해외군사작전, 우크라이나 지원 등의 비용을 반영해 국방부 예산 3억유로 증액
  - 교직원 인건비 인상을 반영해 학교교육(Enseignement scolaire) 미션에 2억유로 증액
  - 성인 장애인 수당(Allocation aux adultes handicapés) 예산 2억유로 증액, 소득 기반 장학금(Bourses sur critères sociaux) 예산 1억유로 증액
  - 조기 총선 선거 비용 반영 등
- (예산 삭감) 2024년 GDP 대비 재정적자의 최근 전망치인 6.1%를 유지하기 위해 56억유로의 지출 취소를 포함

71) 프랑스 예산국, “Projet de loi de finances de fin de gestion pour 2024 (PLFG 2024),” 2024. 11. 5. <https://www.budget.gouv.fr/documentation/documents-budgetaires/exercice-2024/projet-loi-finances-fin-gestion>, 검색일자: 2024. 11. 19.

72) 프랑스 사회서비스 포털, “Projet de loi de finances de fin de gestion pour 2024,” 2024. 11. 7., <https://www.vie-publique.fr/loi/296065-loi-de-finances-de-fin-de-gestion-lfg-pour-2024>, 검색일자: 2024. 11. 19.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국가지출범위에서 총 56억유로를 삭감하며, 각 부처의 집행 목표를 기반으로 삭감이 이뤄짐
  - ◆ 56억유로 중 45억유로는 편성된 예비비 (reserve de précaution) 삭감을 반영

- 프랑스 2025~2029 중기재정계획은 GDP 대비 공공채무를 감소 추세로 전환하고, GDP 대비 재정적자를 3%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 조정 기간\*을 기존 4년에서 7년으로 연장할 것을 EU 집행위에 요청하여 2029년 재정수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기타]

\* GDP 대비 재정적자 목표는 2025년 5.0%, 2026년 4.6%, 2027년 4.0%, 2028년 3.3%, 2029년 2.8%

- 프랑스 재무부, 2025~2029 중기재정계획(Plan budgétaire et structurel à moyen terme- PSMT pour 2025-2029) 발표(2024. 10. 31.)<sup>73), 74), 75)</sup>
  - 「중기재정법(LFPF)」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수준의 목표를 제시하는 반면, 중기 재정계획(PSMT)<sup>76), 77)</sup>은 일정한 제재 규정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행됨
    - 초과적자시정절차(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에 따라 재정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중기 목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EU집행위가 6개월마다 15억유로의 제재금<sup>78)</sup>을 부과할 수 있음
    - 중기재정계획은 프랑스의 4~5년 동안의 재정 목표와 개혁, 투자 우선순위를 정의함

- 프랑스는 2025년 공공 서비스 효율화 및 비효율적 예산 지출의 삭감 조치를 통해 순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
  - 이후 순지출 증가율을 2026~2028년 1.4%, 2029년 1.9%로 설정
  - 해당 기간 동안 주요 개혁 과제는 연금제도 개혁과 세제 체계 단순화이며, 투자 우선순위는 녹색 전환과 디지털화 확대에 중점을 둠
- 경제성장률은 2024~2028년 1.2%, 이후 1.0%로 전망하며, 이는 IMF 전망과 일치
- 재정조정 노력을 통해 GDP 대비 재정적자가 2024년 6.1%에서 2025년 5.0%, 2026년 4.6%로 개선되고 이후 2029년 2.8%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73) EU 집행위, “National medium-term fiscal-structural plan France,” 2024. 10. 31.,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economic-and-fiscal-governance/national-medium-term-fiscal-structural-plans\\_en?prefLang=sv#france](https://economy-finance.ec.europa.eu/economic-and-fiscal-governance/national-medium-term-fiscal-structural-plans_en?prefLang=sv#france), 검색일자: 2024. 11. 12.

74) 프랑스 상원, “SEANCE du mercredi 30 octobre 2024 (compte rendu intégral des débats du Sénat,” 2024. 10. 31., [https://www.senat.fr/basile/visio.do?id=s20241030\\_12&idtable=&\\_c=PSMT+pour+2025-2029&rch=gs&de=20041112&au=20241112&rqg=drqscpt&dp=20+ans&radio=dp&aff=sep&tri=p&off=0&afd=ppr&afd=ppl&afd=pjl&afd=cvn&isFirst=true](https://www.senat.fr/basile/visio.do?id=s20241030_12&idtable=&_c=PSMT+pour+2025-2029&rch=gs&de=20041112&au=20241112&rqg=drqscpt&dp=20+ans&radio=dp&aff=sep&tri=p&off=0&afd=ppr&afd=ppl&afd=pjl&afd=cvn&isFirst=true), 검색일자: 2024. 11. 12.

75) 프랑스 상원, “Séance du 30 octobre 2024,” 2024. 10. 30., <https://www.senat.fr/seances/s202410/s20241030/s20241030011.html>, 검색일자: 2024. 11. 12.

76) 영문 National medium-term fiscal-structural plan

77) EU 경제 거버넌스 체계의 재정준칙 개정에 따라 각 회원국에 적합한 재정·개혁·투자 목표를 통합한 것으로, 재정조정 기간은 4년이나 최대 7년으로 조정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년 상반기 『재정동향』, 2024, pp. 24~26 참조

78) EDP에서 부과하는 제재금은 GDP와 위반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재정 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GDP의 0.2%까지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음. 프랑스의 경우 최대 15억유로 규모의 제재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

■ 프랑스 회계감사원, 「사회보장부문 재정분석보고서」 발표(2024. 11. 6.)<sup>79), 80)</sup>

- 2024년 사회보장부문 재정적자는 180억유로로 전망되어, 2023년 108억유로 및 2024년 사회보장부문 예산법 전망치인 105억유로 대비 악화
  - 사회보장부문 재정수입이 예상보다 낮았고, 의료지출이 충분히 통제되지 못하며 재정적자가 크게 증가함
- 2025년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의 회복 조치에 따라 2025년 재정적자는 160억유로로 개선될 전망
  - 추가적인 수입 증가 및 지출 절감을 통해 124억유로 규모의 재정 절감 조치 추진
    - 사회보험료 면제 축소와 연금 보험료 인상으로 추가 수입 확보
    - 연금 지급액 인상을 2025년 1월에서 7월로 연기하여 비용 절감
- 다만 2025~2028년 사회보장부문의 재정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028년 재정적자가 199억유로로 증가할 전망
  - 노령화로 인한 연금 및 의료 지출 증가가 주요 원인
- 2025년의 재정조치는 단기적인 재정적자 확대를 방지할 수 있으나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

를 위해 구조적 해결책이 필요

- 재정적자의 지속은 사회보장이 약화되고, 새로운 경제적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적인 어려움에 노출될 수 있음
- 다년간의 체계적 재정개혁, 사회보장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추가적인 세수 확보 방안 검토 필요



영국

### [예산·결산 등]

■ 영국 재무부, 2024 가을 예산안(Autumn Budget 2024) 발표(2024. 10. 30.)<sup>81)</sup>

- (경제 전망) 영국 경제는 2023년에 정체된 모습을 보였으나, 2024년 상반기부터 급격히 회복되어 2026년까지 성장 속도가 가속화되고, 이후에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
  - (물가) 2022년 10월, 41년 만에 최고치인 11.1%를 기록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4년 2.5%, 2025년 2.6%로 예상되고, 이후 목표치인 2%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
  - (노동시장) 2024년 실업률은 전년 대비

79) 프랑스 회계감사원, “La situation financière de la sécurité sociale,” 2024. 11. 6. <https://www.ccomptes.fr/fr/publications/la-situation-financiere-de-la-securite-sociale>, 검색일자: 2024. 11. 19.

80) 프랑스 사회서비스 포털, “Déficits de la sécurité sociale : une “impasse de financement” selon la Cour des comptes,” 2024. 11. 13. <https://www.vie-publique.fr/en-bref/296089-securite-sociale-une-impasse-de-financement-selon-la-cour-des-compte>, 검색일자: 2024. 11. 19.

81) HM Treasury, “Autumn Budget 2024,” Policy paper, 2024. 10. 30.,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autumn-budget-2024>, 검색일자: 2024. 11. 6.

<표 16> 주요 경제 전망

(단위: %, 백만명)

구분	실적	전망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실질 GDP 성장률	0.1	1.1	2.0	1.8	1.5	1.5	1.6
소비자물가(CPI) 상승률	7.3	2.5	2.6	2.3	2.1	2.1	2.0
고용자 수	33.2	33.1	33.4	33.7	33.9	34.1	34.3
실업률	4.0	4.3	4.1	4.0	4.1	4.1	4.1
1인당 실질 가계 가처분 소득	2.0	1.4	1.1	0.0	-0.2	0.6	0.7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October 2024," 2024. 10., p. 168, Table A.1, 재구성

0.3%p 높은 4.3%로 전망되고, 이후 4.0%에 가까운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

- (가계) 1인당 실질 가계 가처분 소득(RHDI)은 2024-25회계연도에 1.4%, 2025-26회계연도에 1.1% 증가하고, 이후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재정 전망) 2025-26회계연도의 공공부문 경상수입은 1조 2,295억파운드(GDP 대비 41.7%), 총관리지출은 1조 3,351억파운드(GDP 대비 45.3%) 전망

- (수입) 공공부문 경상수입은 2023-24회계연도에 1조 1,008억파운드(GDP 대비 40.5%)를 기록하였고,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29-30회계연도에는 1조 4,399억파운드(GDP 42.4%)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이는 고용주의 국민보험기여금 인상, 명목 소득 성장, 2027-28회계연도까지 소득세와 국민보험기여금 기준(threshold) 동결, 자산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반

영한 수치

- (지출) 총관리지출은 2023-24회계연도에 1조 2,227억파운드(GDP 대비 44.9%)를 기록하였고,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29-30회계연도에는 1조 5,105억파운드(GDP 대비 44.5%)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이는 지난 7월에 발표했던 공공지출 감사<sup>82)</sup>에서 예상한 219억파운드의 초과 지출과 공공부문 근로자 급여 인상, 국가의료서비스 개선, 교육시스템 강화 등에 따른 지출 소요를 반영한 수치

- (순차입) 공공부문 순차입은 2024-25회계연도에 GDP 대비 4.5%(1,275억파운드)를 기록하고, 이후 감소하여 2029-30회계연도에는 2.1%(760억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순채무) 공공부문 순채무는 2024-25회계연도에 60년 만에 최고치인 GDP 대비 98.4%에서 2028-29회계연도에 97.3%, 2029-30회계연도에 97.1%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8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재정동향 - 국제기구 및 주요국」, 2024. 8., pp. 40~41 참고

&lt;표 17&gt; 주요 재정 전망

(단위: 십억파운드, %)

구분	실적	전망					
	2023-24	2024-25	2025-26	2026-27	2027-28	2028-29	2029-30
<b>수입·지출</b>							
공공부문 경상수입 <sup>1)</sup>	1,100.8	1,148.7	1,229.5	1,290.5	1,346.0	1,389.8	1,439.9
GDP 대비 %(a)	40.5	40.8	41.7	42.2	42.5	42.4	42.4
총관리지출(TME)	1,222.7	1,276.2	1,335.1	1,379.0	1,418.1	1,461.7	1,510.5
GDP 대비 %(b)	44.9	45.3	45.3	45.1	44.8	44.6	44.5
공공부문 경상지출(c)	40.0	40.3	40.1	39.9	39.7	39.6	39.7
공공부문 순투자(d)	2.6	2.6	2.7	2.7	2.6	2.5	2.4
감가상각(e)	2.4	2.5	2.5	2.5	2.5	2.4	2.4
<b>재정적자</b>							
공공부문 순차입(b-a)	4.5	4.5	3.6	2.9	2.3	2.2	2.1
경기조정 순차입	4.7	4.4	3.7	3.1	2.5	2.3	2.1
경상예산 적자(c+e-a)	1.9	2.0	0.9	0.2	-0.3	-0.3	-0.3
<b>채무</b>							
공공부문 순채무 <sup>2)</sup>	97.8	98.4	96.9	97.0	97.2	97.3	97.1
공공부문 순금융 채무 <sup>3)</sup>	82.8	83.5	83.8	84.2	84.1	83.9	83.4

주: 1) 단위는 십억파운드

2) 공공부문 순채무 = 일반정부 채무 + 기타 공공 채무 - 유동성 금융 자산

3) 공공부문 순금융 채무 = 일반정부 채무 + 기타 공공 채무 + 기타 부채 - 유동성 금융 자산 - 비유동성 금융 자산\*

\* 학자금 대출, 금융위기 동안 인수된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등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October 2024," 2024. 10., p. 176, Table A.9, 재구성

- (주요 정책) 기반 확립을 통한 영국 재건에 우선순위를 두고 첫 예산안을 편성하여 경제 성장 미션을 완료하고자 하였는데, 특히 보도자료<sup>83)</sup>를 통해 다음 다섯 가지를 강조
  - (국가의료서비스(NHS) 개선과 공공서비스 개혁) 국가의료서비스 개선과 교육 시스템 강화 등,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경상지출을 평균 3.3% 증액(2023-24회계연도부터 2025-26회계연도의 실질 증가율 기준)
- 2024-25 및 2025-26 회계연도 동안 경상지출 보건·사회복지부에 226억파운드를 추가 배정하여, NHS가 매주 4만건의 추가 선택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 교육 개선을 위해 2024-25회계연도에 40억파운드를 추가 지원하되, 그 중 23억파운드는 핵심 학교(core schools) 예산에 배정하여 학생 1인당 지출을 실질적으로 증액

83) HM Treasury, "Chancellor chooses a Budget to rebuild Britain," Press release, 2024. 10. 30.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근로자의 생활수준 보호) 근로자에 대한 세금 인상 없는 정책 유지, 최저임금 인상, 연료세 동결, 탄소중립 자동차 지원, 돌봄 수단 지원 등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보호
- (영국 재건) 긴축적 재정정책으로 전환하지 않고, 학교, 병원, 도로 등 국가 기반 시설에 투자하며, 미래 산업을 지원하는 등 영국을 재건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
- (공공재정 회복) 기업과 부유층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국가의료서비스, 교육 등의 공공서비스 지원 자금을 마련하고 국가 기반을 구축하는 데 사용
  - 2025년 4월부터 고용주 국민보험기여금 기본요율을 15%로 1.2%p 인상하고, 고용주에게 적용되는 부과 기준액(Secondary Threshold)은 연간 9,100파운드에서 5천 파운드로 하향 조정<sup>84)</sup>
  -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의 저세율은 10%에서 18%로, 고세율은 20%에서

24%로 인상하여 주거용 부동산 세율과 동일하게 조정

- 상속세 면세 기준은 2030년 4월까지 현수준(32만 5천파운드)에서 동결되나, 2027년부터 상속받은 연금펀드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
- (재정 프레임워크 강화) 재정준칙을 개정하고 지출검토(Spending Review)<sup>85)</sup>를 정비하는 등 재정 프레임워크를 개혁하여 재정의 확실성,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

### [기타]

- 영국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 기준금리 인하(5.00% → 4.75%) 결정(2024. 11. 7.)<sup>86)</sup>
  - (경제현황 논의) 통화정책위원회는 기준금리 투표에 앞서 국제 경제 및 영국 경제 전반에 대해 논의
  - (국제 경제) 세계 GDP 성장률은 2024년 2

<표 18> 영국의 기준금리 추이

(단위: %, 백만명)

날짜	2023년								2024년						
	2.2	3.23	5.11	6.22	8.3	9.21	11.2	12.14	2.1	3.21	5.9	6.20	8.1	9.19	11.7
금리	4.00	4.25	4.50	5.00	5.25	5.25	5.25	5.25	5.25	5.25	5.25	5.25	5.00	5.00	4.75

출처: Bank of England, "Monetary Policy Committee Voting History," 2024. 11. 7.

84) 고용주의 국민보험기여금 관련 정책 결정으로 인해 2025-26회계연도부터 2029-30회계연도까지 연평균 약 245억파운드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October 2024*, 2024. 10., p. 136, Table 6.1 참고)

85) 보통 2~4년마다 이루어지는 중기재정지출계획으로, 향후 3년 동안의 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 가장 최근에는 2021년 지출검토에서 2024-25회계연도까지의 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 지난 7월에 노동당 정부는 2025년 지출검토를 계획하였고, 1단계 검토결과를 이번 예산안에 반영

86) Bank of England, "Bank Rate reduced to 4.75% - November 2024," News & Events, 2024. 11. 7., <https://www.bankofengland.co.uk/monetary-policy-summary-and-minutes/2024/november-2024>, 검색일자: 2024. 11. 15.,; Bank of England, Monetary Policy Report - November 2024, 2024. 11. 7.

분기에 0.5%를 기록하였고, 3분기와 4분기에도 비슷한 수준의 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GDP 성장률은 2분기에 0.7%였고, 3분기에도 같은 수준으로 성장했으며, 4분기에는 0.5%로 견고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9월에 2.1%로 하락하였고, 유로지역은 10월에 ECB의 2% 목표에 도달하는 등 선진국의 물가상승률이 중앙은행의 목표치에 근접
- (영국 경제) 영국의 GDP 성장률은 2024년 2분기에 0.5%로 지난 8월 전망(0.7%) 대비 약세를 보였고, 3분기 0.2%, 4분기 0.3%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
  - 기업투자와 정부지출은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주택 투자 부진이 이를 상쇄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월에 1.7%로 목표치인 2%를 하회하였으나, 국내 에너지 요금 인하 효과가 약화되면서 연말까지 2.5%로 상승하고, 이후 조금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실업률은 8월까지, 3개월 동안 4%를 기록하였고, 이후 중기적으로 4.5%에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금리 인하) 통화정책위원회의 기준금리 투표

에서 9명의 위원 중 8명이 4.75%로 금리 인하를 지지하였고, 나머지 1명만이 5.00%로 유지할 것을 선호



## 호주

### ■ 호주 의회예산처, 「2024-25회계연도 국가 재정 전망 보고서」 발표(2024. 10. 30.)<sup>87)</sup>

\* 의회예산처는 매년 일반정부 부문, 전체 정부 수준의 국가 재정 전망 보고서를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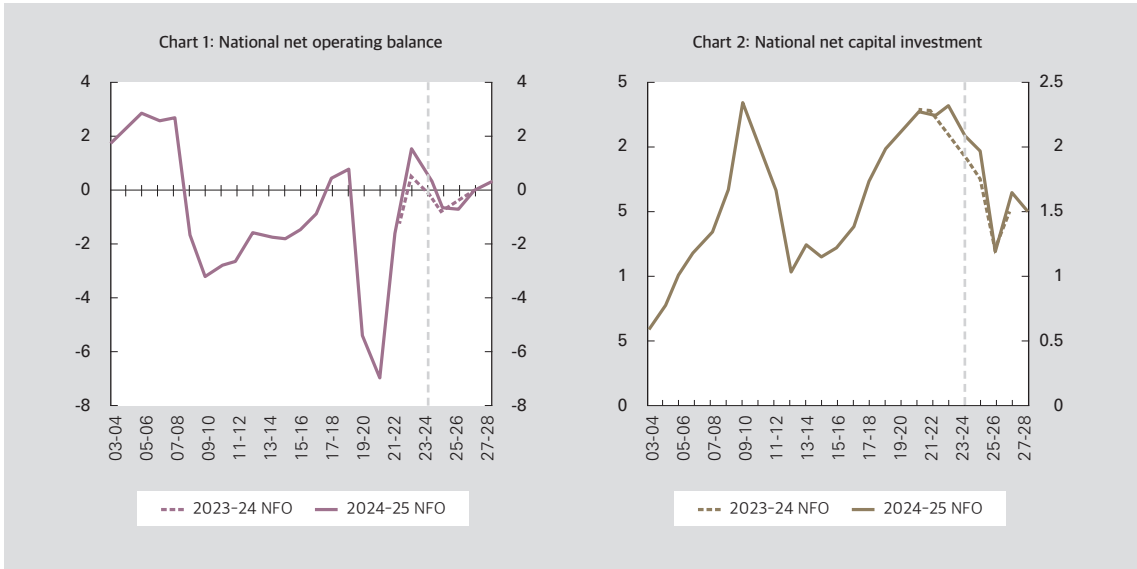
- (수지) 호주 전체 정부의 GDP 대비 재정수지는 2024-25회계연도 2.6%(717억호주달러) 적자에서 2027-28회계연도 1.2%(381억호주달러) 적자로 개선될 전망
  - 지난 전망 보고서(2023년 10월)와 비교해 국가 재정수지는 상향 조정(2023-24회계연도에 102억호주달러)되었는데, 이는 상품 가격 상승 및 강력한 노동시장에 기인한 연방 정부 재정수지 개선에 주로 기인
- (순자본투자)<sup>88)</sup> GDP 대비 순자본투자는 2024-25회계연도 1.9%에서 2027-28회계연도 1.5%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난 보고서보다는 덜 가파를 것으로 전망
- (순채무) GDP 대비 국가 순채무는 2024-25회계연도 32.0%(8,819억호주달러)에서 2027-28

87) 호주 의회예산처, “2024-25 National fiscal outlook,” <https://www.pbo.gov.au/publications-and-data/publications/2024-25-national-fiscal-outlook>, 검색일자: 2024. 11. 21., <https://www.pbo.gov.au/sites/default/files/2024-10/2024-25%20National%20Fiscal%20Outlook-NFO.pdf>

88) 도로, 학교, 병원과 같은 인프라에 대한 지출

[그림 3] 국가 순운영수지, 순자본투자

(단위: % GDP)



출처: 호주 의회예산처, 2024-25 National fiscal outlook, chart 1,2, 2024.10.30.

회계연도 35.7%(1조 1,363억호주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며, 지난 전망 대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상승하는 추세

- 지난 전망과 비교하여 2023-24회계연도 785억호주달러, 2026-27회계연도 68억호주달러 하향 조정

- 연방정부의 예산수지 개선으로 국가 순채무는 감소하였으나,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공공 채무 이자 지급액은 증가

- (지속가능성) 재정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분석 의회예산처의 재정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를 통해 40년 기간 동안 국가 GDP

대비 채무를 27개 시나리오로 분석<sup>89)</sup>한 결과,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40년간 GDP 대비 채무비율이 하락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호주의 국가 재정상황이 지속 가능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 호주 중앙은행(RBA), 2024년 11월 경제전망 업데이트 및 기준금리 동결 발표(2024. 11. 5.)<sup>90)</sup>

\* 중앙은행은 연 4회(2월, 5월, 8월, 11월) "Statement on Monetary Policy"를 통해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와 호주 경제성장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을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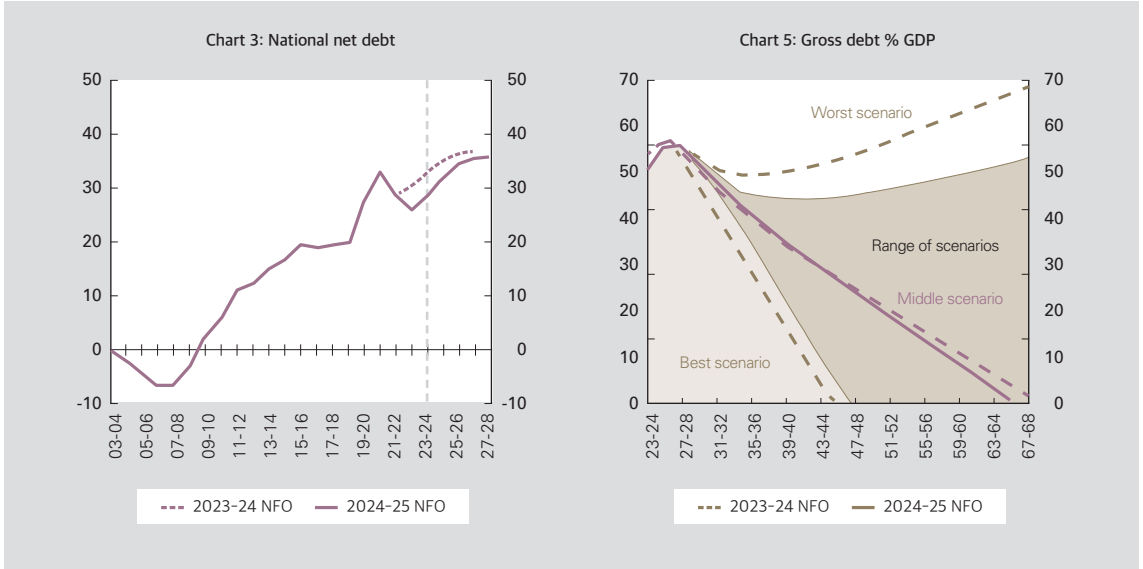
- (경제) 호주의 경제성장은 서서히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및

89) 의회예산처의 재정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를 통해 40년 기간 동안 국가 GDP 대비 채무를 27개 시나리오로 분석

90) 호주 중앙은행, "Statement on Monetary Policy - November 2024," 2024. 11. 5., <https://www.rba.gov.au/publications/smp/2024/nov/>, 검색일자: 2024. 11. 11.

[그림 4] 국가 순채무 및 총채무 장기 전망

(단위: % GDP)



출처: 호주 의회예산처, 2024-25 National fiscal outlook, chart 3,5, 2024.10.30.

2026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8월보다 소폭 하향조정 된 2.3%, 2.2%로 전망  
 - 가계소비는 실질 가계 소득과 자산이 증가하면서 회복되나 8월 전망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서비스 수출은 국제 학생 비자 정책이 엄격해짐에 따라 약화될 전망

- (노동시장) 노동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하나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업률은 2024년 4.3%, 2025년 이후에는 4.5%로 전망
- 실업률은 2025년까지 소폭 상승할 전망이나 점진적으로 노동시장이 완화됨에 따라 임금 상승률은 둔화될 전망

<표 19> 호주의 주요 경제 지표 전망

(단위: %)

	2024년 6월	2024년 12월	2025년 6월	2025년 12월	2026년 6월	2026년 12월
GDP 성장률	1.0	1.5	2.3	2.3	2.3	2.2
(8월 전망)	(0.9)	(1.7)	(2.6)	(2.5)	(2.5)	(2.4)
실업률	4.1	4.3	4.4	4.5	4.5	4.5
(8월 전망)	(4.0)	(4.3)	(4.4)	(4.4)	(4.4)	(4.4)
소비자물가상승률	4.0	3.4	3.0	2.8	2.7	2.5
(8월 전망)	(3.8)	(3.0)	(2.8)	(3.7)	(3.2)	(2.6)

주: 전망은 10월 30일 기준. 기준금리는 2025년 초까지 현재 목표수준인 4.35%를 유지한 후 2026년 말 약 3.3%로 감소할 것으로 가정. 인구증가율은 2023년 3분기 2.6%로 정점을 찍은 후 팬데믹 이전 수준인 1.4%로 감소할 것으로 가정. 실업률은 분기별 평균

출처: 호주중앙은행, "Statement on Monetary Policy - November 2024," p.4, Table 발췌, 2024.11.5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물가) 2026년 물가상승률 목표범위의 중간지점에 도달할 전망이다, 2026년 말 평균 물가상승률 2.5% 예측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4년 3분기 연료 및 전기 가격 인하가 반영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하락(3.8%→2.8%)하였으나, 기초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2023년 중반 이후 하락 속도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짐
  - 2024년 11월 회의에서 중앙은행 이사회는 기준금리 목표를 4.35%로 동결하기로 결정



## 네덜란드

### ■ 네덜란드 대외무역개발부, 국제개발협력(ODA) 분야 예산 삭감 발표(2024. 11. 11.)<sup>91)</sup>

- 레이네트 클레버(Reinette Klever) 대외무역개발부 장관은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책의 중점을 단순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시민단체(NGO)에 대한 보조금 삭감을 포함한 새로운 정책 계획을 하원에 제출
  - 정부는 2026~2030년 5년 동안 ODA 예산을 약 10억유로 삭감할 예정
  - 현행 14억유로 규모인 시민단체(NGO)에 대한 보조금 체계는 2025년에 만료되고 새로운 정책 프레임워크로 대체됨

- 2026~2030년 동안의 새로운 정책 프레임워크에서는 약 3억 9천만유로~5억 6,500만 유로의 예산이 시민단체(NGO)와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될 것임
- 레이네트 클레버(Reinette Klever)는 “2025년 예산안대로 정부는 개발원조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있다”며 “나는 명확한 우선순위를 설정하였으며, 첫 번째 결정은 NGO와 함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NGO와의 협력에 투입되는 예산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라고 언급
-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NGO에 대한 보조금 삭감을 하는 대신 다른 정책 우선순위를 선택하여 다음 영역의 프로그램에 계속 사용
  - 개발도상국의 의료, 에이즈 퇴치, 공정한 무역 촉진, 취약계층 구성원의 인권, 여성 기업가정신 고취
- 네덜란드에는 민간에서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해 기부금을 모으거나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민간 기부금을 장려
  - 정부는 NGO가 정부 자금을 덜 의존하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정책 프레임워크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NGO에 대해 보다 엄격한 요구 사항을 도입할 계획
  - 앞으로는 NGO 전체 수입의 최소 50%가 민간 기부 등 자체 수입이 되어야 할 것임

91) 네덜란드 정부, “First development budget cuts announced: overhaul of grants for NGOs,” 2024. 11. 11., <https://www.government.nl/latest/news/2024/11/11/first-development-budget-cuts-announced-overhaul-of-grants-for-ngos>, 검색일자: 2024. 11. 11.

- 네덜란드 국무부, 교도소에 드론 탐지 개발을 계속하기 위해 지원 조치 발표(2024. 11. 14.)<sup>92)</sup>
  - 국무부는 수감자들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 범죄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1,600만유로를 추가로 할당하는 조치를 발표
    - 이 조치는 정부가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투자하는 3억유로 기금의 일부
    - 소수의 위험한 수감자 집단은 수감되어 있는 동안 외부 세계에서 범죄활동을 계속하기로 결심하며, 그들은 때때로 밀반입된 전화기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활동
  - 이번 조치로 인한 추가 자금은 교도소에서 전화 및 마약과 같은 기타 밀반입품을 퇴치하고 교도소의 드론 탐지 시스템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혁신적인 기술에 투자될 것임
    - 이 자금은 드론이 교도소에 밀반입품을 운반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부분적으로 사용될 것임
    - 이 기금은 구금 상태에서 범죄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고위험 수감자를 수용하는 집중 감독 부서를 지원할 것임
    - 또한, 고위험 수감자 집단에 대한 정보를 국제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노력이 증가할 것임

- 세부 실행 계획은 2025년 봄에 하원에 제출될 예정



## 스웨덴

- 스웨덴 중앙은행(Riksbank), 경제활동 지원 및 물가상승률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금리를 2.75%로 인하<sup>93)</sup>(2024. 11. 7.)<sup>94)</sup>
  - (배경) 지난 한 해 동안 물가상승률이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둔화됨에 따라 통화정책이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음
    - 2024년 10월 현재 물가상승률<sup>95)</sup>은 1.5%로 스웨덴 중앙은행의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2.0%를 하회<sup>96)</sup>
    - 스웨덴 중앙은행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정책 금리 인하 속도를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
  - (정책금리 결정) 2024년 스웨덴 정책금리는 3.25%에서 2.75%로 0.5%p 인하됨
  - (전망) 통화정책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92) 네덜란드 정부, "Multi-million boost to continue developing drone detection in prisons," 2024. 11. 14., <https://www.government.nl/latest-news/2024/11/14/multi-million-boost-to-continue-developing-drone-detection-in-prisons>, 검색일자: 2024. 11. 14.

93) 정책금리는 2024년 11월 13일부터 적용

94) 스웨덴 중앙은행, "Styrräntan sänks med 0,5 procentenheter till 2,75 procent," 2024. 11. 7., <https://www.riksbank.se/sv/press-och-publicerat/nyheter-och-pressmeddelanden/pressmeddelanden/2024/styrrantan-sanks-med-05-procentenheter-till-275-procent/>, 검색일자: 2024. 11. 18.

95) 고정금리 소비자 물가지수(CPIF)

96) 스웨덴 중앙은행, "Inflationsmålet," <https://www.riksbank.se/sv/penningpolitik/inflationsmalet/>, 검색일자: 2024. 11. 18.

<표 20> 스웨덴 정책금리 인하 경로

(단위: %, %p)

	2022년		2023년					2024년					
	11월	2월	5월	7월	9월	11월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
기준금리	2.50	3.00	3.50	3.75	4.00	4.00	4.00	4.00	3.75	3.75	3.50	3.25	2.75
변동폭	+0.75	+0.50	+0.50	+0.25	+0.25	0.00	0.00	0.00	-0.25	0.00	-0.25	-0.25	-0.50

출처: 스웨덴 중앙은행, "Styrränta, in- och utlåningsränta," 2024. 11. 13., <https://www.riksbank.se/sv/statistik/rantor-och-valutakurser/styrranta-in-och-utlaningsranta/>, 검색일자: 2024. 11. 19.

- 인플레이션과 경제전망이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정책금리는 2024년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인하될 예정
  - 2025년 상반기에도 한두 차례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됨
  - (위험요인) 경제활동 전망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 지정학적 불안정성, 주요국 경제정책, 스웨덴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 코로나 환율 등으로 인해 향후 통화정책 조정 가능성이 있음
- 스웨덴 재무부, 2025년 중앙정부 채무관리 지침 발표(2024. 11. 7.)<sup>97), 98)</sup>
- (중앙정부 채무 현황 및 전망) 중앙정부 채무<sup>99)</sup>는 2023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까지 증가하다가 2026-2027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GDP 대비 중앙정부 채무 비율은 2023년 전
  - (2025년 채무관리 지침 변경사항) 채무관리 지침 절차, 국가 부채의 구성, 만기 측정 방식 등이 있음
    - (채무관리 지침 절차) 매년 10월 1일 이전 스웨덴 국채관리국은 채무관리 지침에 대한 제안을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매년 11월 15일 이전에 스웨덴 국채관리국의 국가
  - 중앙정부 채무 비율은 점차 감소하여 2027년 GDP 대비 17%로 전망됨
  - 중앙정부 총채무 규모는 2024년 말 1,136억 크로나로 예상됨
  - 중앙정부 총채무는 2025~2026년 매년 약 450억 크로나 증가하다가 2027년 이후 매년 100억 크로나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sup>100)</sup>

97) 스웨덴 재무부, "Riktlinjer för statsskuldens förvaltning 2025," 2024. 11. 7.,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4/11/riktlinjer-for-statsskuldens-forvaltning-2025/>, 검색일자: 2024. 11. 21.

98) 스웨덴 재무부, "Riktlinjer för statsskuldens förvaltning 2025," 2024. 11. 7., <https://www.regeringen.se/rattsliga-dokument/statens-offentliga-utredningar/2024/11/sou-202476/>, 검색일자: 2024. 11. 21.

99) 중앙정부 채무는 스웨덴의 경제발전, 경제 및 재정 정책, 국가 소유 기업의 주식 매각이나 스웨덴 중앙은행의 재 대출 등에 영향을 받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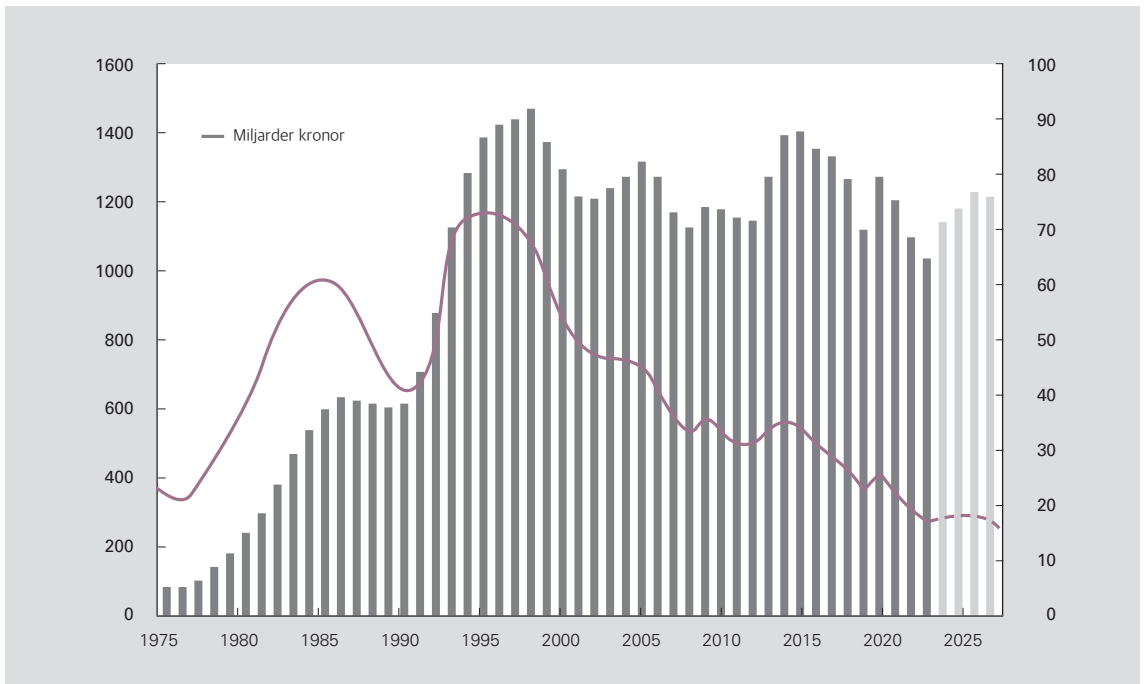
100) 2025년 스웨덴 예산안 총채무 전망에 따르면 환율효과(현재 환율과 차입시 환율을 비교하여 발생하는 차이), 인플레이션 변화(차입 당시 물가와 비교해 발생하는 차이), 관리자산 변화(일시적으로 화폐시장에 배치된 자금을 의미하며, 국가의 예산 지출을 지급하거나 만기된 채권을 상환할 때 사용) 등에 기인하여 전망

- 채무 관리지침에 대해 결정해야 함
- (변경 전) 매년 10월 1일 이전 스웨덴 국채 관리국은 채무관리 지침에 대한 제안을 정부에 제출해야 함
  - (국가 부채의 구성) 실질 코로나 부채<sup>101)</sup>는 점차 감소하도록 하고 명목 부채는 인플레이션 차이를 제외하고 계산해야 함
  - (변경 전) 실질 코로나 부채의 비율은 장기

- 적으로 정부 부채의 20%가 되도록 유지, 명목 부채는 환율을 적용하여 인플레이션 차이를 포함하고 계산
- (국가 부채의 만기) 국가부채 만기는 3.5-6년 사이에서 관리, 평균 금리 재설정 기간(Average Time to Refixing; ATR)<sup>102)</sup>을 기준으로 측정
- (변경 전) 듀레이션(Macaulay duration)<sup>103)</sup>을 기준으로 측정

[그림 5] 비통합 중앙정부 채무<sup>1)</sup>

(단위: 십억코로나, GDP 대비 %)



주: 1) 비통합 중앙정부 채무(UNCONSOLIDATED CENTRAL GOVERNMENT DEBT)에는 중앙정부 기관이 보유한 정부채권이 포함됨

출처: 스웨덴 재무부, "Riktlinjer för statsskuldens förvaltning 2025," 2024. 11. 7., Figure 2.1., p. 10., <https://www.regeringen.se/contentassets/16b449caf0654f47b5fd478cb0a3a858/regeringens-riktlinjer-for-statsskulden-2025.pdf>, 검색일자: 2024. 11. 22.

101) 2029년 말까지 실질 코로나 부채는 약 800억코로나 수준으로 예상됨

102) ATR은 채무 포트폴리오 내 모든 채권의 금리 재설정 기간을 평균적으로 측정함. 각 채권별로 금리 재설정까지 남은 기간에 해당 채권의 금액을 가중치로 적용해 계산. 환율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거버넌스를 제공

103) 2015년 정부의 지침 결정 이후 듀레이션으로 부채 만기기간을 측정하고 있음. 듀레이션은 채권의 금리 민감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금리 변동에 따라 자산 가격이 얼마나 변하는지 예측하는 데 사용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스웨덴 재무부, 흑자 목표에서 균형 목표로 전환 (Från överskottsmål till balansmål) 보고서를 발표(2024. 11. 15.)<sup>104), 105)</sup>
  - (배경) 스웨덴 공공재정은 GDP 대비 약 0.33% 흑자 목표(överskottsmål)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경제적·사회적 과제 및 EU 재정 준칙을 고려하여 균형 목표(balansmål)로 전환이 필요
  - (주요 변경 사항) 기존 재정정책 프레임워크의 기능은 유지하되 목표 수준, 회계 기준에 맞는 용어 조정 등이 변경됨
    - (공공재정 목표 전환) 장기재정지속가능성을 위해 2027년부터 공공재정 목표를 기존

- 흑자 목표에서 균형 목표로 전환
  - (EU 재정준칙 기준과 정합성 강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EU 재정준칙 기준 이하로 관리하여 재정안정성을 도모하고 경제 불황 시 재정여력(Budgetutrymme)을 확보
    - GDP 대비 공공 채무 60% 이하, 재정적자 GDP 대비 3% 이하로 유지
    - 2025년 12월 31일까지 예산법 개정 예정
  - (목표범위 이탈 시 보고 요구) 구조적 재정 수지(structurellt sparande)가 GDP 대비 0.5%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명백한 목표 이탈로 간주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제출이 요구됨

<표 21> 스웨덴 기후 재정 패키지의 주요 내용

(단위: 백만코로나)

기금명	목적	지원 금액
UN 녹색기후기금(GCF)	- 대규모 녹색 전환 프로젝트,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적응을 지원하며,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지속 가능한 기후 투자를 촉진 - 2024~2027년 다년간 지원	8,000
손실 및 피해 대응 기금(Fonden för att hantera skador och förluster)	-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에 직면한 취약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신규 설립된 기금으로 다년간 지원	200
적응기금(Anpassningsfonden)	-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 2024년부터 지원	130
최빈개도국 기금(Fonden för de minst utvecklade länderna)	- 최빈개도국의 국가 기후 적응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고, 농업, 식량 안보, 보건, 물 접근성에 중점 지원	130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s 4ALL)	- 유엔 재난위험감사무국(UNDRR)의 주도로 극한 기후 현상에 대비하기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을 지원 - 2023년 결정된 6,000만 코로나 지원 이후 추가 지원	20
국가 기후계획 파트너십(NDC Partnership)	- 각국의 국가 기후계획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	30

출처: 스웨덴 외교부, "Sveriges finansieringspaket till COP29," 2024. 11. 15., <https://www.regeringen.se/artiklar/2024/11/sveriges-finansieringspaket-till-cop29/>, 검색일자: 2024. 11. 21.

104) 스웨덴 재무부, "Från överskottsmål till balansmål," 2024. 11. 15., <https://www.regeringen.se/rattsliga-dokument/statens-offentliga-utredningar/2024/11/sou-202476/>, 검색일자: 2024. 11. 21.

105) 스웨덴 재정정책 프레임워크는 1990년대 초 경제위기 당시 급격히 증가한 공공부채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됨. 이를 계기로 재정정책이 대대적으로 전환되었으며, 예산규율 강화를 위해 예산 프로세스도 개편되었음. 또한 공공 부문의 재정 흑자 목표가 설정되고, 국가와 연금 시스템 지출에 다년간의 지출 상한제가 적용됨

- (재정정책 평가 강화) 스웨덴 재정정책위원회(Finanspolitiska rådet)의 재정정책 평가 및 감독 역할을 확대
  - (발효)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변경 사항이 발효된 다음 의회 임기 중 재검토 예정
- 스웨덴 국방부, 항공 방어 강화에 50억크로나 이상 투자(2024. 11. 15.)<sup>106)</sup>
- 스웨덴 국방물자청(FMV)은 NATO 지원·조달청(NSPA)과 패트리엇 GEM-T(유도 강화 미사일) 미사일의 공동 조달 계약을 체결
- 스웨덴 외교부, COP29 기후 재정 패키지 발표 (2024. 11. 15.)<sup>107)</sup>
-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sup>108)</sup>에서 스웨덴의 새로운 기후 재정 패키지를 발표
  - 스웨덴의 2023년 총기후 재정 지원 규모는 94억크로나로 나타남
  - 스웨덴의 주요 기후 재정 지원은 주로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ida)을 통해 이루어지며, 국제개발협력청의 기후 재정 규모는 2022년 43억크로나, 2023년 52억크로나로 나타남
- 스웨덴 외교부, 다자간 투자기금IV(Multilateral Investment Fund IV; MIF IV)에 기여 결정 (2024. 11. 18.)<sup>109)</sup>
- 스웨덴은 다자간 투자기금IV(MIF IV/IDB Lab)의 제4차 재원 조달에 최대 335만미국달러(약 3,700만크로나)를 지원하기로 결정
  - 다자간 투자기금IV는 미주개발은행(IDB)의 산하기관 IDB Lab에서 운영하는 기금

<표 22> 2022~2023년 스웨덴의 기후 재정 규모

(단위: 억크로나)

기후 재정 항목	2022년 실적	2023년 실적
국제개발협력청(Sida) 기후 재정	43	52
스웨덴 개발금융기관(Swedfund) 기후 자본 조달	3	7
다자간 기후 기금	24	21
개발은행 및 기타	16	14
합계	86	94

출처: 스웨덴 외교부, "Sveriges finansieringspaket till COP29," 2024. 11. 15., <https://www.regeringen.se/artiklar/2024/11/sveriges-finansieringspaket-till-cop29/>, 검색일자: 2024. 11. 21.

106) 스웨덴 국방부, "Sverige satsar över fem miljarder kronor på stärkt luftförsvaret," 2024. 11. 15.,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4/11/sverige-satsar-over-fem-miljarder-kronor-pa-starkt-luftforsvaret/>, 검색일자: 2024. 11. 18.

107) 스웨덴 외교부, "Sveriges finansieringspaket till COP29," 2024. 11. 15., <https://www.regeringen.se/artiklar/2024/11/sveriges-finansieringspaket-till-cop29/>, 검색일자: 2024. 11. 21.

108)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는 2024년 11월 11일부터 2024년 11월 22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됨. 총회는 파리협정 및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각국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검토 및 이행방안 논의, 기후재정, 기후 적응, 손실 및 피해(Loss and Damage) 등 주요 세계기후 의제를 논의함

109) 스웨덴 외교부, "Nytt svenskt bidrag till den Multilaterala Investeringsfonden," 2024. 11. 18.,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4/11/nytt-svenskt-bidrag-till-den-multilaterala-investeringsfonden/>, 검색일자: 2024. 11. 21.

# 재정포럼

2024년 12월호 통권 제342호

-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행인** 이 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편집위원장**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편집위원**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강신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고지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고창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편집간사** 장정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행정원)  
**편집·제작** 장은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전문원)

## 월간 재정포럼

2024년 12월 19일 발행 / 통권 제342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37 / **E-mail:** pub@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디자인·인쇄**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TEL:** 02-2269-9917



##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여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414-2137
- FAX: (044)-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온라인 입금: 하나은행 세종아름지점

- 계좌번호: 541-910013-01104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재정포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로 만나는  
내 손안의 재정포럼